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3-1

ISBN 979-11-92238-36-4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기수, 김동기, 이한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책임연구원

김기수_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장

• 공동연구원

김동기_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한나_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지현_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 연구지원

김이서_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례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개요	1
제1절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1
1.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 근거	1
2.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2
제2절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및 과정	3
1.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	3
2.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3
3.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	4
제2장 장애인복지 환경 및 정책 분석	7
제1절 장애인복지 현황	7
1. 등록 장애인 현황	7
2.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5
3.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18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조례	22
제2절 장애인학대 피해 및 권리구제 현황	24
1.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24
2. 대전 장애인학대 현황	33
제3절 중앙 및 타 시도 계획 분석	35
1. 중앙정부 계획	35
2. 타 시도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	40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	47
제1절 평가 개요	47
1.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개요	47
2.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평가 방법	48
3.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이행 진단	50

제2절 분야별 평가	51
1. 권익옹호 분야	51
2. 근로기본소득 분야	64
3. 건강 분야	77
4. 교육·문화 분야	88
5. 사회참여 분야	100
6.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114
제4장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 분석	127
제1절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분석	127
1. 조사 개요	127
2. 분석 결과	129
제2절 초점집단면접 분석	185
1. 조사 개요	185
2. 분석 결과	187
제5장 제3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197
제1절 비전과 추진 전략	197
1. 정책 방향	197
2. 비전과 추진 전략	198
3. 분야별 핵심과제	199
제2절 분야별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	201
1. 권익옹호 분야	201
2. 근로·소득 분야	211
3. 건강 분야	221
4.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234
5. 사회참여 분야	247
6. 자립생활 분야	256
○ 참고문헌	269

표 및 그림 차례

< 표 1-1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2
< 표 2-1 > 등록 장애인 변동 추이	7
< 표 2-2 > 장애 유형별 장애인 현황	8
< 표 2-3 >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9
< 표 2-4 > 장애 유형과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10
< 표 2-5 > 대전광역시 등록 장애인 변동 추이	11
< 표 2-6 > 대전광역시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12
< 표 2-7 > 대전광역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13
< 표 2-8 > 대전광역시 장애 유형과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14
< 표 2-9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6
< 표 2-10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8
< 표 2-11 > 시도별 장애인 예산	19
< 표 2-12 >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예산 현황	20
< 표 2-13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현황	21
< 표 2-14 > 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3
< 표 2-15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24
< 표 2-16 > 신고자 유형	25
< 표 2-17 > 사례판정	26
< 표 2-18 >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6
< 표 2-19 > 피해장애인 특성	28
< 표 2-20 > 학대 행위자 특성	29
< 표 2-21 >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30
< 표 2-22 > 장애인 학대 유형	31
< 표 2-23 >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32
< 표 2-24 > 대전광역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33
< 표 2-25 > 대전광역시 사례판정	33
< 표 2-26 > 대전광역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4
< 표 2-27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초안	36

< 표 2-28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초안 중 장애 관련 추진 과제	36
< 표 2-29 >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46
< 표 3-1 >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 분야 구성	49
< 표 3-2 >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이행 여부 현황	50
< 표 3-3 > 권익옹호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52
< 표 3-4 > 권익옹호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53
< 표 3-5 > 권익옹호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54
< 표 3-6 >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정립을 통한 인권 교육 강화(1-1-1) 총평	55
< 표 3-7 >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1-1-2) 총평	56
< 표 3-8 >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1-1-3) 총평	57
< 표 3-9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1-2-1) 총평	58
< 표 3-10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내실화(1-2-2) 총평	59
< 표 3-11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3) 총평	60
< 표 3-12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4) 총평	61
< 표 3-13 > 자폐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5) 총평	61
< 표 3-14 > 근로·기본소득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65
< 표 3-15 > 근로·기본소득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66
< 표 3-16 > 근로·기본소득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67
< 표 3-17 > 건강 카페 운영(2-1-1) 총평	68
< 표 3-18 > 행복어울림농장 운영(2-1-2) 총평	69
< 표 3-19 > 전동휠체어 충전기(행복충전소) 관리(2-1-3) 총평	70
< 표 3-20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2-2-1) 총평	71
< 표 3-21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운영(2-2-2) 총평	72
< 표 3-22 >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2-2-3) 총평	72
< 표 3-23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2-2-4) 총평	73
< 표 3-24 > 장애인연금 추가 지급(2-3-1) 총평	74
< 표 3-25 > 중증장애 아동수당 추가 지원(2-3-2) 총평	74
< 표 3-26 > 건강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77
< 표 3-27 > 건강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78
< 표 3-28 > 건강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79
< 표 3-29 >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3-1-1) 총평	80
< 표 3-30 > 중증 장애인 소아 낮 병동 지원(3-1-2) 총평	81

< 표 3-31 >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 지정 및 운영(3-1-3) 총평	82
< 표 3-32 >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3-1-4) 총평	83
< 표 3-33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3-2-1) 총평	84
< 표 3-34 >	대전형 장애 친화 의료기관 지정(3-2-2) 총평	85
< 표 3-35 >	교육·문화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88
< 표 3-36 >	교육·문화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89
< 표 3-37 >	교육·문화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90
< 표 3-38 >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4-1-1) 총평	91
< 표 3-39 >	생애주기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4-1-2) 총평	92
< 표 3-40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4-1-3) 총평	93
< 표 3-41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강화(4-2-1) 총평	94
< 표 3-42 >	중·고령 장애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 지원(4-2-2) 총평	95
< 표 3-43 >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4-2-3) 총평	96
< 표 3-44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4-3-1) 총평	97
< 표 3-45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프로그램 확대(4-3-2) 총평	97
< 표 3-46 >	사회참여 분야 세부 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101
< 표 3-47 >	사회참여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102
< 표 3-48 >	사업참여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103
< 표 3-49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5-1-1) 총평	104
< 표 3-50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기능 강화(5-1-2) 총평	105
< 표 3-51 >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5-2-1) 총평	106
< 표 3-52 >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5-2-2) 총평	107
< 표 3-53 >	저상버스 배차 체계 개선 및 운영 확대(5-2-3) 총평	108
< 표 3-54 >	청각언어장애인 수어 통역 24시간 보장(5-3-1) 총평	108
< 표 3-55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5-3-2) 총평	109
< 표 3-56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5-4-1) 총평	110
< 표 3-57 >	최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5-4-2) 총평	111
< 표 3-58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세부 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115
< 표 3-59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116
< 표 3-60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117
< 표 3-61 >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6-1-1) 총평	118
< 표 3-62 >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6-1-2) 총평	119
< 표 3-63 >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6-2-1) 총평	120

< 표 3-64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6-2-2) 총평	121
< 표 3-65 >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6-2-3) 총평	122
< 표 3-66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6-2-4) 총평	123
< 표 4-1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개요	127
< 표 4-2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 분석 내용	128
< 표 4-3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30
< 표 4-4 > 응답자의 장애 특성	131
< 표 4-5 > 평소 건강 상태	132
< 표 4-6 > 지속적 진료 여부	132
< 표 4-7 > 진료 장소	133
< 표 4-8 > 진료 목적	133
< 표 4-9 > 최근 건강검진 여부	133
< 표 4-10 >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_1순위	134
< 표 4-11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이용 경험	134
< 표 4-12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35
< 표 4-13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이용 시 필요한 지원 사항	135
< 표 4-14 > 만성질환 유무	136
< 표 4-15 > 만성질환 종류	136
< 표 4-16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슬프거나 힘든 경험	137
< 표 4-17 > 현재 스트레스 정도	137
< 표 4-18 > 최근 1년 동안 상담 경험	138
< 표 4-19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138
< 표 4-20 > 주로 운동하는 장소_1순위	138
< 표 4-21 > 건강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_1순위	139
< 표 4-22 >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140
< 표 4-23 >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 유무	140
< 표 4-24 >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_1순위	141
< 표 4-25 > 제공받고 있는 도움의 충분성	141
< 표 4-26 >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한 이유	142
< 표 4-27 > 낮 시간 활동	142
< 표 4-28 > 집에서 지내는 이유	143
< 표 4-29 >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 사용 여부	143

< 표 4-30 >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	144
< 표 4-31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 사항_1순위	144
< 표 4-32 >	최종학력	145
< 표 4-33 >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 경험	145
< 표 4-34 >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의 주된 이유	146
< 표 4-35 >	평생교육 참여 경험	146
< 표 4-36 >	평생교육 수강 기관	147
< 표 4-37 >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147
< 표 4-38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148
< 표 4-39 >	지난 주 경제활동 여부	148
< 표 4-40 >	현재 일하는 곳	149
< 표 4-41 >	현재 종사 업무	149
< 표 4-42 >	근속 기간	150
< 표 4-43 >	월평균 수입	150
< 표 4-44 >	미취업의 주된 이유	151
< 표 4-45 >	직업훈련 경험 유무	151
< 표 4-46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152
< 표 4-47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152
< 표 4-48 >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153
< 표 4-49 >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정도	153
< 표 4-50 >	외출하지 않는 이유	154
< 표 4-51 >	집 밖 활동 시 불편 정도	154
< 표 4-52 >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155
< 표 4-53 >	주된 교통수단	155
< 표 4-54 >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156
< 표 4-55 >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156
< 표 4-56 >	개선이 시급한 교통서비스	157
< 표 4-57 >	한 달 동안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	158
< 표 4-58 >	문화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158
< 표 4-59 >	장애로 인한 폭력 경험	159
< 표 4-60 >	폭력의 내용	159
< 표 4-61 >	폭력 가해 대상	160
< 표 4-62 >	폭력 시 대처 방법	160

< 표 4-63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유치원(보육시설)	161
< 표 4-64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초등학교	161
< 표 4-65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중학교	161
< 표 4-66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고등학교	162
< 표 4-67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대학교	162
< 표 4-68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교사, 또래 학생, 학부모	162
< 표 4-69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결혼 시	163
< 표 4-70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자녀 양육·교육 시	163
< 표 4-71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취업 시	163
< 표 4-72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직장생활	164
< 표 4-73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운전 면허 제도상(취득 시)	164
< 표 4-74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보험제도상(계약 시)	165
< 표 4-75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대중교통 이용 시	165
< 표 4-76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의료기관 이용 시	165
< 표 4-77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	166
< 표 4-78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시	166
< 표 4-79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복지 관련 기관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시	166
< 표 4-80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사법·행정 서비스 이용 시	167
< 표 4-81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투표 시	167
< 표 4-82 >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167
< 표 4-83 >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정도	168
< 표 4-8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지 여부	168
< 표 4-85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_1순위	169
< 표 4-86 >	주택 유형	169
< 표 4-87 >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	170
< 표 4-88 >	주택 개조 희망 의사	170
< 표 4-89 >	주택 개조 시 희망 장소_1순위	171
< 표 4-90 >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	172
< 표 4-91 >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비 여부	172
< 표 4-92 >	지난 1년 동안 안전을 위협했던 요인_1순위	173
< 표 4-93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173
< 표 4-94 >	장애 안전교육 경험	174
< 표 4-95 >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174

< 표 4-96 >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_1순위	175
< 표 4-9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_생계급여	176
< 표 4-98 > 주 소득원	176
< 표 4-99 > 지난 1개월 평균 개인 수입	177
< 표 4-100 > 지난 1개월 평균 가구 수입	177
< 표 4-101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유무	178
< 표 4-102 > 경제적 지원 관련 필요 사항_1순위	178
< 표 4-103 > 자립생활 인지 여부	179
< 표 4-104 > 자립의 의미_1순위	179
< 표 4-105 > 자립생활 여부	180
< 표 4-106 >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경험	180
< 표 4-107 >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대전시 지원 사항_1순위	181
< 표 4-108 > 미래 준비(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181
< 표 4-109 > 미래(노후생활)에 대한 주된 걱정_1순위	182
< 표 4-110 >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 여부	182
< 표 4-111 >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 사항	183
< 표 4-112 >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183
< 표 4-113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_1순위	184
< 표 4-114 > 초점집단면접 분야별 참여자 특성	186
< 표 4-115 > 초점집단면접 질문 내용	186
< 표 5-1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199
< 표 5-2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계속)	200
< 표 5-3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권익옹호	201
< 표 5-4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근로·소득 분야	211
< 표 5-5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건강 분야	221
< 표 5-6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234
< 표 5-7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사회참여 분야	247
< 표 5-8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자립생활 분야	256
[그림 1-1] 기본계획 수립 과정	5
[그림 2-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38

[그림 2-2]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의 정책 비전도	39
[그림 2-3]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체계도	40
[그림 2-4]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1
[그림 2-5]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7)(안)의 추진 방향	42
[그림 2-6]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도	43
[그림 2-7]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비전 및 정책목표	44
[그림 2-8]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45
[그림 3-1]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47
[그림 5-1]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비전과 추진 전략	198

제 1 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개요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개요

제1절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1.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 근거

□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2조(시장의 책무)에서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제3조(기본계획)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장애인 관련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제3차(2024~2028)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등록 장애 인구와 장애인의 특성 등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 또는 조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현재 제2차(2019~202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6대 분야(권익옹호, 근로·기본소득, 건강, 교육·문화, 사회참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16개 추진 전략, 46개 핵심과제를 추진 중임

- 지난 기본계획(제2차/2019~2023)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난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되,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과 대전광역시 민선 8기의 장애인 정책을 고려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표 1-1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구분	제1차(2014~2018)	제2차(2019~2023)
비전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복지인권도시 '대전' 구현	인권기반의 장애친화 도시 대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사회 여건 조성 및 장애인 서비스 품질 개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통합사회 실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 사회적 편견 해소 ▶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틀 마련 	▶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보장
세부 과제	9대 분야, 28개 핵심과제, 67개 세부 과제	6대 분야, 16개 추진 전략, 46개 핵심과제

2.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 본 연구는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 이번 연구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이에 본 연구에서 제3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제2절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및 과정

1.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5년간의 기본계획임.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전 지역이며, 정책 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 등록 장애인임

2.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 장애인복지 및 인권 보장 동향 분석

- 중앙정부와 타 시도, 대전광역시의 장애인복지 및 인권 보장 관련 정책, 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대전광역시 장애 인구의 특성과 변화, 장애인복지 예산과 사업, 장애인복지 시설 등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전국과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장애인 학대 현황과 특성 등을 분석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 분석

-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과 욕구 등을 파악함. 즉, 장애인의 의료 및 건강,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결혼생활 및 양육, 차별 경험 및 학대, 주거 및 안전, 복지서비스, 경제 상태, 자립생활, 미래 준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였음
- 또한, 심층적인 욕구 파악을 위해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최근 해당 분야의 이슈, 욕구, 신규 과제에 대한 의견, 향후 추진해야 할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음

- 제2차(2019~202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
 -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차별(2019~2022) 시행 계획 자료를 기반으로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추진 성과, 문제점과 한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함
 - 현재 추진 중인 6대 분야 즉, 권익옹호, 근로기본소득, 건강, 교육문화, 사회참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별로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함. 이를 근거로 추진 실적 평가, 핵심 과제별 주요 성과, 한계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함. 또한, 분야 및 추진 전략별 총괄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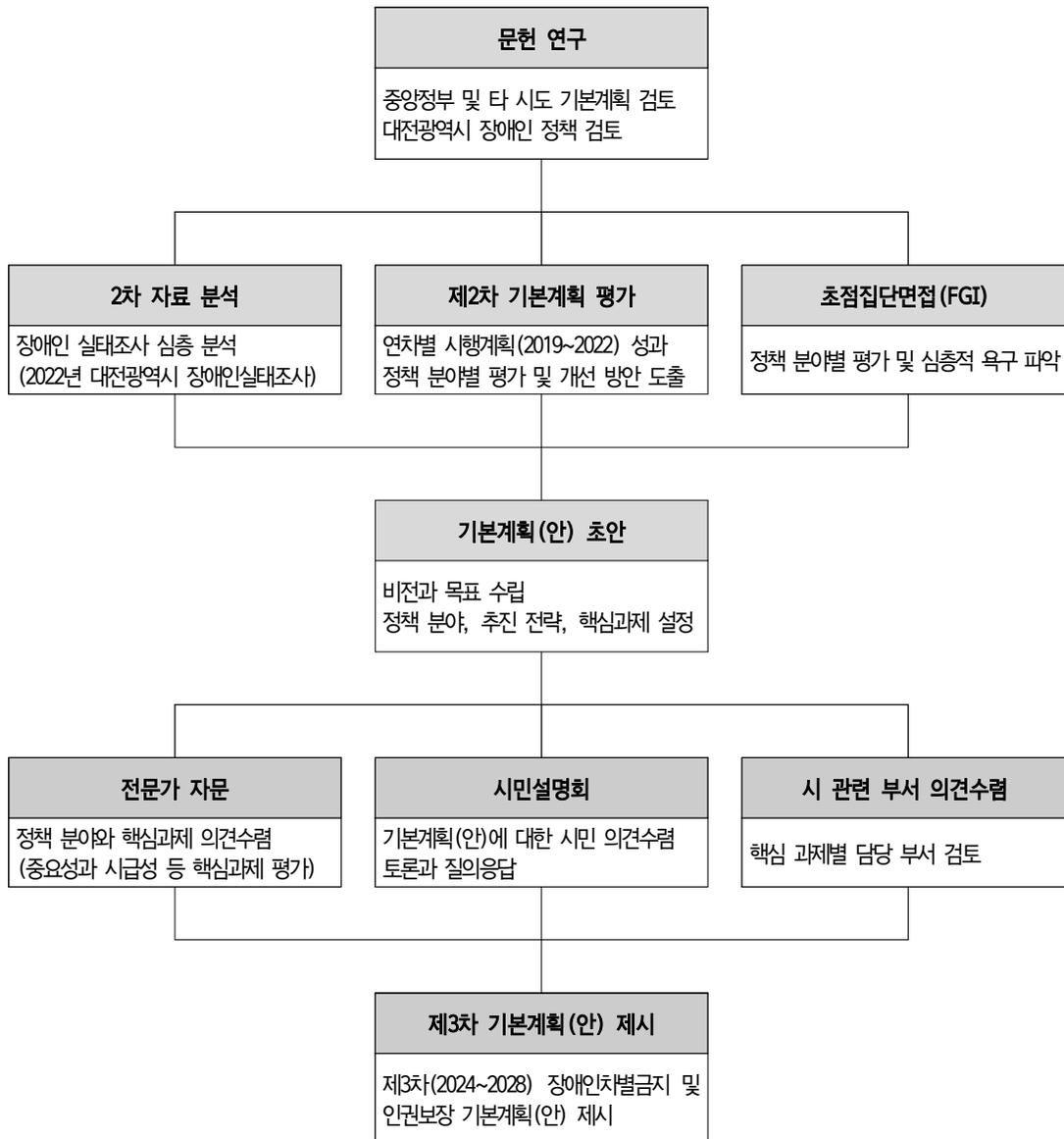
-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제안
 - 제3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분야를 설정함
 - 또한, 정책 분야별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시함. 핵심과제는 과제별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적, 사업 추진 근거, 사업 개요(성과 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함

3.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

- 제3차 기본계획(안) 수립의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문헌 연구 이후에 2차 자료 분석, 제2차 기본계획 평가,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안) 초안을 제안함.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설명회,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후 제3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안함
 - 제6차(2023~2027)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전략, 추진 전략별 핵심과제 검토, 타 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검토,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등을 문헌 연구함
 -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2차 자료 분석, 제2차 기본계획 평가, 초점집단면접 등의 과정을 시행함. 우선, 2차 자료 분석은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음. 둘째, 제2차 기

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2019~2022)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2명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함.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점집단 면접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평가, 분야별 이슈나 욕구,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였음

[그림 1-1] 기본계획 수립 과정



- 문헌 연구, 2차 자료 분석, 제2차 기본계획 평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동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제3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 시민설명회, 시 관련 부서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침. 전문가 자문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함. 시민설명회는 장애 당사자를 비롯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수렴 함. 아울러 핵심과제를 담당하는 시 부서 의견수렴을 동시에 추진하였음
- 전문가 자문, 시민설명회,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 내용을 공동연구진의 협의·조정 한 후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음
- 이후에는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최종(안)을 검토·수정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보고·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함

제 2 장

장애인복지 환경 및 정책 분석



제2장 장애인복지 환경 및 정책 분석

제1절 장애인복지 현황

1. 등록 장애인 현황

1) 전국

-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은 총 2,652,860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5.2%를 차지하고 있음. 등록 장애인은 2021년 대비 약 8,100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대비 비율은 2018년부터 꾸준히 5%대를 유지하고 있음
- 등록 장애인 수는 2018년 2,585,876명에서 2022년 2,652,860명으로 약 6.6만 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 2-1 〉 등록 장애인 변동 추이

(단위: 명, %)

구분	총 인구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구 비율
2018년	51,826,059	2,585,876	5.0
2019년	51,849,861	2,618,918	5.1
2020년	51,829,023	2,633,026	5.1
2021년	51,638,809	2,644,700	5.1
2022년	51,439,038	2,652,860	5.2

주: 연도별 12월 기준.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지체장애가 44.3%(1,176,29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다음으로는 청각장애 16.0%(425,224명), 시각장애 9.5%(250,767명), 뇌병변장애 9.3%(245,477명), 지적장애 8.5%(225,708명)의 순임
- 연도별로 장애 유형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는 감소하고 있지만,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지체장애는 2018년 47.9%에서 2022년

44.3%로 감소하였고, 청각장애는 2018년 13.2%에서 2022년 16.0%, 발달장애는 2018년 9.0%에서 2022년 9.9%, 신장장애는 3.4%에서 2022년 4.0%로 증가함

〈 표 2-2 〉 장애 유형별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합계	2,585,876	100.0	2,618,918	100.0	2,633,026	100.0	2,644,700	100.0	2,652,860	100.0
지체	1,238,532	47.9	1,223,135	46.7	1,207,368	45.9	1,191,462	45.1	1,176,291	44.3
시각	252,957	9.8	253,055	9.7	252,324	9.6	251,620	9.5	250,767	9.5
청각	342,582	13.2	377,094	14.4	395,789	15.0	411,749	15.6	425,224	16.0
언어	20,744	0.8	21,485	0.8	22,391	0.9	23,064	0.9	23,349	0.9
지적	206,917	8.0	212,936	8.1	217,108	8.2	221,557	8.4	225,708	8.5
뇌병변	253,083	9.8	252,188	9.6	250,407	9.5	248,308	9.4	245,477	9.3
자폐성	26,703	1.0	28,678	1.1	30,802	1.2	33,650	1.3	37,603	1.4
정신	102,140	3.9	102,980	3.9	103,525	3.9	104,214	3.9	104,424	3.9
신장	87,892	3.4	92,408	3.5	97,530	3.7	102,135	3.9	105,842	4.0
심장	5,304	0.2	5,266	0.2	5,233	0.2	5,166	0.2	5,078	0.2
호흡기	11,761	0.5	11,522	0.4	11,544	0.4	11,541	0.4	11,451	0.4
간	12,524	0.5	13,154	0.5	13,808	0.5	14,433	0.5	15,066	0.6
안면	2,689	0.1	2,673	0.1	2,677	0.1	2,712	0.1	2,725	0.1
장루·요루	15,027	0.6	15,290	0.6	15,427	0.6	16,012	0.6	16,779	0.6
뇌전증	7,021	0.3	7,054	0.3	7,093	0.3	7,077	0.3	7,076	0.3

주: 연도별 12월 기준.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현황. 전국 장애 유형별·성별 등록 장애인 수

- 등록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83,928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8,932명으로 62.9%를 차지함
-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심한 장애가 많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100.0%), 자폐성장애(100.0%), 정신장애(99.3%), 호흡기장애(95.9%) 등의 순임. 반면, 심하지 않은 장애가 많은 장애유형은 간장애(95.2%), 장루·요루장애(90.4%), 시각장애(8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3 〉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2,652,860	100.0	983,928	37.1	1,668,932	62.9
지체	1,176,291	100.0	228,241	19.4	948,050	80.6
시각	250,767	100.0	46,427	18.5	204,340	81.5
청각	425,224	100.0	88,668	20.9	336,556	79.1
언어	23,349	100.0	11,619	49.8	11,730	50.2
지적	225,708	100.0	225,708	100.0	0	0.0
뇌병변	245,477	100.0	142,271	58.0	103,206	42.0
자폐성	37,603	100.0	37,603	100.0	0	0.0
정신	104,424	100.0	103,680	99.3	744	0.7
신장	105,842	100.0	79,225	74.9	26,617	25.1
심장	5,078	100.0	3,873	76.3	1,205	23.7
호흡기	11,451	100.0	10,981	95.9	470	4.1
간	15,066	100.0	722	4.8	14,344	95.2
인면	2,725	100.0	1,386	50.9	1,339	49.1
장루·요루	16,779	100.0	1,610	9.6	15,169	90.4
뇌전증	7,076	100.0	1,914	27.0	5,162	73.0

주: 2022.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등록 현황(2022.12.31.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6%(626,388명)로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70대 21.6%(573,767명), 80대 이상 19.5%(518,131명), 50대 15.5%(410,764명), 40대 8.3%(220,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2.8%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18년 46.7%와 비교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6.1% 포인트 증가함.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장애(87.7%), 호흡기장애(82.8%), 장루요루장애(82.4%), 지체장애(70.6%)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보다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음. 반면, 자폐성장애(87.2%), 지적장애(42.5%)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표 2-4 〉 장애 유형과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명,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합계	빈도	33,289	61,463	95,840	112,321	220,897	410,764	626,388	573,767	518,131	2,652,860
	비율	1.3	2.3	3.6	4.2	8.3	15.5	23.6	21.6	19.5	99.9
지체	빈도	705	2,987	10,594	28,384	94,952	207,720	338,246	284,039	208,664	1,176,291
	비율	0.1	0.3	0.9	2.4	8.1	17.7	28.8	24.1	17.7	100.1
시각	빈도	553	1,907	5,486	10,391	24,065	40,491	59,007	59,135	49,732	250,767
	비율	0.2	0.8	2.2	4.1	9.6	16.1	23.5	23.6	19.8	99.9
청각	빈도	1,615	2,575	4,628	5,830	11,415	26,267	66,239	116,866	189,789	425,224
	비율	0.4	0.6	1.1	1.4	2.7	6.2	15.6	27.5	44.6	100.1
언어	빈도	4,388	882	531	791	1,955	3,634	5,194	3,890	2,084	23,349
	비율	18.8	3.8	2.3	3.4	8.4	15.6	22.2	16.7	8.9	100.1
지적	빈도	10,581	34,156	51,338	40,293	35,042	28,982	18,576	5,289	1,451	225,708
	비율	4.7	15.1	22.7	17.9	15.5	12.8	8.2	2.3	0.6	99.8
뇌병변	빈도	5,067	5,505	7,442	7,925	15,557	32,282	61,872	62,588	47,239	245,477
	비율	2.1	2.2	3.0	3.2	6.3	13.2	25.2	25.5	19.2	100.0
자폐성	빈도	9,941	12,255	10,597	4,237	489	72	12	0	0	37,603
	비율	26.4	32.6	28.2	11.3	1.3	0.2	0.0	0.0	0.0	100.0
정신	빈도	0	60	2,406	8,072	20,121	36,521	27,898	7,874	1,472	104,424
	비율	0.0	0.1	2.3	7.7	19.3	35.0	26.7	7.5	1.4	100.0
신장	빈도	42	209	1,167	4,326	12,695	24,568	31,529	20,659	10,647	105,842
	비율	0.0	0.2	1.1	4.1	12.0	23.2	29.8	19.5	10.1	100.0
심장	빈도	98	218	480	310	379	657	1,168	1,156	612	5,078
	비율	1.9	4.3	9.5	6.1	7.5	12.9	23.0	22.8	12.1	100.1
호흡기	빈도	10	35	94	138	444	1,253	3,855	4,070	1,552	11,451
	비율	0.1	0.3	0.8	1.2	3.9	10.9	33.7	35.5	13.6	100.0
간	빈도	144	278	327	354	1,162	3,936	6,279	2,415	171	15,066
	비율	1.0	1.8	2.2	2.3	7.7	26.1	41.7	16.0	1.1	99.9
안면	빈도	6	33	102	247	533	639	650	395	120	2,725
	비율	0.2	1.2	3.7	9.1	19.6	23.4	23.9	14.5	4.4	100.0
장루·요루	빈도	62	126	140	261	574	1,797	4,271	5,008	4,540	16,779
	비율	0.4	0.8	0.8	1.6	3.4	10.7	25.5	29.8	27.1	100.1
뇌전증	빈도	77	237	508	762	1,514	1,945	1,592	383	58	7,076
	비율	1.1	3.3	7.2	10.8	21.4	27.5	22.5	5.4	0.8	100.0

주: 2022. 12월 기준.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현황. 전국·연령별·장애유형별·성별 등록장애인수

2) 대전

- 대전광역시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71,941명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 1,446,072명 대비 5.0%를 차지함
-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표 2-5 〉 대전광역시 등록 장애인 변동 추이

(단위: 명, %)

구분	대전광역시 인구	등록 장애인 수	장애 인구 비율
2018년	1,489,936	72,927	4.9
2019년	1,476,955	73,222	5.0
2020년	1,463,882	72,853	5.0
2021년	1,452,251	72,489	5.0
2022년	1,446,072	71,941	5.0

주: 연도별 12월 기준.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의 통계, 분야별 통계, 인구통계.

-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지체장애가 43.5%(31,32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 14.0%(10,093명), 뇌병변장애 9.8%(7,033명), 지적장애 9.7%(7,009명), 시각장애 9.6%(6,905명)가 그 뒤를 이음.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와 같은 상위 5개 유형의 장애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안면장애를 포함한 내부 장애는 6.3%(4,543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루요루장애(0.6%), 간장애(0.5%), 호흡기장애(0.4%), 뇌전증장애 (0.4%), 심장장애 (0.2%), 안면장애(0.1%)는 장애 인구의 비율이 각각 1% 미만으로 조사됨
- 연도별로 장애 유형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지체장애는 43.5%로 해마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청각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자폐성장애의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표 2-6 〉 대전광역시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합계	72,927	100.0	73,222	100.0	72,853	100.0	72,489	100.0	71,941	100.0
지체	33,776	46.3	33,193	45.3	32,542	44.7	31,992	44.1	31,329	43.5
시각	7,080	9.7	7,035	9.6	6,996	9.6	6,942	9.6	6,905	9.6
청각	9,507	13.0	10,077	13.8	10,196	14.0	10,142	14.0	10,093	14.0
언어	571	0.8	568	0.8	592	0.8	603	0.8	609	0.8
지적	6,305	8.6	6,531	8.9	6,650	9.1	6,845	9.4	7,009	9.7
뇌병변	7,532	10.3	7,438	10.2	7,284	10.0	7,193	9.9	7,033	9.8
자폐성	984	1.3	1,028	1.4	1,082	1.5	1,130	1.6	1,188	1.7
정신	3,139	4.3	3,179	4.3	3,210	4.4	3,221	4.4	3,232	4.5
신장	2,569	3.5	2,691	3.7	2,836	3.9	2,931	4.0	3,002	4.2
심장	132	0.2	125	0.2	119	0.2	111	0.2	118	0.2
호흡기	296	0.4	300	0.4	293	0.4	284	0.4	275	0.4
간	304	0.4	327	0.4	344	0.5	358	0.5	379	0.5
안면	77	0.1	75	0.1	72	0.1	75	0.1	81	0.1
장루·요루	393	0.5	396	0.5	386	0.5	407	0.6	431	0.6
뇌전증	262	0.4	259	0.4	251	0.3	255	0.4	257	0.4

주: 연도별 12월 기준.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현황. 시도별·장애유형별·성별 등록장애인수

- 등록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8,19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는 43,747명으로 60.8%를 차지함
-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을 보면, 심한 장애가 많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100.0%), 자폐성장애(100.0%), 정신장애(99.3%), 호흡기장애(94.9%), 신장장애(75.5%) 심장장애(7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심하지 않은 장애가 많은 장애 유형은 간장애(94.2%), 장루·요루장애(88.9%), 시각장애(80.8%), 지체장애(80.7%), 청각장애(7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7 〉 대전광역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71,941	100.0	28,194	39.2	43,747	60.8
지체	31,329	100.0	6,060	19.3	25,269	80.7
시각	6,905	100.0	1,323	19.2	5,582	80.8
청각	10,093	100.0	2,072	20.5	8,021	79.5
언어	609	100.0	348	57.1	261	42.9
지적	7,009	100.0	7,009	100.0	0	0.0
뇌병변	7,033	100.0	4,178	59.4	2,855	40.6
자폐성	1,188	100.0	1,188	100.0	0	0.0
정신	3,232	100.0	3,209	99.3	23	0.7
신장	3,002	100.0	2,268	75.5	734	24.5
심장	118	100.0	89	75.4	29	24.6
호흡기	275	100.0	261	94.9	14	5.1
간	379	100.0	22	5.8	357	94.2
인면	81	100.0	48	59.3	33	40.7
장루·요루	431	100.0	48	11.1	383	88.9
뇌전증	257	100.0	71	27.6	186	72.4

주: 2022. 12월 기준.

자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연령별로는 60대가 23.6%(16,96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0대 19.7%(14,137명), 80대 이상 17.5%(12,585명), 50대 16.5%(11,844명) 등의 순임.
-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48.4%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반면 20대 이하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4.5%(3,252명)에 불과함
-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보다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음. 반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표 2-8 〉 대전광역시 장애 유형과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명,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합계	빈도	1,006	2,012	3,375	3,435	6,578	11,844	16,969	14,137	12,585	71,941
	비율	1.4	2.8	4.7	4.8	9.1	16.5	23.6	19.7	17.5	100.0
지체	빈도	19	83	403	841	2,812	5,980	9,289	6,982	4,920	31,329
	비율	0.1	0.3	1.3	2.7	9.0	19.1	29.6	22.3	15.7	100.0
시각	빈도	24	58	179	366	738	1,163	1,648	1,486	1,243	6,905
	비율	0.3	0.8	2.6	5.3	10.7	16.8	23.9	21.5	18.0	100.0
청각	빈도	53	61	162	139	308	698	1,529	2,631	4,512	10,093
	비율	0.5	0.6	1.6	1.4	3.1	6.9	15.1	26.1	44.7	100.0
언어	빈도	93	29	18	17	58	105	143	88	58	609
	비율	15.3	4.8	30.	2.8	9.5	17.2	23.5	14.4	9.5	100.0
지적	빈도	388	1,166	1,738	1,278	1,054	796	440	124	25	7,009
	비율	5.5	16.6	24.8	18.2	15.0	11.4	6.3	1.8	0.4	100.0
뇌병변	빈도	173	185	309	243	465	932	1,722	1,653	1,351	7,033
	비율	2.5	2.6	4.4	3.5	6.6	13.3	24.5	23.5	19.2	100.0
자폐성	빈도	240	397	404	134	11	2	0	0	0	1,188
	비율	20.2	33.4	34.0	11.3	0.9	0.2	0.0	0.0	0.0	100.0
정신	빈도	0	2	84	248	618	1,142	836	256	46	3,232
	비율	0.0	0.1	2.6	7.7	19.1	35.3	25.9	7.9	1.4	100.0
신장	빈도	2	3	28	116	373	741	883	579	277	3,002
	비율	0.1	0.1	0.9	3.9	12.4	24.7	29.4	19.3	9.2	100.0
심장	빈도	4	5	14	5	14	17	29	21	9	118
	비율	3.4	4.2	11.9	4.2	11.9	14.4	24.6	17.8	7.6	100.0
호흡기	빈도	0	1	2	5	6	29	89	100	43	275
	비율	0.0	0.4	0.7	1.8	2.2	10.5	32.4	36.4	15.6	100.0
간	빈도	6	9	10	4	32	118	143	54	3	379
	비율	1.6	2.4	2.6	1.1	8.4	31.1	37.7	14.2	0.8	100.0
안면	빈도	0	3	3	8	16	18	23	10	0	81
	비율	0.0	3.7	3.7	9.9	19.8	22.2	28.4	12.3	0.0	100.0
장루·요루	빈도	2	1	4	8	17	43	126	132	98	431
	비율	0.5	0.2	0.9	1.9	3.9	10.0	29.2	30.6	22.7	100.0
뇌전증	빈도	2	9	17	23	56	60	69	21	0	257
	비율	0.8	3.5	6.6	8.9	21.8	23.3	26.8	8.2	0.0	100.0

주: 2022. 12월 기준.

자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 전국

- 2022년 기준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943개소로, 거주시설 1,532개소, 지역 사회재활시설 1,601개소, 직업재활시설 792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시도별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경기 771개소, 서울 632개소, 경남 284개소, 경북 269개소, 부산 202개소, 전북 193개소, 대전 190개소 등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복지시설의 35.6%가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이 751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355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2개소, 단기거주시설 165개소가 그 뒤를 이음. 공동생활가정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6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148개소, 경남 54개소, 광주 51개소, 충북 49개소, 인천 43개소 등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을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이 840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263개소, 수어통역센터 204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65개소, 재활치료시설 73개소, 장애인체육관 31개소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대다수 시도에서 주간보호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련시설은 서울에 1개소가 운영 중임
- 직업재활시설은 792개소 중 22.6%(179개소)가 경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어서 서울 139개소, 경남 62개소, 경북 48개소, 부산 43개소, 대구와 강원이 각각 40개소, 인천 38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9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지역	전체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 재활 시설	
		합계	유형 별	중증 장애	장애 영유 아	단기	공동	합계	장애 인복 지관	주간 보호 시설	장애 인체 육관	수어 통역 센터	생활 이동 자원 센터	점자 도서 관	도서 및 출판 시설	수련 시설	재활 치료 시설		의료 재활 시설
전국	3,943	1,532	355	252	9	165	751	1,601	263	840	31	204	165	22	2	1	73	18	792
서울	632	252	20	23	2	40	167	235	51	134	7	26	1	2	1	1	12	6	139
부산	202	64	17	8	2	3	34	94	17	67	1	7	1	1	0	0	0	1	43
대구	158	51	8	10	1	2	30	66	6	51	2	5	1	1	0	0	0	1	40
인천	173	71	11	11	1	5	43	62	11	42	0	1	1	1	0	0	6	2	38
광주	159	79	19	5	0	4	51	50	7	39	1	0	1	0	0	0	2	0	30
대전	190	80	10	11	0	20	39	75	8	49	3	5	1	1	0	0	8	2	33
울산	98	28	2	9	0	7	10	53	4	41	2	2	1	1	0	0	2	0	17
세종	21	6	3	1	0	0	2	7	1	3	0	1	1	1	0	0	0	0	8
경기	771	315	88	52	1	26	148	277	38	152	4	31	31	5	0	0	16	0	179
강원	178	68	19	15	0	9	25	69	11	19	0	19	19	1	0	0	0	1	40
충북	183	92	23	14	0	6	49	62	12	25	1	12	11	1	0	0	0	1	28
충남	150	55	18	16	0	7	14	68	17	19	1	15	15	1	0	0	0	0	27
전북	193	70	34	12	1	2	21	95	13	34	5	15	15	1	0	0	12	0	28
전남	183	71	31	8	0	5	27	90	18	28	0	21	21	2	0	0	0	0	22
경북	269	93	28	35	0	11	19	127	21	55	3	23	24	1	0	0	0	1	48
경남	284	98	17	15	1	11	54	122	22	53	1	20	20	1	1	0	4	2	62
제주도	99	39	7	7	0	7	18	49	6	29	0	1	1	1	0	0	11	1	10

주: 2022년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 대전

- 2022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82개소이며, 장애인거주시설 80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6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3개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 의료재활시설 2개소임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51개소로 장애인복지시설의 27.9%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구 40개소, 대덕구 34개소, 중구 31개소 유성구 26개소 순임
-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39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0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1개소,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10개소 순임. 장애인거주시설은 서구가 26개소로 거주시설의 32.5%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구가 19개소, 중구와 대덕구가 13개소, 유성구가 9개소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서구가 가장 많고, 공동생활가정은 중구와 서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거주시설은 모든 시설유형에서 서구의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49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8개소, 수어통역센터 5개소, 장애인 체육시설 3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임.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자치구별로 설치율이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구와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시설 수가 적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33개소이며, 보호작업장 24개소, 직업적응훈련 5개소, 근로사업장 4개소임. 직업재활시설은 서구가 10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성구가 4개소로 가장 적음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유성구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의료재활시설 또한 유성구에 2개소가 운영 중임

〈 표 2-10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182	40	31	51	26	34
거주시설	소계	80	19	13	26	9	13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0	1	1	4	1	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1	1	2	5	1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0	4	4	4	4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9	13	6	13	3	4
지역사회 재활시설	소계	66	15	13	15	10	13
	장애인복지관	8	3	1	1	2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9	11	9	12	7	10
	장애인 체육시설	3	0	0	1	1	1
	수어통역센터	5	1	1	1	1	1
	생활이동지원센터	1	0	1	0	0	0
	점자도서관	1	0	1	0	0	0
기타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3	6	5	10	4	8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1	0	0	0	1	0
	의료재활시설	2	0	0	0	2	0

주 2022. 12월 기준.

자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내부 자료.

3.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1) 광역시도

- 2022년 기준 17개 시도의 평균 장애인 총예산은 69,032억 원이며, 2018년 장애인 예산 대비 61.2%가 증가함.¹⁾ 17개 시도의 장애인 총예산은 시도 총예산 2,045,906억 원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음

1) 장애인복지 예산을 포함한 전 부처의 장애인 관련 정책 사업예산을 장애인 예산, 즉 장애인 정책예산이라고 정의함. 장애인 정책예산은 장애인을 위한 예산과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우대 조치나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예산을 포함함(고영란, 2022).

- 시도별로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이 1,430,817백만 원으로 장애인 예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1,119,997백만 원, 부산 535,726백만 원, 대구 417,617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총예산을 시도 총예산 대비 살펴보면, 대전 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 5.2%, 대구 4.1%, 부산 3.8%, 울산 3.8%, 전북 3.6%, 경남 3.6% 등의 순임

〈 표 2-11 〉 시도별 장애인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8년		2020년		2022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서울	950,762	3.0	1,246,728	3.0	1,430,817	3.2
부산	342,335	3.4	461,343	3.3	535,726	3.8
대구	272,730	3.5	335,673	3.4	417,617	4.1
인천	216,520	2.9	309,820	3.1	369,604	2.8
광주	210,003	4.7	279,959	4.9	364,513	5.2
대전	199,362	4.6	262,234	3.6	334,876	5.3
울산	96,503	2.8	126,022	4.9	166,203	3.8
세종	27,437	1.8	39,774	3.7	55,345	2.9
경기	575,920	2.6	891,689	3.2	1,119,997	3.3
강원	120,877	2.6	173,452	2.5	194,622	2.7
충북	138,146	3.3	175,941	3.3	211,684	3.4
충남	205,569	3.9	239,374	2.8	275,233	3.1
전북	175,432	3.1	239,463	2.9	304,069	3.6
전남	167,725	2.5	240,617	3.5	279,522	2.8
경북	210,596	2.7	299,745	1.3	339,551	3.0
경남	218,301	3.0	326,381	3.4	408,006	3.6
제주	153,458	3.1	73,653	3.5	95,801	1.5
합계/평균	4,281,678	3.1	5,721,869	3.3	6,903,187	3.4

자료: 고영란(2022).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2022년 기준 17개 시도의 평균 장애인 1인당 예산은 2,885천 원으로, 2018년 대비 47.8%가 증가함
- 시도별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광주가 5,203천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대전 4,597천 원, 세종 4,483천 원, 서울 3,630천 원, 대구 3,304천 원, 부산 3,039천 원 등의 순임. 반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2,000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경기, 강원, 전남, 경북으로 나타남

〈 표 2-12 〉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2018년			2022년			1인당 예산 증감률
	장애인 예산	장애인 인구 수	장애인 1인당 예산(천원)	장애인 예산	장애인 인구 수	장애인 1인당 예산(천원)	
서울	950,762	391,753	2,427	1,430,817	394,190	3,630	49.6
부산	342,335	171,384	1,997	535,726	176,293	3,039	52.2
대구	272,730	119,766	2,277	417,617	126,398	3,304	45.1
인천	216,520	138,304	1,566	369,604	146,321	2,526	61.3
광주	210,003	69,233	3,033	364,513	70,061	5,203	71.5
대전	199,362	72,180	2,762	334,876	72,853	4,597	66.4
울산	96,503	50,205	1,922	166,203	51,122	3,251	69.1
세종	27,437	10,623	2,583	55,345	12,346	4,483	73.6
경기	575,920	533,259	1,080	1,119,997	569,726	1,966	82.0
강원	120,877	99,959	1,209	194,622	101,615	1,915	58.4
충북	138,146	95,844	1,441	211,684	97,932	2,162	50.0
충남	205,569	128,503	1,600	275,233	134,250	2,050	28.2
전북	175,432	131,303	1,336	304,069	132,207	2,300	72.1
전남	167,725	142,174	1,180	279,522	140,942	1,983	68.1
경북	210,596	172,533	1,220	339,551	181,366	1,872	53.4
경남	218,301	183,510	1,190	408,006	188,749	2,162	81.7
제주	153,458	35,104	4,372	95,801	36,655	2,614	-40.2
합계/평균	4,281,678	2,545,637	1,952	6,903,187	2,633,026	2,885	47.8

자료: 고영란(2022).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 대전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사업은 크게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재가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기타 사회복지 보조 등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해당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예산은 2023년 기준 335,137백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00.9% 증가하여,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8년 166,858백만 원, 2019년 192,977백만 원, 2020년 232,228백만 원, 2021년 277,054백만 원, 2022년 280,499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사업 항목별 예산은 2023년 기준 장애인단체지원 1,210백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101,852백만 원, 재가장애인 복지지원 177,792백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2,798백만 원, 기타 사회복지보조 등 1,485백만 원임
- 장애인복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기타 사회복지 보조 예산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은 333,652백만 원으로 99.6%를 차지함

〈 표 2-13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66,858	192,977	232,228	277,054	280,499	335,137
장애인단체지원	656	1,196	1,111	1,087	1,118	1,210
장애인복지시설지원	66,820	72,109	80,766	103,071	96,162	101,852
재가장애인 복지지원	62,774	78,769	106,221	125,071	134,117	177,79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5,538	40,471	43,704	46,979	48,205	52,798
기타 사회복지보조 등	1,070	432	426	846	897	1,485

자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내부 자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조례

- 정부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 규제를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08)
- 이후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 17개 시도에서도 자치법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울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도입을 위해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 편의제공 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함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 기관과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 특히 경기와 강원은 학대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급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표 2-14 〉 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구분	조례명	제정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01. 13.	기본계획 수립, 전수조사
부산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 04. 03.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구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05. 30.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인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 10. 24.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 03. 02.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 08. 05.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동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 08. 05.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중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 06. 10.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2. 06. 15.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 10. 14.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덕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8. 11. 06.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울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 11. 20.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 04. 10.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기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2. 04. 06.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등에 관한 조례	2011. 09. 23.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충북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7.09. 29.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충남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 07. 30.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북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 11. 08.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2010. 05. 13.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북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 12. 31.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남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9. 06. 07.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 06. 29.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2절 장애인학대 피해 및 권리구제 현황²⁾

1.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1) 신고접수 현황

-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접수 시 학대 의심 사례와 일반사례로 구분되며, 학대 의심 사례는 현장 조사와 사례 회의를 거쳐 학대 사례, 비학대 사례, 잠재적 위험사례로 최종 판단됨
-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53.3%), 일반사례는 2,317건(46.7%)임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 대비 43.9% 증가함

〈 표 2-15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계	3,658	100.0	4,376	100.0	4,208	100.0	4,957	100.0	4,958	100.0
학대의심사례	1,835	50.2	1,923	43.9	2,069	49.2	2,461	49.6	2,641	53.3
일반사례	1,823	49.8	2,453	56.1	2,139	50.8	2,496	50.4	2,317	46.7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2022년 학대 의심사례 2,641건 중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신고는 32.8%(865건),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의 신고는 67.2%(1,776건)로 나타남
-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2.9%(37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7%(205건), 초·중등학교 종사자 11.2%(97건), 장애인활동지

2) 본 절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이 발간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함

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8.7%(7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11.4% 증가하였으며, 초·중고 교직원 및 교사에 의한 신고는 또한 37.1% 증가함. 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28.8%가 감소함
-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은 피해장애인을 기준으로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됨.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유관기관 종사자의 신고가 40.9%(726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본인 24.5%(435건), 가족 및 친인척 19.9%(353건), 타인 12.6%(224건), 파악 안 됨 2.1%(38건)로 나타남
-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에 의한 신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본인 신고율로 2018년 194건에서 2022년 435건으로 큰 증가 폭을 보임
-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435건으로 이는 전체 학대 의심 사례의 16.5%에 해당함. 직접 피해 신고한 본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48.7%(21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16.3%(71건), 뇌병변장애 10.1%(44건), 정신장애 7.6%(33건) 등의 순임

〈 표 2-16 〉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계	1,835	100.0	1,923	100.0	2,069	100.0	2,461	100.0	2,641	100.0
신고의무자	802	43.7	858	44.6	728	35.2	771	31.3	865	32.8
비신고의무자	1,033	56.3	1,065	55.4	1,341	64.8	1,690	68.7	1,776	67.2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2022년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학대 의심 사례 2,641건 중 1,186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함. 이외에 비학대 사례는 1,070건(40.5%), 잠재 위험사례는 230건(7.7%), 조사 중인 사례는 155건(5.9%)으로 나타남
- 2022년 장애인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대비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17 〉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계	1,835	100.0	1,923	100.0	2,089	100.0	2,461	100.0	2,641	100.0
학대사례	889	48.4	945	49.1	1,008	48.7	1,124	45.7	1,186	44.9
비학대사례	796	43.4	783	40.7	683	33.0	933	37.9	1,070	40.5
잠재위험사례	150	8.2	195	10.1	218	10.5	307	12.5	230	7.7
조사 중 사례	-	-	-	-	160	7.7	97	3.9	155	5.9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한 학대의심사례 총 3,363건(2022년 이전 사례 722건, 2022년 사례 2,641건)에 대해 총 22,726회의 상담 및 지원을 함. 사례별로 평균 6.8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짐.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전년도 대비 148건,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0.6회 감소함
-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76명은 총 3,363건의 사례에 대해 22,726회의 상담 및 지원을 함. 상담원 1명은 한 해 평균 44.3건의 사례를 담당하였고, 299.0회의 상담 및 지원을 함.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사례 건수는 평균 1.6건 감소하였으며, 상담 및 지원 횟수는 98.1회 감소함

〈 표 2-18 〉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담 및 지원 횟수	15,885	24,785	20,215	22,874	22,726
상담원 1명당 담당사례수	45.9	42.8	39.3	44.0	44.3
상담원 1명당 상담 및 지원 횟수	397.1	459.0	326.0	326.8	299.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2) 학대 사례 현황

- 2022년 학대 의심 사례 2,641건 중 학대로 판정된 1,186건에 대한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51.5%(611명), 남성이 48.5%(575명)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25.9%(30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7세 이하 21.0%(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의 순임. 전체 학대 사례의 21.0%가 장애아동으로 나타남. 17세 이하는 전년도 보다 6.2% 증가함
-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67.9%(805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7.0%(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정신장애 3.0%(35건) 등의 순임.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74.4%)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피해 장애의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215건)보다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917건)의 수가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대 사례 1,186건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4.6%(54명)로 나타남
- 피해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96.5%(1,092건)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5%(40건)로 나타남
-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 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 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재학대 사례라고 함. 2022년 재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7.8%(92건)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함

〈 표 2-19 〉 피해장애인 특성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성별	남성	488	54.9	496	52.5	489	48.5	563	50.1	575	48.5
	여성	401	45.1	449	47.5	519	51.5	561	49.9	611	51.5
연령	17세 이하	127	14.3	163	17.2	133	13.2	166	14.8	249	21.0
	18~19세					31	3.1	40	3.6	36	3.0
	20대	211	23.7	205	21.7	276	27.4	287	25.5	307	25.9
	30대	165	18.6	176	18.6	173	17.2	184	16.4	193	16.3
	40대	151	17.0	167	17.7	176	17.5	176	15.7	159	13.4
	50대	142	16.0	147	15.6	124	12.3	145	12.9	138	11.6
	60~64세	93	10.4	86	9.1	60	6.0	72	6.4	54	4.6
	65세 이상					35	3.5	54	4.8	50	4.2
	파악 안 됨	-	-	1	0.1	-	-	-	-	-	-
장애 유형	지체장애	61	6.9	67	7.1	99	9.8	68	6.0	61	5.1
	뇌병변장애	46	5.2	58	6.1	55	5.5	62	5.5	83	7.0
	시각장애	15	1.7	22	2.3	27	2.7	31	2.8	28	2.4
	청각장애	26	2.9	13	1.4	41	4.1	39	3.5	26	2.2
	언어장애	13	1.5	6	0.6	2	0.2	11	1.0	10	0.8
	지적장애	587	66.0	623	65.9	658	65.3	761	67.7	805	67.9
	지체성장애	22	2.5	37	3.9	25	2.5	46	4.1	77	6.5
	정신장애	50	5.6	55	5.8	36	3.6	49	4.4	35	3.0
	신장장애	3	0.3	1	0.1	3	0.3	1	0.0	2	0.2
	심장장애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안면장애	2	0.2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뇌전증장애	3	0.3	3	0.3	4	0.4	4	0.4	5	0.4
	미등록	61	6.9	60	6.3	58	5.8	52	4.6	54	4.6
장애 정도	심한 장애	790	95.4	853	96.4	896	94.3	1,024	95.5	1,092	96.5
	심하지 않은 장애	37	4.5	32	3.6	54	5.7	48	4.5	40	3.5
	파악 안 됨	1	0.1	-	-	-	-	-	-	-	-
재학대 건수	-	-	-	-	49	4.9	81	7.2	92	7.8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 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³⁾. 2022년 기준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70.8%(840명), 여성이 29.2%(346명)로 조사됨.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배 많음
- 피해장애인과 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36.4%(43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인 35.8%(425건),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6%(3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족과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2020년 32.8%(331건)에서 2022년 36.4%(432건)로 증가하였으며, 타인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하고 있음
- 학대 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에 의한 학대가 20.6%(244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1%(227건), 부(父) 10.5%(125건), 모르는 사람 7.9%(94건), 모(母) 7.3%(87건), 배우자 6.3%(75건) 등의 순임

〈 표 2-20 〉 학대 행위자 특성

(단위: 명,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성별	남성	573	64.5	660	69.8	679	67.4	792	70.5	840	70.8
	여성	310	34.9	273	28.9	329	32.6	332	29.5	346	29.2
	미파악	6	0.7	12	1.3	-	-	-	-	-	-
피해장애인의 관계	가족과 친인척	271	30.5	253	26.8	331	32.8	407	36.2	432	36.4
	타인	264	29.7	365	38.6	420	41.7	432	38.4	425	35.8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349	39.3	321	34.0	237	23.5	258	23.0	304	25.6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4	1.4	21	1.9	16	1.3
	본인	-	-	-	-	2	0.2	1	0.1	2	0.2
	미파악	5	0.6	6	0.6	4	0.4	5	0.4	7	0.6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3) 장애인학대 행위자는 사례에 따라 한 명 이상일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사례별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한 명에 대한 정보만 집계하여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수는 같음

-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0%(486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20.7%(245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93건), 기타 6.4%(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학대는 2018년부터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행위자 거주지, 교육기관 등에서도 지속해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

〈 표 2-21 〉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피해장애인 거주지	311	35.0	310	32.8	394	39.1	462	41.1	486	41.0
학대행위자 거주지	70	7.9	79	8.4	93	9.2	107	9.5	93	7.8
기타 거주지	-	-	-	-	9	0.9	23	2.0	13	1.1
직장(일하는 곳)	109	12.3	76	8.0	99	9.8	58	5.2	60	5.1
교육기관	38	4.3	41	4.3	30	3.0	25	2.2	66	5.6
일반 의료기관	21	2.4	30	3.2	4	0.4	6	0.5	5	0.4
정신 의료기관					9	0.9	4	0.4	6	0.5
장애인복지시설	245	27.6	277	29.3	176	17.5	221	19.7	245	20.7
그 외 보호시설(쉼터)	30	3.4	22	2.3	1	0.1	2	0.2	3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0	2.0	5	0.4	29	2.4
정신요양시설					2	0.2	-	-	1	0.1
정신재활시설					-	-	1	0.1	2	0.2
아동관련시설					1	0.1	11	1.0	2	0.2
노인관련시설					4	0.4	5	0.4	-	-
기타 복지관련시설					2	0.2	8	0.7	6	0.5
종교시설					7	0.8	11	1.2	11	1.1
미신고시설	-	-	18	1.9	22	2.2	28	2.5	-	-
온라인	-	-	-	-	5	0.5	15	1.3	25	2.1
상업시설	-	-	51	5.4	61	6.1	56	5.0	56	4.7
기타	53	6.0	18	1.9	56	5.6	83	7.7	76	6.4
미파악	5	0.6	12	1.3	9	0.9	1	0.1	7	0.6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를 각각 장애인 학대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2022년 장애인 학대유형은 총 1,567건으로 나타남
- 장애인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4.3%(538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5.6%(401건), 경제적 착취 17.4%(273건), 성적 학대 14.0%(219건), 방임 8.5%(1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학대유형 중 신체적 학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경제적 착취는 2021년 대비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학대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2-22 〉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계	1,234	100.0	1,258	100.0	1,264	100.0	1,400	100.0	1,567	100.0
신체적 학대	339	27.5	415	33.0	378	29.9	482	34.4	538	34.3
정서적 학대	221	17.9	253	20.1	311	24.6	289	20.6	401	25.6
성적 학대	111	9.0	119	9.5	134	10.6	149	10.6	219	14.0
경제적 착취	302	24.5	328	26.1	321	25.4	366	26.1	273	17.4
유기	32	2.6	15	1.2	-	-	-	-	3	0.2
방임	229	18.6	128	10.2	120	9.5	114	8.1	133	8.5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은 피해자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음
- 2022년 학대 사례 1,186건에 대해 11,732회의 지원이 이루어짐. 이 중 피해자 및 가족, 관련자 등에 이뤄지는 상담 지원이 63.7%(7,477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법 지원 14.6%(1,718회), 복지지원 6.8%(797회), 거주 지원 4.8%(56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23 〉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201	100.0	1,981	100.0	11,620	100.0	12,411	100.0	11,732	100.0
의료	58	4.8	111	5.6	379	3.3	326	2.6	281	2.4
심리	108	9.0	106	5.4	134	1.2	127	1.0	370	3.2
거주	120	10.0	143	7.2	935	8.0	823	6.6	561	4.8
사법	282	23.5	431	21.8	1,692	14.6	2,135	17.2	1,718	14.6
복지	122	10.2	279	14.1	933	8.0	992	8.0	797	6.8
예방교육	-	-	-	-	22	0.2	21	0.2	30	0.3
학업	-	-	-	-	-	-	-	-	40	0.3
중재	-	-	-	-	79	0.7	94	0.8	55	0.5
진정	-	-	-	-	17	0.1	25	0.2	6	0.1
상담	-	-	-	-	6,517	56.1	7,241	58.3	7,477	63.7
기타	511	42.5	911	46.0	912	7.8	627	5.1	397	3.4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2. 대전광역시 장애인학대 현황

-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180건이며,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99건(55.0%), 일반사례는 81건(45.0%)으로 나타남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48건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대비 23.9% 증가함

〈 표 2-24 〉 대전광역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계	148	100.0	149	100.0	158	100.0	169	100.0	180	100.0
학대 의심 사례	46	31.1	64	43.0	65	41.1	99	58.6	99	55.0
일반사례	102	68.9	85	57.0	93	58.9	70	41.4	81	45.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 2022년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학대 의심 사례 99건 중 54건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학대 사례는 22.2%(22건), 잠재 위험사례 10.1%(10건), 조사 중 사례 13.1%(13건)로 나타남
- 2022년 장애인 학대 사례 판정율은 201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잠재 위험사례 판정율은 증가함

〈 표 2-25 〉 대전광역시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빈도	비율								
계	46	100.0	64	100.0	65	100.0	99	100.0	99	100.0
학대 사례	33	71.7	30	46.9	32	49.2	37	37.4	54	54.5
비학대 사례	10	21.7	31	48.4	22	33.8	42	42.4	22	22.2
잠재 위험사례	3	6.5	3	4.7	8	12.3	10	10.1	10	10.1
조사 중 사례	-	-	-	-	3	4.6	10	10.1	13	13.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한 학대 의심 사례 134건(2022년 이전 사례 35건, 2022년 사례 99건)에 대해 총 1,174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짐
-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2명은 총 134건의 사례에 대해 1,1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함. 상담원 1명은 한 해 평균 67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으며, 587회의 상담 및 지원함. 이는 전국 평균(상담원 1명 평균 44.3건, 299회)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치임
- 또한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사례 건수와 상담 및 지원 횟수가 많이 증가함

〈 표 2-26 〉 대전광역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담 및 지원 횟수	458	498	500	1,159	1,174
상담원 1명당 담당 사례 수	23	38	35	58	67
상담원 1명당 상담 및 지원 횟수	229	249	250	524	587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각 연도)

제3절 중앙 및 타 시도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 분석

1. 중앙정부 계획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의 권고에 따라 수립함.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 기관 합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제3차 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에 이어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 중임
- 법무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 기조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기구·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함(법무부, 2023.8.28.)
-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은 ① 생명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장, ③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④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⑥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담겨있음. 주요 내용은 <표 2-27>과 같음
 - 초안에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를 정책과제로 추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보편적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대응 등을 새로 추가함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추진 과제에서 장애인 분야의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다른 정책과제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표 2-28>과 같음

〈 표 2-27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초안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 안전권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결사집회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인격권 /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참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노동권 / -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 평등 증진 / 여성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과 재외동포 / 북한이탈주민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기업과 인권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자료: 법무부(2023).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 표 2-28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초안 중 장애 관련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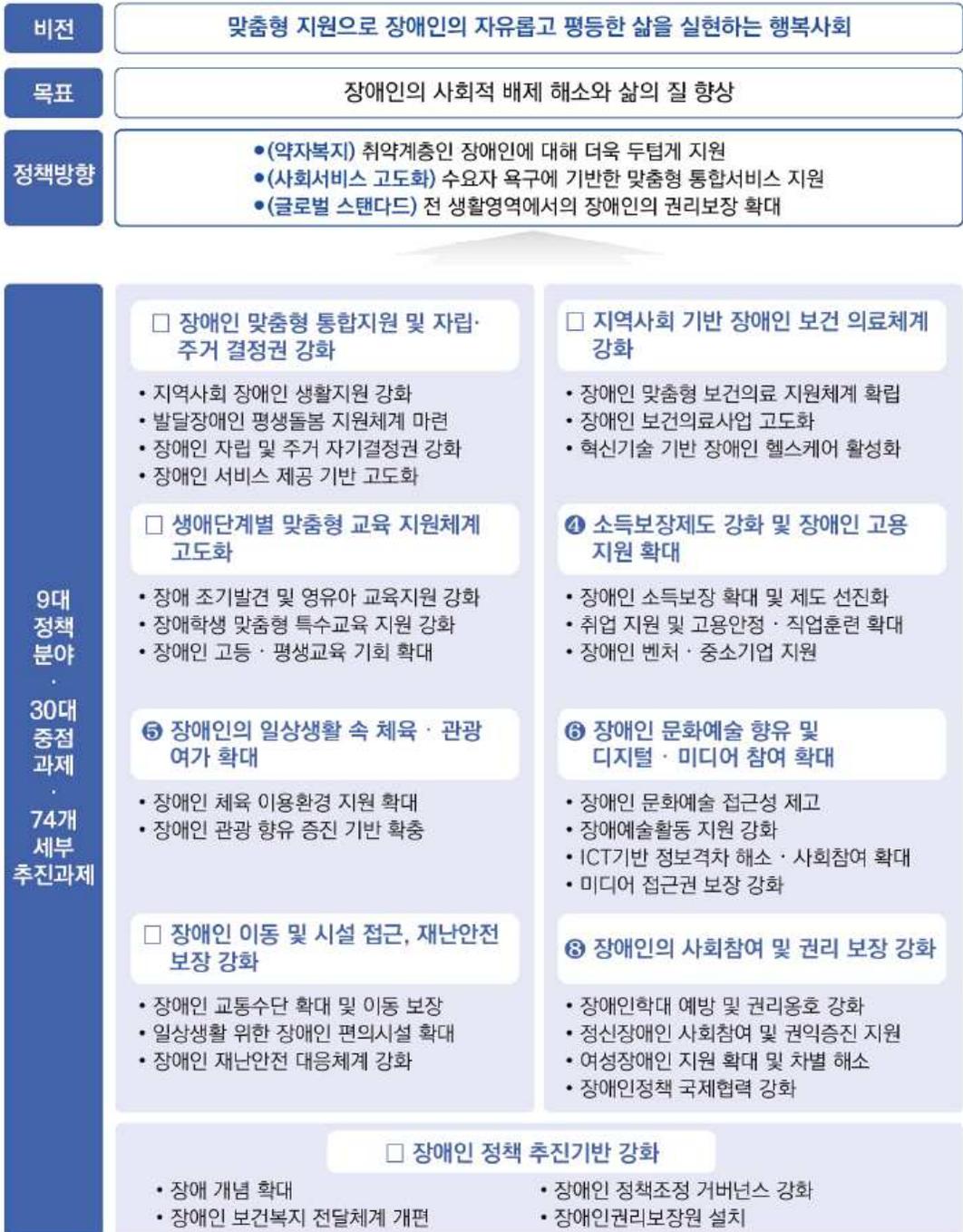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표현의 자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거주이전의 자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참정권	장애인의 공식 진출 기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노동권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평등 증진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 /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 학대 폭력에 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장애인고용 개선 /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인해교육 강화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자료: 법무부(2023).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5년 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수립하고 있음
- 1997년 제1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998~2002)을 수립·시행하여 2023년부터 제6차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임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함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②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④ 소득 보장 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⑥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⑦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⑧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⑨ 장애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9대 정책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3)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 국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 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2000년부터 5년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제1차 계획(2000~2004), 제2차 계획(2005~2009), 제3차 계획(2010~2014), 제4차 계획 (2015~2019)에 이어 현재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2020~2024)이 시행 중임
- 제5차 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상 적정 설치율 상승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개 선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함
-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의 미션은 ‘동등한 사회참여 가능한 포용적 복지사회 구축’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접근성 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이라는 비전을 설정함
-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 강화, ② 생활밀착형 시설 편의증진 강화, ③ 정보 접근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연구 및 활용성 강화, ④ 인식개선 및 글로벌네트워크 확대 강화 4대 분야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2개 중점과제를 구성함

[그림 2-2]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의 정책 비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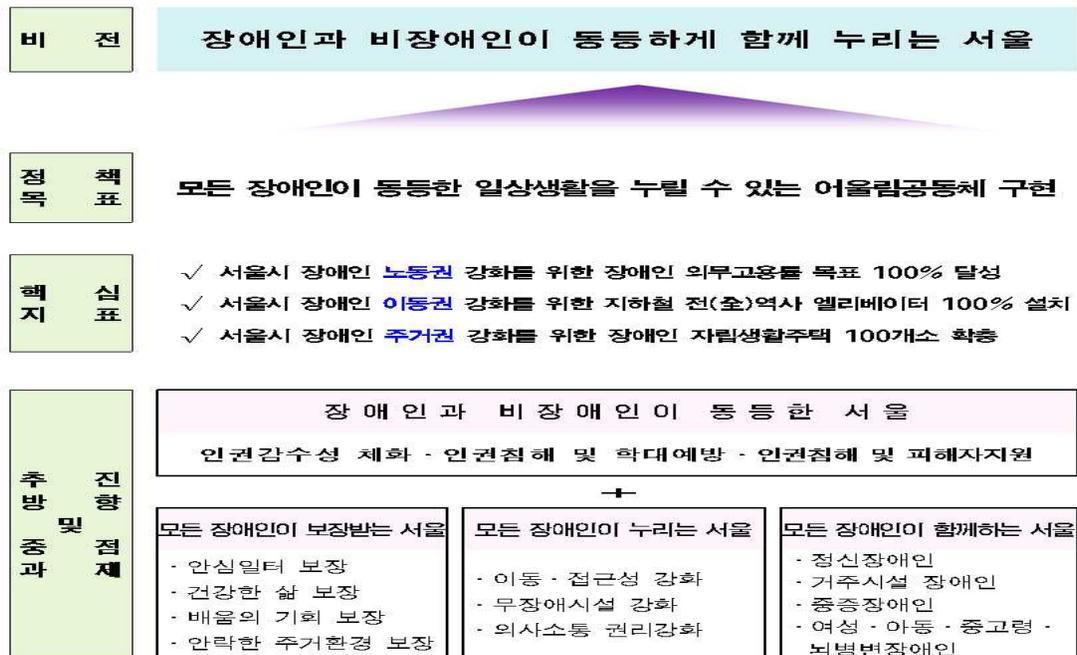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 외(2020.12.).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0~2024년).

2. 타 시도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

1)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2014년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4~2018)에 이어 2019년부터 제2기 기본계획(2019~2023)이 수립되어 추진 중임
-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공동체 구현을 목표를 제시함
- 제2기 기본계획은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②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③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④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4대 분야에서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 사업을 제시함

[그림 2-3]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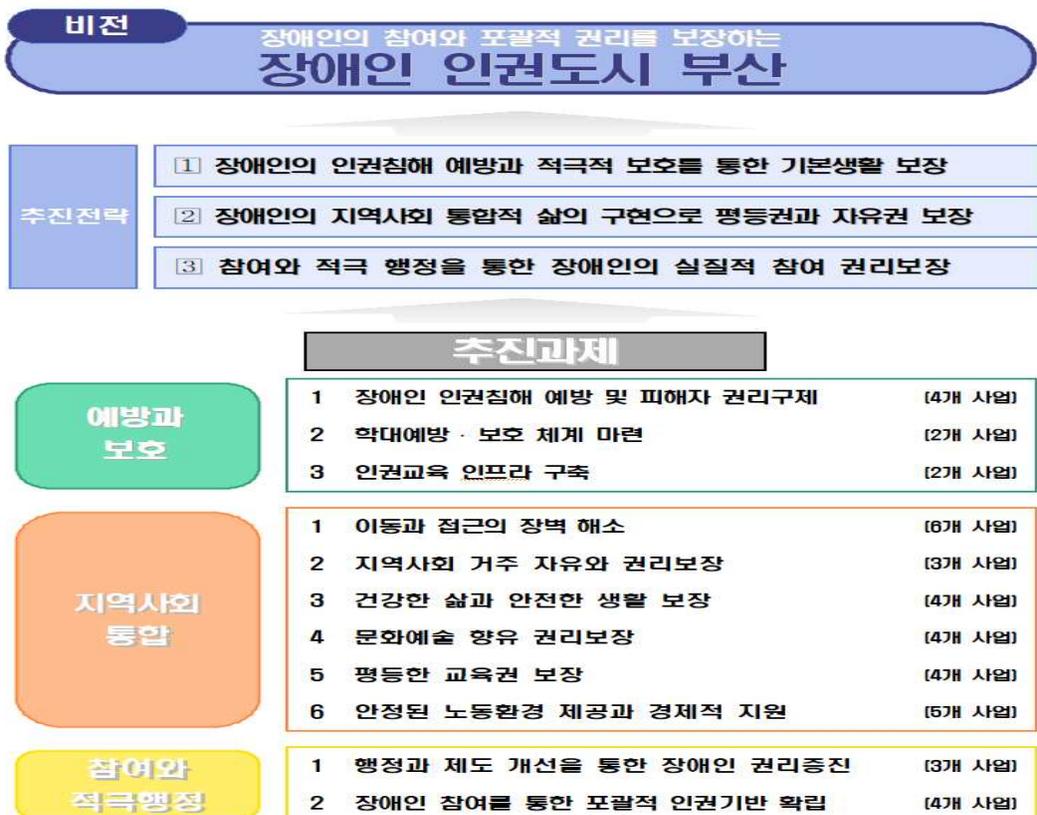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2019.3.).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 부산은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부산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5년 마다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함
- 계획은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반영 및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추진 방향으로 ‘장애인의 참여와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 을 비전으로 설정함
-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①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 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②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 으로 장애인의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③ “참여와 적극 행정” 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3대 전략을 수립하고 11개 추진 과제, 41개 세부 사업을 제시함

[그림 2-4]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부산광역시(2022).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

3)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13년 제1차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4-2018) 수립·시행을 시작으로 2022년 제3차 기본계획(2023~2027)(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제3차 기본계획(안)은 ‘장애인의 권리존중, 통합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도’라는 비전 하에 ①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 ②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 생활권리,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권환경, ④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4개 영역의 정책목표를 제시함
- 제3차 경기도 인권증진 기본계획(안)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개의 정책 과제와 4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함

[그림 2-5]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7) (안)의 추진 방향



자료: 김효정 외(2022).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7). 경기도.

4)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2022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 기본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 인천광역시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 반영, ② 희망 경제, 맞춤 복지, 모두가 누리는 생활문화, 균형발전, 시민을 지키는 환경조성, ③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장애 친화 도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천광역시로 발전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함
- 기본계획(안)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추진 전략, 14개 추진 과제, 34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함

[그림 2-6]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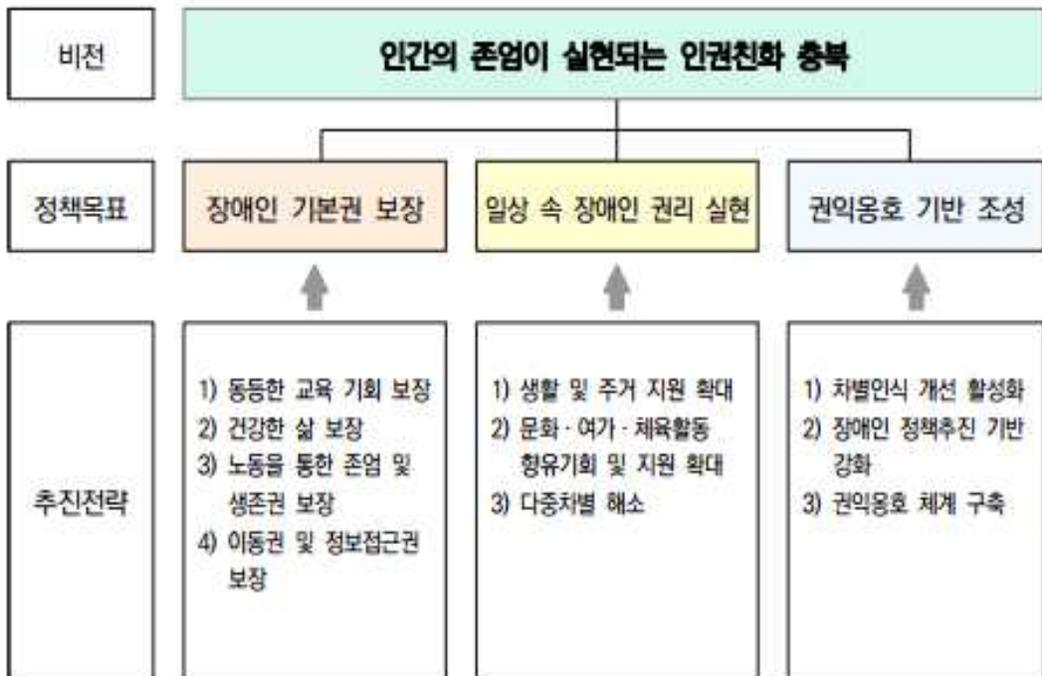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 반영 ▪ 희망 경제, 맞춤 복지, 모두가 누리는 생활문화, 균형발전, 시민을 지키는 환경조성 ▪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장애 친화 도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천광역시로 발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확대예방 및 인권보장 ▪ 장애인 기본권 보장 확대 ▪ 장애인 사회참여 보장 ▪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추진 과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1. 장애인 확대 예방 및 인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확대 예방 및 권리구제 •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
	2. 장애인 기본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권 확대 •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 장애인 건강·의료권 보장 • 장애인 교육, 문화·체육권 보장 •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3. 장애인 사회참여 (자립지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노동권 보장 •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4.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장애인 지원 • 장애아동 지원 • 정신장애인 지원

자료: 인천광역시(2022).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5)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충청북도는 2023년 제1차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은 계획의 종합성 제고,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지속가능성 확보, 실현 가능성 높임이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수립됨
- 제1차 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존중되는 이상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는 인권친화 충북’으로 비전을 설정함
- 제1차 기본계획(안)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① 장애인 기본권 보장, ② 일상 속 장애인 권리 실현, ③ 권리옹호 기반 조성 3대 정책목표, 10개 추진 전략, 29개 세부 사업을 제시함

[그림 2-7]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 김현진 외(2023).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3~2027). 충청북도.

6)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2장 제6조(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 기본계획(안)은 ‘장애인의 인권을 담고,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 장애인 기본권 보장, ②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③ 다중적 차별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함
- 기본계획(안)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4개의 정책과제, 47개 세부 계획을 제시함

[그림 2-8]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자료: 이정원(2018).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9~2023). 전라북도.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2019년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제주’라는 비전하에 장애인 차별로부터 인권 보장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제1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시행함
- 제2차 기본계획(안)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그 간의 정책 변화, 장애계의 욕구를 종합하여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 친화적 제주’를 비전으로 제안함
- 제2차 기본계획(안)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한 평등한 제주 구현, ② 정당한 편의 제공 내실화를 통한 통합적 제주, ③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어울림 제주, 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포용적 제주, ⑤ 다중차별 장애인 지원강화를 통한 안전한 제주 구현을 5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4개 중점 분야를 제시함

〈 표 2-29 〉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대분류	정책목표	중점 분야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I.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한 평등한 제주 구현	-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기반 구축 -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인권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당한 편의	II. 정당한 편의 제공 내실화를 통한 통합적 제주 구현	- 사법행정절차 및 정보접근성 강화 - 이동권 보장 강화 - 편의시설 확충 -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인 인식제고	III.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어울림 제주 구현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식 수준 제고
자립생활	IV.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포용적 제주 구현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탈시설 및 통합돌봄지원 제공 - 고용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다중차별	V. 다중차별 장애인 지원강화를 통한 안전한 제주 구현	-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보장 - 취약장애인 지원 강화

자료: 이혜경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애인개발원.

제 3 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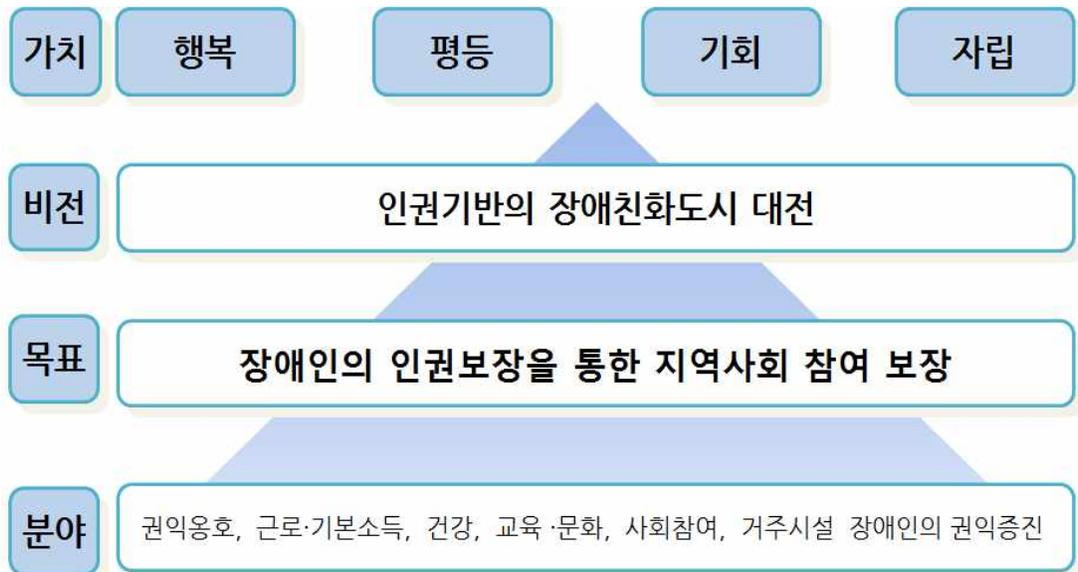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

제1절 평가 개요

1.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개요

-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됨
- 『인권기반의 장애친화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지역 사회 참여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 이를 위해 6대 분야, 46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시행함

[그림 3-1]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2.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평가 방법

□ 6대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함
- 평가위원은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및 기관 등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은 분야별로 제2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제3차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함

□ 평가내용의 구성

-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의 적절성 같은 내용은 제외하고 성과 달성도에 따른 실적 평가와 발전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함
- 평가 대상은 제2차 기본계획으로 권익옹호, 근로·기본소득, 건강, 교육·문화, 사회 참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등 6대 분야, 총 46개 핵심과제로 분야별 추진 성과를 평가함
- 평가 대상 기간은 제2차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인 2019~2023년이지만, 아직 집행 중인 2023년을 제외하고 2019~2022년 기간을 중심으로 진행함
- 평가 자료는 애초 기본계획과 연차별(2019~2023년) 시행계획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평가는 평가 틀(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실시함
- 제2차 기본계획의 평가는 6대 분야별로 구성되며, 평가 내용은 크게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 진단, 분야별 추진 실적 평가, 핵심 과제별 평가로 구성함
 -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 진단 평가는 분야별로 이행, 변경 후 이행, 미이행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 추진 실적 평가는 분야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종합평가를 함. 이 과정에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각 핵심과제의 성과 목표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도 이루어짐
 - 핵심 과제별 평가는 주요 성과, 한계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핵심 과제별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주요 성과를 종합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구성함

〈 표 3-1 〉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 분야 구성

분야(6)	추진 전략(16)	핵심과제 (46)
권익옹호	1-1. 장애인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	3
	1-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강화	5
근로·기본소득	2-1. 장애인 일자리 창출	3
	2-2. 장애인고용 지원 강화	4
	2-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2
건강	3-1.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4
	3-2.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	2
교육·문화	4-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3
	4-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	3
	4-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2
사회참여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2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3
	5-3.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강화	2
	5-4. 일상생활 지원 강화	2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6-1. 인권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	2
	6-2. 자립생활 지원 강화	4

3.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이행 진단

-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는 46개 핵심과제 중 43개 과제를 이행하여 이행률은 93.4%로 나타남. 46개 핵심과제 중 원안대로 이행한 과제가 42개, 변경하여 이행한 과제가 1개, 미이행 과제가 3개로 나타남
- 6대 분야 중 미이행 과제가 있는 분야는 권익옹호, 근로기본소득,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과제는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2 〉 제2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이행 여부 현황

분야	핵심과제 수	이행 여부		
		이행	변경 후 이행	미이행
1. 권익옹호 분야	8	7	0	1
2. 근로·기본소득 분야	9	8	0	1
3. 건강 분야	6	6	0	0
4. 교육·문화 분야	8	8	0	0
5. 사회참여 분야	9	8	1	0
6.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6	5	0	1
계	46	42	1	3

제2절 분야별 평가

1. 권익옹호 분야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권익옹호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개의 추진 전략, 8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권익옹호 분야의 2개의 추진 전략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강화를 제시 하였음
- 이러한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8개의 핵심과제 중 기본계획 원안대로 실시된 과제는 6개, 사업 내용을 바꿔서 실시한 과제는 1개,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과제는 1개임

(2) 사업 추진 현황

- 권익옹호 분야의 핵심과제 추진 현황 중 첫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인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정립을 통한 인권 교육 강화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22년부터 다시 교육을 재개하였음. 둘째,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의 경우,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조사의뢰를 2회 실시한 결과, 연구과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추진 실적이 전혀 없음. 셋째,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의 경우, 2019년부터 지속해서 문화 향유 앱 제공 모니터링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음

〈 표 3-3 〉 권익옹호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전략	핵심과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1-1.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기반 인프라 구축	1-1-1.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정립을 통한 인권 교육 강화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인권 상담 등을 통한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교폭력예방교육, 인권 상담, 법률자문회의, 사례 분석 회의, 세미나 및 토론회 등
	1-1-2.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유형별 권익보장	장애인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견수렴, 조정, 네트워크 구축 등
	1-1-3.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인이 접근 용이한 문화 향유 공간과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으로 정보 제공·개선 방안 모색	장애인 정책에 대한 차별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점 제안 등
1-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	1-2-1.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학대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제공	장애인성폭력피해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과 네트워크 연계 구축
	1-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내실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 증진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지원
	1-2-3.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도모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가족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1-2-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지적(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 지원, 권익옹호, 문화여가, 휴식 지원, 부모 교육 등을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가족 부담 완화	지적(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자립생활 기술지원, 권익옹호, 문화여가 체육 활동 지원, 특화사업, 공공 후견인 양성 교육 및 지원 등
	1-2-5. 자폐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가족 부담 완화	자폐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 두 번째 추진 전략인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살펴보면, 첫째,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우 2019년 보건복지부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1개소 설치 및 운영 중임. 둘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내실화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가사도우미를 파견 및 지원하였음. 셋째,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지속해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넷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서 지적장애인과 가정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하였음. 다섯째, 자폐성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코로나 19속에서도 성과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사업 진행이 우수함

〈 표 3-4 〉 권익옹호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추진전략	핵심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기반 인프라 구축	1-1-1.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정립을 통한 인권 교육 강화	장애인식개선교육 횟수 (단위: 회)	44	0	0	46
		교육 인원(단위: 명)	2,464	0	0	683
	1-1-2.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량	의견수렴	연구용역 의뢰	설치방안 검토	설치방안 검토
		사업비(단위: 백만원)	0	0	0	0
	1-1-3.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단위: 개소)	50	50	75	65
		사업비(단위: 백만원)	9.5	9	9	11
1-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	1-2-1.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량	공모선정	설치 운영	운영	운영
		사업비(단위: 백만원)	160	145	145	173
	1-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량(단위: 명)	50	60	60	47
		사업비(단위: 백만원)	194	194	194	199
	1-2-3.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량(단위: 명)	2,151	1,861	1,746	1,422
		사업비(단위: 백만원)	142	147	148	152
	1-2-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이용자 수(단위: 명)	1,000	1,100	1,200	1,612
		사업비(단위: 명)	122	122	123	126
	1-2-5. 자폐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이용자 수(단위: 명)	900	1,000	1,090	2,133
		사업비(단위: 백만원)	91	92	93	95

2) 추진실적 평가

- 권익옹호 분야의 경우 총 8개 핵심과제 중 6개는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1개는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음. 다만,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 사업 기간 중 2020~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기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이 지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음. 다만,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정립을 통한 인권 교육 강화 사업의 경우 인권 강사 양성이라는 세부 사업 내용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의 경우, 본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지만,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법이 미흡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미흡함
- 권익옹호 분야의 추진 실적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또한, 평가위원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1개, ‘우수’ 3개, ‘보통’ 3개, ‘매우 미흡’ 1개임. 추진 실적과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는 ‘보통’ 이라고 판단됨

〈 표 3-5 〉 권익옹호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추진전략	핵심과제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1-1.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기반 인프라 구축	1-1-1.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정립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			○		
	1-1-2.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기반 인프라 구축	○				
	1-1-3.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1-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강화	1-2-1.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
	1-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내실화			○		
	1-2-3.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1-2-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1-2-5. 자폐성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권익옹호 분야 종합평가				○		

3) 핵심 과제별 평가

(1)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정립을 통한 인권 교육 강화(1-1-1)

□ 주요성과

- 2019년도에는 목표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음.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도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코로나19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2020-2021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 한계 및 문제점

- 해당 사업은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정립을 통한 인권 교육 강화 및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을 목표로, 대전지역 소재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장애 인권 강사로 양성하고 및 파견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런데 연도별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횟수로 성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인권 강사 양성 사업에서 다소 벗어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권리구제 활동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이는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본사업으로 본 계획(인권 강사 양성)과 상관없이 추진되는 것임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개선 방안

-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권리구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인권 교육 활동도 상당히 중요함. 이에 따라 인권 교육을 향후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장애인에게도 ZOOM이나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표 3-6 〉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정립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1-1-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2)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1-1-2)

□ 주요성과

- 계획에 따른 성과는 없음. 다만 2023년에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함에 따라 설치 가능성은 존재함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대전사회복지회관 신축과 연계시킴으로써 신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 방안

- 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건축, 이동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삶과 전체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 신축과 연동할 필요는 없어 보임.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건물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다음 계획에서도 지속 추진 필요함

〈 표 3-7 〉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1-1-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3)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1-1-3)

□ 주요성과

- 문화 향유 앱 정보 제공 모니터링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임파워먼트 등에 기여했음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지역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공공기관,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등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문화 향유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표로 하였으나, 문화 향유권에 한정되어 모니터링이 되었음
- 모니터링과 앱 개발에 대한 사업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약함

□ 개선 방안

- 지역 내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문화 향유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정책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접근 용이 문화 향유 공간을 모니터링한 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책자를 발간하여 장애인 단체, 관광지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표 3-8 〉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1-1-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1-2-1)

□ 주요성과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학대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계 및 문제점

- 쉼터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고, 성인과 아동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설치 초기이다 보니 1개소만 설치되어 있음
- 성별 분리가 되지 않아 다수를 점하는 성별의 피해자만 입소 가능하고, 다른 성별의 피해자는 쉼터가 아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개선 방안

- 적정 컴퓨터 개소 수 및 인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연구(이동석 외, 2020)에 따르면 대전에는 4개소의 성인 컴퓨터가 필요함. 남녀 각 2개소 설치 운영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컴퓨터도 남녀 각 1개소씩 2개소가 필요함
-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성인 컴퓨터 3개소와 아동 컴퓨터 2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표 3-9 〉 학대피해장애인 컴퓨터 설치 및 운영(1-2-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내실화(1-2-2)

□ 주요성과

- 저소득 가정의 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계 및 문제점

- 서비스 이용 장애인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사업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함
- 하지만 코로나19, 출산율 감소 등에 따라 사업 대상 여성장애인 발굴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 하지만 혼인을 감소, 출산율 감소 등을 고려하면 확대하기 쉽지 않은 사업임. 다만, 사업 대상을

고령을 포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독거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하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사업 대상을 모든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사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시장을 보다 준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

〈 표 3-10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내실화(1-2-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6)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3)

□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에게 역량 강화 교육, 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및 동료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음
-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 능력 향상 사업을 하면서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고 취업을 위한 취업 도전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음

□ 한계 및 문제점

- 서비스 이용 여성장애인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함.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22년도 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 생애주기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

□ 개선 방안

- 일반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기에 사업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통폐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상향과 사업비도 해마다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된다면 더 많은 여성장애인에게 역량 강화, 가족 지원사업,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표 3-11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4)

□ 주요성과

-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기대됨. 서비스 이용 지적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함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이 코로나19로 겪었을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한계 및 문제점

- 2022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실인원과 건수를 보고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구체적인 이용자 수와 사업 건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 개선 방안

-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표 3-12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4)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8) 자폐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5)

□ 주요성과

- 자폐성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기대됨. 서비스 이용 자폐성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함

□ 한계 및 문제점

- 2022년의 경우, 센터 이용자 실인원과 건수를 보고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구체적인 이용자 수와 사업 건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 개선 방안

-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해마다 상승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내실화하고 보충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 표 3-13 〉 자폐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1-2-5)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총평

(1) 추진 전략 1-1. 장애인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

-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구제 조치도 중요하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교육 강화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음. 하지만 목표했던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를 인권 강사로 양성하는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
- 또 단체의 세력화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함에도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무산되었음
-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함
-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세심하게 진행하여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전략 1-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강화

-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내 실화,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자폐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목표를 달성함. 다만 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은 목표치에 다소 모자람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경우 성별 구분과 성인과 아동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성인 3개소, 아동 2개소의 증설이 필요함
-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우선하는 여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은 앞으로도 강화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여 동료상담, 개인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앞으로 더는 차별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3) 권익옹호 분야 총평

-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 전략은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그럼에도 제3차 계획에서는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은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제3차 계획에서는 당사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근로·기본소득 분야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근로·기본소득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개의 추진 전략, 9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기본소득 분야의 3개의 추진 전략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9개의 핵심과제 중 기본계획 원안대로 실시된 과제는 8개, 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이행한 과제는 1개임

(2) 사업추진 현황

- 근로·기본소득 분야의 핵심과제 추진 현황 중 첫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첫째, 건강 카페 운영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종사자 채용 숫자가 낮게 나타났음. 둘째, 행복어울림농장 운영의 경우,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셋째,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의 경우, 설치 개소 및 관리 인력을 성과 목표보다 초과하여 진행하였음
-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인고용 지원강화를 살펴보면, 첫째, 맞춤형 장애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었음. 둘째,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운영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직무지도 요원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었음. 셋째,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기간 동안 관련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음. 넷째,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연금 추가지급의 경우, 목표대로 장애인 연금을 시비로 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경우 성과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표 3-14 〉 근로·기본소득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 전략	핵심과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2-1. 장애인 일자리 창출	2-1-1. 건강 카페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인의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 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이 생산한 제빵, 커피를 판매하면서 수익으로 일자리 창출
	2-1-2.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도시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 등 농산물 생산으로 장애인의 정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표고버섯 재배 등 도시농업 일자리 체험을 통한 일자리 창출
	2-1-3.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행복충전소)	원안대로 사업 시행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인력으로 장애인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인력 배치
2-2. 장애인고용 지원 강화	2-2-1. 맞춤형 장애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인들에게 사회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통해 취업 알선 및 자립 생활 지원	직업훈련 기술 및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이나 일반기업체에 취업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실시
	2-2-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 및 복지 일자리 활성화	복지 일자리 참여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 및 배치기관과 가교역할 수행
	2-2-3.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	미이행	창업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 지원 및 컨설팅
	2-2-4.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시 산하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	시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으로 장애인고용 확대
2-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2-3-1. 장애인연금 추가 지급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추가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추가 지원
	2-3-2. 중증장애 아동수당 추가 지원	원안대로 사업 시행	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국비로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최저 삶의 질 보장	18세 미만 기초, 차상위 계층 재가 장애아동(중증장애아동) 추가지원

〈 표 3-15 〉 근로기본소득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추진 전략	핵심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 장애인 일자리 창출	2-1-1. 건강 카페 운영	종사자 수(단위: 명)	29	23	19	25
		카페 수(단위: 개소)	11	11	10	11
	2-1-2.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참여자 수(단위: 명)	25	23	23	23
		사업비(단위: 백만원)	173	173	210	226
	2-1-3.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행복충전소)	설치 개소(단위: 개소)	132	133	133	144
		관리 인력(단위: 명)	30	29	28	30
2-2. 장애인고용 지원강화	2-2-1.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참여 근로자 수(단위: 명)	640	650	700	720
		사업비(단위: 백만원)	11,720	11,467	12,762	15,125
	2-2-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운영	지도요원 수(단위: 명)	22	22	22	22
		사업비(단위: 백만원)	547	561	599	639
	2-2-3.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	사업량(단위: 개소)	10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사업비(단위: 백만원)	25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2-2-4.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	장애인 고용률(단위: %)	7.4	7.7	6.30	6.01
		사업량(단위: 명)	4,042	4,277	4,403	4,672
2-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2-3-1. 장애인 연금 추가지급	사업비(단위: 백만원)	984	1,032	1,372	1,682
		대상자 수(단위: 명)	359	246	229	251
	2-3-2. 중증장애 아동수당 추가지원	사업비(단위: 백만원)	85	90	94	60
		사업비(단위: 천원)	85	90	94	60

2) 추진 실적 평가

- 근로·기본소득 분야의 경우 총 9개 핵심과제 중 8개는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1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업을 행하였음. 즉,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19년도만 시행되었고 나머지 사업기간 동안에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음
- 사업 기간 중 2020~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기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이 지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음.
- 근로·기본소득 분야의 추진 실적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또한, 평가위원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5개, ‘우수’ 1개, ‘보통’ 2개, ‘미흡’ 1개임. 추진 실적과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는 ‘우수’ 라고 판단됨

〈 표 3-16 〉 근로기본소득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추진 전략	핵심과제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2-1. 장애인 일자리 창출	2-1-1. 건강 카페 운영			○		
	2-1-2.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		
	2-1-3.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행복충전소)					○
2-2. 장애인고용 지원 강화	2-2-1.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2-2-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운영				○	
	2-2-3.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	○				
	2-2-4.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					○
2-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2-3-1. 장애인 연금 추가지급					○
	2-3-2. 중증장애 아동수당 추가지원		○			
근로기본소득 분야 종합평가					○	

3) 핵심 과제별 평가

(1) 건강 카페 운영(2-1-1)

□ 주요성과

- 카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수익 창출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음. 또한 비장애인과의 통합 고용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건강 카페 운영은 중증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경쟁 고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의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카페 운영이 필요함.
- 건강 카페의 수를 효율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장애인 종사자 수가 많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공공의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 따라서 단순히 생산성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수를 늘리고 카페지원 규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표 3-17 〉 건강카페 운영(2-1-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2) 행복어울림농장 운영(2-1-2)

□ 주요성과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고용 기회 부여는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비장애인과 통합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서도 성과로 볼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

□ 한계 및 문제점

-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고, 위탁 사업자의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경험이 요구됨. 즉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위탁기관의 노력이 없이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개선 방안

- 본 사업의 향방은 시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함. 2021년의 경우, 생활임금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참여자 수가 제한된 경우가 있음
- 참여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하면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표 3-18 〉 행복어울림농장 운영(2-1-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3) 전동휠체어 충전기(행복충전소) 관리(2-1-3)

□ 주요성과

-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개소 수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측면에서 본 사업은 성과 목표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증대시킴

□ 한계 및 문제점

-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함. 지자체의 의지와 위탁기관의 노력이 없이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대전시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방안

- 본 사업의 향방은 시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함.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표 3-19 〉 전동휠체어 충전기(행복충전소) 관리(2-1-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2-2-1)

□ 주요성과

- 양적인 측면에서 직업재활 참여자 수의 점진적인 확대는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음
- 연차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자가 증가로 자립생활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됨

□ 한계 및 문제점

- 본 사업은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 능력과 직무기능향상 훈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취업 알선을 통한 경쟁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일반고용 전이는 매우 어렵고 직업재활시설의 한계로 볼 수 있음

□ 개선 방안

- 성과지표 변경 필요함. 직업재활 참여자 수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수(추가), 일반 고용 취업자 수(추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성과지표를 변경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이 필요함

〈 표 3-20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2-2-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5)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운영(2-2-2)

□ 주요성과

-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목표 달성 정도에서는 우수한 성과로 볼 수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복지 일자리 사업 정책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직무지도원 배치 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음
-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복지 일자리의 개수가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복지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기에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개선 방안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을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 등 직무지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1인당 장애인 20여 명 지도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직무지도원을 배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직무지도 요원은 지표에는 발달장애인 20명당 1명으로 배치가 되고 있으나 세부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달장애인 10명당 1명으로 직무지도 요원을 배치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 3-21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 운영(2-2-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6)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2-2-3)

□ 주요성과

- 추진 실적이 없어 주요성과는 매우 미흡함

□ 한계 및 문제점

-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로 변경 필요함

□ 개선 방안

- 장애인 창업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 본 사업의 경우 단순히 창업 교육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비장애인 창업 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창업에 부합한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이 필요함
- 성과지표 설정을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변경이 필요함. 사업의 목적이 예비 창업자의 창업지원과 컨설팅에 있기에 이를 반영한 지표설정이 필요함(지표 수정 및 변경/예비 창업자 수, 컨설팅 수)

〈 표 3-22 〉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2-2-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7)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2-2-4)

□ 주요성과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크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장애인 고용률 또한 전체 장애인고용에서 43.2%로 높게 나타남

□ 한계 및 문제점

- 중앙정부에서 설정된 장애인고용 기준률을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 자체적인 목표 설정에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전국적 보편사업으로서 중앙정부 법·제도적 개선 없이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개선 방안

- 중앙정부 중심의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영역별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한 고용 확대 정책이 필요함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 안정과 장애인의 고용을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표 3-23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2-2-4)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8) 장애인연금 추가 지급(2-3-1)

□ 주요성과

- 주요 성과로서 장애인연금 추가지급 대상자의 점진적인 확대를 들 수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어 지원자 수 확대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개선 방안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적정 지원 금액 책정이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표 3-24 〉 장애인연금 추가 지급(2-3-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9) 중증장애 아동수당 추가 지원(2-3-2)

□ 주요성과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장애아동 수당 추가 지원한 것은 주요 성과였다고 판단됨

□ 한계 및 문제점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어 지원자 수 확대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개선 방안

-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추가로 일정액의 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추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17개 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고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표 3-25 〉 중증장애 아동수당 추가 지원(2-3-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총평

(1) 추진 전략 2-1.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 카페, 행복어울림농장 등 참여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나, 설치 확대 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도적인 개입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부분 복지 선진 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고용은 의료적 기준에서의 중증장애인이 아닌 직업적 기준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최근 고령화 및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중고령 장애인,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무와 직업영역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원고용, 유보 고용, 표준사업장 설치 등 다양한 공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법·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의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등 다양한 직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다채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추진 전략 2-2. 장애인고용 지원강화

- 장애인고용 지원강화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보편사업과 지자체 중심의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여 핵심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직무지도원 운영,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향상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지자체 핵심과제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전히 낮고 경쟁 고용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전문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자원 공유를 통한 고용 지원강화가 필요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직업지원센터, 보조공학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3) 추진 전략 2-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금액을 일정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음.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이 중요함

(4) 근로기본소득 분야 총평

- 중앙정부 중심의 전국적 보편사업과 지자체 중심의 사업을 구분하여 전략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지원강화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적으로 나타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재수립이 필요함. 최근 인구 고령화 및 발달장애 인구 증가에 따른 중고령장애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고용 확대와 고용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현실적인 급여 인상이 필요하고 또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건강 분야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건강 분야는 2대 추진 전략과 6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추진 전략에는 4개의 핵심과제로,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의 추진 전략에는 2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 분야의 핵심과제 중 3-1-1. 보건소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함. 이외의 다른 핵심과제는 원안 시행으로 나타남

〈 표 3-26 〉 건강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 전략	핵심과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3-1.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3-1-1. 보건소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과제명 변경	지역적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의료복지 연계
	3-1-2.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지원	원안 시행	중증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 및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소아 낮 병동 운영지원	낮 병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교구 구입, 각종 치료용 소모품 구입 등 지원
	3-1-3.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 지정 및 운영	원안 시행	장애인 산부인과 진료 향상으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및 진료 편의 도모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치료, 검진 및 분만 등 서비스 실시
	3-1-4.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	원안 시행	장애아동의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언어치료, 물리치료, 영유아 교육 및 재가 교육, 가족 지원 서비스 등 제공
3-2.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	3-2-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원안 시행	대전세종충남권역 중증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전문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
	3-2-2. 대전형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원안 시행	장애친화 의료기관(병원) 지정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향상	치과, 산부인과, 검진 기관 등을 장애 친화 병원으로 지정하여 시설보강비 지원

(2) 사업추진 현황

- 건강 분야의 첫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살펴보면, 첫째,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연간 4,0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중증장애인 소아 낮 병동 지원은 4개 병원, 74병상을 운영 중임. 셋째,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 지정 및 운영은 시 자체로 1개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비 지원 이외에는 사업비 편성이 없음.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3개소 운영 중임
- 건강 분야의 두 번째 추진 전략인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은 2022년 현재 건립 공사 추진 중으로 2023년 개원 예정임. 둘째, 대전형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은 권역장애인구장진료센터(원광대치과병원)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대청병원)을 1개소씩 지정·운영 중임

〈 표 3-27 〉 건강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추진 전략	핵심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1.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3-1-1.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업량(단위: 명)	4,995	4,698	3,963	3,971
		사업비(단위: 백만원)	114	234	236	238
	3-1-2.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지원	병상 이용률(단위: %)	78	80	83	82
		사업비(단위: 백만원)	150	100	100	110
	3-1-3.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 지정 및 운영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사업비(단위: 백만원)	70	73	0	0
	3-1-4.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량(단위: 개소)	3	3	3	3
		사업비(단위: 백만원)	539	539	539	539
3-2.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	3-2-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사업량(건설 공정)	기획 업무용역	설계 용역 및 착공	건립 공사추진	건립 공사추진
		사업비(단위: 백만원)	13,300	9,700	17,100	7,700
	3-2-2. 대전형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사업량(단위: 개소)	3	4	4	4
		사업비(단위: 백만원)	2,500	235	304	404

2) 추진 실적 평가

- 핵심과제에 따라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미흡하거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 분야의 대부분 사업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여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실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핵심과제 중 ‘매우 우수’ 또는 ‘매우 미흡’의 평가는 없지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의 경우, 진행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개원(2023년 5월)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위원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는 ‘우수’ 3개, ‘보통’ 3개임. 추진 실적과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건강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는 ‘우수’라고 판단됨

〈 표 3-28 〉 건강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 평가

추진 전략	핵심과제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3-1.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3-1-1.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3-1-2. 중증장애인 소아 낮 병동 지원				○	
	3-1-3.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 지정 및 운영			○		
	3-1-4.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				○	
3-2.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	3-2-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	
	3-2-2. 대전형 장애인친화 의료기관 지정			○		
건강 분야 종합평가					○	

3) 핵심 과제별 평가

(1)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3-1-1)

□ 주요성과

- 재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공공의료 전달체계인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데, 보건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애인이 약 4,000명이 됨

□ 한계 및 문제점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비스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재활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하였음
-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한 서비스 대체 프로그램을 실행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음

□ 개선 방안

-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체계(장애인복지관, 주민 자치단체, 장애인부모회, 지역사회사업을 하는 의료체계 등)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장애인의 방문 재활 운동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거나, 건강검진,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해결하면 좋을 것임

〈 표 3-29 〉 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3-1-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2) 중증장애인 소아 낮 병동 지원(3-1-2)

□ 주요성과

- 현재 4개 기관의 소아 낮 병동에서 7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가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1개 기관(충남대 병원)이 권역 재활병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 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성과를 보임

□ 한계 및 문제점

- 대전시에 권역 재활병원이 지정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아 낮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 중 보조금을 반납하고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소아 낮 병동의 수가나 전문인력 등의 문제로 민간 의료체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재활 의료체계의 확보가 시급함
- 장애아동의 신체적 기능 유지-향상을 위해서는 자택에서도 지속적인 재활 운동이 필요하나,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재활 운동 등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음. 또한 소아 낮 병동 입원 기간 만료 이후 타 의료기관 소아 낮 병동 전원, 지역사회 자원(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연계에도 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개선 방안

- 장애아동 보호자가 자녀의 치료 계획, 과정에 대한 이해-관심도 향상 및 지속적인 재활 운동을 위하여 소아 낮 병동 부모 교육 과정 중 자택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재활 운동 방법 등의 체계적인 교육이 도입이 필요함
-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가 입원 시 장애아동 보호자와 상담하고, 퇴원을 앞둔 2-3주 전에 재상담하며 퇴원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면 연속성 있는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표 3-30 〉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지원(3-1-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3)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 지정 및 운영(3-1-3)

□ 주요성과

- 장애 친화 산부인과와 장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 여성의 출산권과 건강권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짐
- 장애인 임신부에게 적절한 산과, 부인과 진료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과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며,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환경을 조성하였음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와 장비 확충을 위한 장비와 편의시설 등이 확충된 것 이외에는 장애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없음
- 2024년 지자체 지정,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만료, 그 이후 대비책 필요함
- 현재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의료기관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관리치료센터 부재함

□ 개선 방안

- 장애 친화 산부인과와 추가 지정이나 방문 혹은 출장 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협력 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임신 여성장애인이 상급종합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관리 치료센터로 의뢰되었을 시 당사자의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관찰하여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

〈 표 3-31 〉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 지정 및 운영(3-1-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3-1-4)

□ 주요성과

-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문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인 서구보건소에 장애아동 재활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음
- 의료기관 재활치료의 경우 개별 재활치료가 많음. 반면,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는 소그룹 활동들도 다수 구성되어 있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및 사회 적응 활동, 사회성 강화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함

□ 한계 및 문제점

-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3개의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을 평가할 수 있고, 기본계획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장애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 활동, 언어 활동, 특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을 때 최소 1~2년의 프로그램 대기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 개선 방안

-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이 사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장애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장애아동 및 장애 아동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자원을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치료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표 3-32 〉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3-1-4)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3-2-1)

□ 주요성과

- 중증 장애아동의 재활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충남권역의 중증 장애아동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됨
- 장애아동의 치료, 교육, 돌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과 함께 가족의 부담을 낮춤. 공공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운영을 통해 대전광역시 장애어린이-청소년의 학제적 진료 및 재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였음

□ 한계 및 문제점

- 국내 최초로 설립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식 개원 전부터 의료진(의사) 구인난 등의 어려움이 있어 공중보건의로사로 대체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간 적자가 30억 원 예상되는 상황임.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인력의 고용 및 근로의 지속성,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해당 사업의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함

□ 개선 방안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중 ‘국가가 공공 어린이재활 병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정부의 운영비를 지원 요청하되, 지자체의 공공의료 운영비 마련을 위한 방안 및 병원 자체에서도 환자 유입, 병실-치료실 운용률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표 3-33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3-2-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6) 대전형 장애 친화 의료기관 지정(3-2-2)

□ 주요성과

- 대전시가 장애 친화 의료기관으로 산부인과와 건강검진센터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예산으로 운영 지원되는 것은 권역 장애인 구강 의료센터만 진행되고 있음
- 장애인건강검진 병원 1개소(대청병원)는 2018년도에 지정되어, 2023년도 중부권 최초로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하여 충청권 장애인 검진 접근성이 향상됨

□ 한계 및 문제점

- 현재 대전에는 장애인의 건강 보건의 영역 중 ‘치과, 산부인과, 건강검진’ 관련 인프라가 있으나, 지역 장애인의 거리상 접근성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영역별 추가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함
- 장애 친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장애 유형, 특성에 맞춰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숙지한 장애 유형 및 특성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선입견이 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함

□ 개선 방안

- 장애 친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설비 장치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 친화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건립될 대전의료원에도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참여가 예상되며, 이는 의료원 건축 시에 장애물이 없는 환경(Barrier Free) 등의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역 내 장애 친화 의료기관 이용 장애인의 경험 평가 등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화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함

〈 표 3-34 〉 대전형 장애 친화 의료기관 지정(3-2-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총평

(1) 추진 전략 3-1.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나 공공기관인 충남대병원 등을 권역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확보함
- 장애인의 의료욕구는 민간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민간의 의료기관에 공서비스 성격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임. 실제 참여 기관 중 사업량을 축소하면서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
- 우선 보건소 등의 기능을 점차로 확대하여 대전형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관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모두 본인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음.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사업일지라도 서비스의 질이 다를 수 있는 점이 있어 이와 관련 하여 질 향상을 위한 기관 간 소통, 교육 등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2) 추진 전략 3-2.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

- 장애인들의 의료 및 재활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같은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건립하는 성과가 뛰어난
-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여성, 장애인건강검진, 권역 형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등)를 확충하기 위하여 장애 친화 의료기관 지정하고, 설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기획되고 지원되어야 함
- 건강보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추진 전략에 맞춘 핵심과제가 원활히 추진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확충된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프라의 내실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인프라 확대 또한 필요한 상황임. 즉, 건강권 보장 인프라에 대한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함

(3) 건강 분야 총평

- 장애인의 건강권은 장애인 인권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의료 및 재활치료가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에 1차 기존계획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적절하였고, 이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지속성 확보를 기대함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등에 따라 지역 내 신규 도입되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제도, 관련 기관 지정 등이 많은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됨. 이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한 다 영역의 기관들이 단절되지 않고 대상자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 활성화하여 소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함. 또한 자치구별로 다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질로 인해 지역 내에서 건강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4. 교육·문화 분야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교육·문화 분야는 3대 추진 전략과 8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의 추진 전략에는 3개의 핵심과제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의 추진 전략에는 3개의 핵심과제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추진 전략에는 2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표 3-35 〉 교육·문화 분야 핵심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 전략	핵심과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4-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4-1-1. 장애아동 계절학 기 지원 확대	원안 시행	방학 중 특수학급 장애아동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 및 가족의 상시 양육 부담 경감	장애 학생의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예비특수교사(대학생) 대상 인권 교육 및 역량 강화, 학부모 인권 교육 등
	4-1-2. 생애주기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원안 시행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직업 능력 향상, 기초학습, 건강관리, 문화 체육, 사회적 교육 등
	4-1-3.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	원안 시행	장애인의 배움의 기회 확대 및 권익증진	장애인 아학 및 평생학습 교육기관 운영
4-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	4-2-1.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강화	원안 시행	장애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
	4-2-2. 중고령 장애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 지원	원안 시행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참여 향상 및 가족 부담 경감	교육 및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2-3. 장애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원안 시행	장애예술인(단체)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및 창작의욕 고취	창작, 발표,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 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 지원
4-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4-3-1.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확충	원안 시행	장애인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접근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체육활동 향유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4-3-2.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프로그램 확대	원안 시행	장애인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2) 사업 추진 현황

- 교육문화 분야의 첫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는 방학 중 약 130명의 장애 학생이 참여함. 둘째, 생애주기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구별 2개소, 총 10개소를 운영 중임. 셋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는 3개소 운영 중이며, 9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음
- 교육문화 분야의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강화는 4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음. 둘째, 중고령 장애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 지원은 1개소에서 약 50명이 참여함. 셋째,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12건을 지원하였음

〈 표 3-36 〉 교육문화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추진 전략	핵심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4-1-1.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	추진 횟수(단위: 회)	2	2	2	2	
		사업비(단위: 백만원)	133	126.4	119.7	133	
	4-1-2. 생애주기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량(단위: 개소)	6	10	10	10	
		사업비(단위: 백만원)	137	200	180	180	
	4-1-3.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	사업량(단위: 개소)	2	2	3	3	
		사업비(단위: 백만원)	40	41	61	66	
4-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	4-2-1.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활동 지원강화	사업량(단위: 개소)	5	1	5	4	
		사업비(단위: 백만원)	24	3	16.7	19.8	
	4-2-2. 중·고령장애인 지역기반 복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수(단위: 개)	1	1	1	1	
		사업비(단위: 백만원)	22	22	22	22	
	4-2-3.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량(단위: 건)	7	6	12	12	
		사업비(단위: 백만원)	74	87	87	87	
4-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4-3-1.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량(단위: 개소)	1	1	2	12	
		사업비(단위: 백만원)	351	179	8,300	33,399	
	4-3-2.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량	동호회 수	134	134	135	135
			프로그램 운영(단위: 개소)	82	54	77	77
	사업비(단위: 백만원)	79	47	231	231		

- 교육문화 분야의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음.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프로그램 확대는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135개 클럽(31종목),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77개소)이 이루어졌음

2) 추진 실적 평가

- 교육문화 분야는 핵심과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에는 대부분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획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과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핵심과제 중 ‘매우 우수’ 또는 ‘매우 미흡’ 의 평가는 없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의 추진 전략에 해당하는 3개 핵심과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의 경우에는 현재 12개소가 공사 중에 있어 향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평가위원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는 ‘우수’ 5개, ‘보통’ 2개, ‘미흡’ 1개임. 추진 실적과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는 ‘우수’ 라고 판단됨

〈 표 3-37 〉 교육문화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추진전략	핵심과제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4-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	4-1-1.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				○	
	4-1-2. 생애주기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	
	4-1-3.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				○	
4-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	4-2-1.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강화			○		
	4-2-2. 중·고령장애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 지원		○			
	4-2-3.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4-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4-3-1.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4-3-2.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프로그램 확대			○		
교육문화 분야 종합평가					○	

3) 핵심 과제별 평가

(1)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4-1-1)

□ 주요성과

- 코로나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업추진 횟수와 예산 투자, 참여자 수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현장 체험과 가족 부담 경감이라는 이중적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됨. 2023년부터 예산의 다소간 증액으로 안정적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함
- 감염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집합 프로그램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속해 사업을 추진하였음. 감염병 환경에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잘 전달하였음

□ 한계 및 문제점

- 성과목표가 추진 횟수로만 설정돼 있어 매우 단순한 정량평가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 수행 프로그램이나 투입 인력(대학생 봉사자 등 교사 양성 활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수가 제한되고 있음. 예비 특수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은 어려울 수 있음

□ 개선 방안

- 성과 목표에 예산집행률, 교사 양성 및 투입량에 관한 척도 고려를 권함. 또한, 수행기관과 참여자에 대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을 권고함
- 신규 참여 학생의 확대, 예비 특수교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도 및 슈퍼비전, 학부모의 인식개선과 인권 교육의 내실화 점검 필요

〈 표 3-38 〉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4-1-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2) 생애주기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4-1-2)

□ 주요성과

- 장애 유형별 수행기관 지정 운영으로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신력 확보. 최초 6개 수행기관에서 현재 10개소 확대로 지역사회 프로그램 제공 저변 확대에 이바지함
- 예산 증가(수행기관 증가)로 장애 유형 및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짐

□ 한계 및 문제점

- 성과목표가 모호함. 점진적 확대의 기준/정도 파악 어려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운영에서 나열식/연례 반복식 프로그램 변화나 내실화에 관한 파악 어려움
- 지원 대상을 ‘통합교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궁극적인 성인 발달장애인의 통합적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모색에 분명한 한계를 가짐
- 대부분 단년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한 자립이라는 목적은 다소 어려움. 지역사회의 전문 교육기관보다는 수행기관 내에서 교육이 진행됨

□ 개선 방안

-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초/필수 프로그램 제공과 그 준수 여부나 내용적 파악 필요. 기본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6진 분류에 따른 욕구도 파악과 균형 운영 고려 필요
- ‘통합교육이 어렵더라도’ 통합적 학습할 수 있는 접근 모색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요구 필요함. 프로그램 운영과 내실화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지침 마련 필요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속해 확대되어야 함. 특히, 40세 이상의 장애인과 학교 졸업 이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양적, 질적 확대가 요구됨

〈 표 3-39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4-1-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3)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4-1-3)

□ 주요성과

-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 3개소로 확대 지원 중.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한 기초 학력 증진 프로그램 원활히 수행 중
- 교육시설이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더불어 교육 인원도 증가함

□ 한계 및 문제점

- 계획 대비 현 3개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기초학력 보완 및 검정을 통한 구체적 효과성(성과) 파악 어려움
- 성과 목표인 시설의 확대만으로는 교육의 질과 장애인 개개인의 교육목표는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 방안

- 2019년 당시 5년 차(2023년)에 6개소 계획 추진과 관련 예산 증액 필요. 기초학력 증진 효과/성과 파악 기준과 성과 목표 연계 방안 고려
- 시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교육 내용의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각각의 교육목표 달성으로 성취감과 자립 의욕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 표 3-40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4-1-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강화(4-2-1)

□ 주요성과

-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의 취지 유지하면서 지원됨. 궁극적인 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기회 선용의 효과성 기대

□ 한계 및 문제점

- 코로나와 같은 특정 상황으로 인한 취소 시 대응 방안 파악 어려움. 문화여가 분야의 일회성 프로그램 경향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이 주로 나들이, 여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단체별 여행프로그램 지원으로 보일 수 있음

□ 개선 방안

- 코로나 등 특정 상황으로 인한 행사 취소 시 대체 지원 가능성 준비. 성과 목표 상 프로그램 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지원 대상 단체 확대 고려. 일회성 프로그램 경향 지양 또는 효과성 제고를 통한 내실화 방안 요구
- 단체 또는 그룹으로 진행되는 여행, 나들이 프로그램 외에 장애인 개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도 필요

〈 표 3-41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강화(4-2-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5) 중고령 장애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 지원(4-2-2)

□ 주요성과

- 의견수렴 및 검토, 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1개소에서 3년간 프로그램 진행 결과(참여자 수)와 사업비 지출(시비 2천2백만 원)은 확인했으나, 성과 목표로 제시한 단계적 프로그램 수 확대와는 상관이 없음
- 4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에 관한 관심과 프로그램은 고령화사회에서 매우 중요함. 특히 40세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연도별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 표 작성 내용 불분명하여 현황 파악에 한계. 제시

된 성과목표인 프로그램 수는 추진 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평가가 어려움

- 장애 유형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따라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시설 등의 어려움이 있음. 수행기관 외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여전히 부족함

□ 개선 방안

- 연도별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 표기 통일과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함. 성과 목표 제시와 실질 평가지표 상관성 고려 필요. 지역사회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개발과 내실화 요구
-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표 3-42 〉 중고령 장애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 지원(4-2-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6)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4-2-3)

□ 주요성과

- 성과 목표 대비 단계적 지원 건수 확대 확인. 장애 예술인 대상 지원 건수와 추진 사업비 확대 및 유지로 안정화 기대
- 목표 대비 지원 건수는 초과 달성함

□ 한계 및 문제점

- 공모하고 있지만, 신규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이 부족. 지원 분야가 문학, 공연, 시각 등 제한적임

□ 개선 방안

- 성과 목표로서 지원 건수와 함께 개인 및 단체당 예산 지원 규모 일률적 확대 고려가 필요함

- 전체 장애인 중 장애 예술인이 소수일지라도 대상 및 예산 확대로 지역 사회 내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의 장애인 활동 지속 촉진 필요
- 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장애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할 방안 모색

〈 표 3-43 〉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4-2-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7)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4-3-1)

□ 주요성과

- 공공 체육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과 지자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촉진 의지 확인. 고른 자치구 분포로 저변 확대에 기여
- 유성반다비체육관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양적 증가

□ 한계 및 문제점

- 사업 개요와 주요 내용이 애초 계획서상 그리고 초기 2년 계획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만 기술되어 있어 센터 건립이라는 확대된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 이해에 다소 혼동을 가져옴
- 편의시설 개보수와 시설 우선 사용 등의 물리적 개선만으로는 어려움

□ 개선 방안

- 2023년에도 지속 추진 및 실적 관리 기대. 시설 운영과 관리 차원의 방안 추가 고려 필요
- 공공 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 원활한 통합을 위한 사회의 인식개선 사업추진 필요

〈 표 3-44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4-3-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8)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프로그램 확대(4-3-2)

□ 주요성과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본요소로서 동호회 육성과 관련 교실 운영의 계획 및 수행 실적 우수함

□ 한계 및 문제점

-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실적표 기술 및 표현이 통일되지 않아 이해에 한계
- 2023년의 사업비 동호회 육성 및 사업비 예산 감소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어 현황 파악에 한계
- 전문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부족과 보수 현실화의 문제. 프로그램 다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 부재

□ 개선 방안

- 2023년 사업비와 예산에 관한 부여 설명 필요. 연도별 계획과 추진 실적 표기 통일 및 정확한 작성 필요. 육성된 동호회의 활동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고려 필요
- 다양한 종목 개발과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 유도.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집중 양성과 보수 안정 필요

〈 표 3-45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프로그램 확대(4-3-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총평

(1) 추진 전략 4-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는 장애아동뿐 아니라 가족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성을 기대하기에 적절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 대비 진행이 원활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지를 통한 정량적 관리에 힘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 생애주기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 유형별 수행기관 지정 및 확대로 전반적인 운영의 안정화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확인함으로써 지역 사회 프로그램 제공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사회적으로 통합적 평생 학습이 가능한 접근 모색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기획되기를 기대함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지원 확대는 학습보완과 인문 교양 등에서의 학교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 현재 2에서 3개소 수준의 지원으로는 월등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 대상 학교시설 발굴과 지원에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음

(2) 추진 전략 4-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확대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사업량이나 사업비의 축소 경향이 있으나,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성과 목표 상 프로그램 수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지원 대상 단체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중고령 장애인 지역 사회 기반 복지사업 지원은 장애인의 초고령사회 이상의 현실을 고려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기존 복지관 사업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표 내용이나 표현이 연차별로 다르고 성과 목표 이해와 확인과 이해에도 한계가 있어 확실한 척도 평가가 모호했던 점은 매우 아쉬움. 또한, 현재 1개소 외에 향후 연계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중고령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와 내실화의 방향성 모색이 요구됨

-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사업량 및 사업비 실적 원활히 확보되어 앞으로도 안정 지속을 기대할 수 있게 함. 그런데도 지역 사회 장애 예술인구의 지속 발굴과 예산 확대로 전문예술인 양성과 지원에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3) 추진 전략 4-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사업의 주 내용이 센터 건립으로 전환하면서 더욱 근본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촉진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실효적일 것으로 여겨짐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회회와 프로그램 확대 사업은 높게 설정된 계획에도 총량적으로 우수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마지막 해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것에 관한 부여 설명이 요구됨
- 체육시설의 확대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음. 생활체육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목 개발과 지원이 요구됨

(4) 교육문화 분야 총평

-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과 실행의 수준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보이며,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는 생애주기와 평생교육, 문화·예술·체육 전반의 동향을 반영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어 공신력을 갖추는 데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애 인구의 초고령화 이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업추진과 재정 확대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조치에 지자체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며, 대다수 성과지표가 물리적 측면의 단순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실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함
- 프로그램 지원과 시설 확대 등의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사회 인식개선, 교육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됨

5. 사회참여 분야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4개의 추진 전략, 9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음.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정보접근성 보장, 이동권 보장, 의사소통 지원, 일상생활 지원강화를 제시하였음
- 추진 전략 실현을 위한 9개의 핵심과제를 대체로 원안대로 시행하였으나, 일부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함
- 장애인이동권 편의성 강화는 이용 요금 정액제 도입 검토 결과 기존 요금 체제를 유지하기로 함
-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는 별도의 장소 확보와 공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을 활용하기로 함

(2) 사업 추진 현황

- 2019년 장애인 맞춤 정보 사이트 ‘정보드림’을 개통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바우처 택시와 특장차를 운행하고, 기존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승하차를 추진함.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
-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수어통역센터를 1개소 운영하여 24시간 수어 통역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함
- 국비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20~80시간의 시·구비 추가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비로 24시간 활동 지원 제공함

〈 표 3-46 〉 사회참여 분야 세부 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 전략	핵심과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5-1-1.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인맞춤복지정보 “정보드림”을 통해 대전지역의 장애인복지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여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직업정보, 통계 분석, 홈페이지 홍보, 상담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5-1-2.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기능 강화	원안대로 사업 시행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욕구 충족 및 불편 해소	보조기기 사례관리(상담, 평가, 시연, 제작, 수리, 사후평가 등)로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5-2-1.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원안대로 사업 시행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	비우차량 및 특장차 증차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
	5-2-2.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으로 변경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	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주요 여객시설 앞 장애인콜택시(나눔콜) 전용 승강장 설치
	5-2-3. 저상버스 배차체계 개선 및 운영 확대	원안대로 사업 시행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시내버스 전체 1,015대 (100%)를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
5-3.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강화	5-3-1.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 24시간 보장	원안대로 사업 시행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 도모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수어 교육 및 보급 사업
	5-3-2.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확대	청각장애인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비 지원 대상지원액 확대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언어생활 향상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5-4. 일상생활 지원 강화	5-4-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원안대로 사업 시행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사회 활동 여부, 장애 상태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활동 지원 시간 추가지원
	5-4-2.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원안대로 사업 시행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위기상황 등에 대처가 어려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생명 보호 및 상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표 3-47 〉 사회참여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추진 전략	핵심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5-1-1.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	구축 운영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단위: 백만원)	45	45	45	46
	5-1-2.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기능 강화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사업비(단위: 백만원)	212	203.2	216	218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5-2-1.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사업량(단위: 대)	검토 및 확정	150	150	150
		사업비(단위: 백만원)	-	10,937	11,489	12,360
	5-2-2.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	사업량	계획수립	현장견학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사업비	-	-	-	-
	5-2-3. 저상버스 배차체계 개선 및 운영 확대	배차체계 개선	시간표 게시	시간표 게시 고정배차	운행노선 확대 고정 및 순환배차	운행노선 확대 고정 및 순환배차
		사업비(단위: 백만원)	1,602	-	-	-
5-3.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강화	5-3-1.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 24시간 보장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사업비(단위: 백만원)	1,367	1,429	1,575	1,648
	5-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	사업량 (단위: 명)	23	17	24	19
		사업비(단위: 백만원)	100	100	100	100
5-4. 일상생활 지원 강화	5-4-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량 (단위: 명)	1,525	1,882	1,901	2,076
		사업비(단위: 백만원)	5,164	7,093	8,084	10,498
	5-4-2.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사업량 (단위: 명)	10	13	17	18
		사업비(단위: 백만원)	500	738	904	1,098

2) 추진 실적 평가

- 장애인 맞춤 정보 사이트(정보드림)와 보조기기센터는 대체로 계획에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나, 정보드림은 인지도가 낮아 이용이 저조한 편임. 보조기기센터는 대전시의 수요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 2020년 바우처 택시를 도입, 총 336대(특장차 96대, 전용 임차 택시 90대, 바우처 택시 150대)를 운행하고 운전직을 증원함. 그러나 애초 계획한 요금 정액제는 검토 후 추진하지 않음
-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는 장애인주차구역 활용으로 대체하여 이용자 불편이 상존함
- 저상버스는 노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상버스를 증차하여 배차 체계를 개선함
- 평일 야간 및 휴일 운영 수어통역센터는 애초 2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1개소 운영으로 목표 미달성
- 인공와우수술 및 재활치료비는 대체로 성과 목표에 맞게 시행되었으며, 특히 재활치료비 지원은 실적이 목표를 초과하였으나, 애초 계획한 교육지원은 성과 보고가 누락됨
- 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사업량과 예산이 계획 대비 증액되었으나, 최종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지원은 추진 실적인 목표 대비 저조함

〈 표 3-48 〉 사업참여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추진전략	핵심과제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5-1-1.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			○		
	5-1-2.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기능 강화			○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5-2-1.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	
	5-2-2.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		○			
	5-2-3. 저상버스 배차체계 개선 및 운영 확대				○	
5-3.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강화	5-3-1.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 24시간 보장					○
	5-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				○	
5-4. 일상생활 지원 강화	5-4-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	
	5-4-2. 최종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사회참여 분야 종합평가					○	

3) 핵심 과제별 평가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5-1-1)

□ 주요성과

- 2019년 6월 장애인 맞춤 정보 사이트 ‘정보드림’ 개통하여 콘텐츠 업데이트 및 통계분석, 경품 이벤트, 상담 등 실시
- 대전시의 자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정보, 장애인 단체와 기관 등 복지시설, 기타 장애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보 연계망 역할 수행
-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사이트 관리 운영을 담당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전시 장애인의 의견수렴 및 정보 연계 창구로 역할을 함

□ 한계 및 문제점

-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여 인식 및 이용이 저조함.
- 운영 주체인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웹-모바일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 개선 방안

- 정보드림 사이트에 대한 홍보 강화
- 대전시의 다양한 장애 관련 기관의 정보의 지속적 전달
-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리뉴얼
- 콘텐츠 업데이트, 유지와 보수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 체계 마련

〈 표 3-49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5-1-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2)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기능 강화(5-1-2)

□ 주요성과

-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인 보조기기를 제작·보급하고 유지·보수하여 이용자의 삶의 편의 증진
- 보조기기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충남대학교 병원은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지속적인 A/S를 제공하기에 유리한 환경임. 지리적인 접근성과 연계 기관에 대한 사업 홍보도 우수한 편임

□ 한계 및 문제점

- 보조기기의 가격은 대부분 매우 고가이고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보조기기센터 예산은 연간 216백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보조기기 수요자인 장애인, 노인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여 현재의 1개 기관으로 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함

□ 개선 방안

- 관련 예산의 실질적 증액 필요
- 다양한 보조기기 체험을 위한 시연 장비 보강 필요
- 보조기기센터의 추가 운영

〈 표 3-50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기능 강화(5-1-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3)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5-2-1)

□ 주요성과

-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은 대체로 타 대도시에 비해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특장차, 전용 임차 택시를 확대하는 등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운전직 인력을 증원하여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함

- 이동권의 증진으로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 취업, 교육, 건강, 의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계 및 문제점

-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지속해서 증차하였으나, 수요 대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출퇴근 시간 등 주요 이용간에 대기시간이 긴 편임
- 광역 시도 간 이동이 제한되어 이용이 제한됨

□ 개선 방안

-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 증차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 이동 지원 연계를 통해 광역 간 이동 보장
-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의 대수 확보로 대기시간 단축

< 표 3-51 >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5-2-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5-2-2)

□ 주요성과

- 애초 계획수립, 조례 개정과 실효성 검토 등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승하차를 추진하여 성과가 제한적임

□ 한계 및 문제점

- 기존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 제한
- 장애인주차장 이용객에게 불편 초래

□ 개선 방안

- 주요 역사와 여객시설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승하차장을 기존계획대로 설치

〈 표 3-52 〉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5-2-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5) 저상버스 배차 체계 개선 및 운영 확대(5-2-3)

□ 주요성과

- 대전광역시 운행 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증진 계획(2022~2026)의 목표인 저상버스 도입률 70%를 초과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성과가 있었음
- 저상버스를 증차하고 배차 체계를 조정하여 원활한 저상버스 이용을 촉진하였으며, 노선정보와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함

□ 한계 및 문제점

- 22년 대전시 전체 시내버스의 약 40%(383대)가 저상버스로 운용되고 있어 목표한 26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기에는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정차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출근 시간에 배차된 저상버스의 운행 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음. 이는 저상버스의 확대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 개선 방안

-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저상버스 확보 방안 마련
-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 저상버스 운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 개선

〈 표 3-53 〉 저상버스 배차체계 개선 및 운영 확대(5-2-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6) 청각언어장애인 수어 통역 24시간 보장(5-3-1)

□ 주요성과

- 휴일 및 야간 수어통역센터 운영으로 청각 언어장애인이 24시간 수어 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권리 증진
-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수어 교육 및 보급 사업수행

□ 한계 및 문제점

- 수어통역센터 직원 인건비 기준을 낮게 적용하여 처우가 열악함.
- 수어통역사가 부족하여 야간에 근무한 수어통역사가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개선 방안

- 수어통역사 인건비 적용 기준 상향 조정
- 휴일·야간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수어통역사 증원 또는 수어통역센터 추가지원

〈 표 3-54 〉 청각언어장애인 수어 통역 24시간 보장(5-3-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7)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5-3-2)

□ 주요성과

- 인공 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필요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한계 및 문제점

- 인공 달팽이관 수술의 위험과 수술 이후 활동의 제약, 농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고려한 수술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 수술 이후 음성 언어 기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활치료 기회 보장
- 현재 사업은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규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가용예산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선착순이 될 우려가 있음

□ 개선 방안

-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한 지침 필요
- 인공 달팽이관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과 이후의 생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표 3-55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5-3-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8)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5-4-1)

□ 주요성과

- 국고지원 수준이 불충분한 장애인에게 개인 특성에 따라 20~80시간의 활동 지원을 추가 제공함

- 지원 인원과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 (2019년 1,525명→2020년 1,882명→2021년 1,901명→2,076명)
- 활동 지원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춤

□ 한계 및 문제점

-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 이용자의 만족과 성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함.
- 활동지원사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불균형이 발생하고, 공휴일, 심야 시간 서비스 제공 기피 경향 남아 있음

□ 개선 방안

- 활동 지원 추가제공에 대한 충분성, 서비스 만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 활동지원사의 수급 안정화와 공휴일,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양질의 활동 지원 인력 확보

〈 표 3-56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5-4-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9) 최종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5-4-2)

□ 주요성과

- 국고로 제공하는 활동지원 최대시간은 16시간 가량으로(부가급여 제외), 이는 국가의 돌봄 책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주요 이슈였음. 대전시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증 독거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책무성을 담보함
- ‘육구에 기반한 돌봄 보장’을 원칙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증진함

□ 한계 및 문제점

- 24시간 활동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과하게 엄격하여(기존 활동지원 인정 조사점수 400점,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380점 이상, 독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지원 인원이 매우 적음

□ 개선 방안

- 이용자 선정 기준(인정 조사(종합조사) 점수, 의료적 상태, 가구 상황) 완화 검토
- 명시적 선정 기준 외 수요자가 24시간 지원을 해야 하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급 자격심의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이 필요한데 배제되는 사례 최소화

〈 표 3-57 〉 최종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5-4-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총평

(1) 추진 전략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정보 접근 배제는 장애인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한 빠른 정보전달은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제임
- 현재 ‘정보드림’의 콘텐츠는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이지만 무엇보다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도와 이용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측되는바, 장기적으로 운영 센터 수의 확장과 사례관리 등 역할의 지속적 강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센터는 정보전달의 역할보다 실생활에 유용한 보조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5-4 일상생활지원강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2) 추진 전략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애초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수요-공급 균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 수준 변경을 검토해 보아야 함
- 주요 여객시설의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으로 기존 장애인주차구역을 활용하는 것은 콜택시 이용자,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현재 파악된 장벽(별도의 장소 확보 및 공사 필요)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상버스 확대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예산)을 마련해야 함. 관련한 인식 개선도 하여 이동 약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추진 전략 5-3.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 수어 통역의 24시간 보장은 고무적인 성과임. 지속적 확대 운영이 필요함. 또한 관련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요구도 살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

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검토를 통해 공적 정보의 수어 표현 병기를 확대하여 한국수어가 제1 언어인 농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인공 달팽이관 수술 관련해서는 적절한 선정 기준 마련, 수술의 의미와 득실(得失)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이해에 기반한 선택 증진, 실질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재활치료 기회 보장 등이 필요함

(4) 추진 전략 5-4. 일상생활 지원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과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간 보장은 현 정부의 장애인 돌봄 체계를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와 연계해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수집 및 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활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활동 지원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4시간 활동 지원은 이용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매우 엄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가 소외되어 위험에 처할 소지가 있어 이용자 선정 기준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5) 사회참여 분야 총평

-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의 핵심과제는 일부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목표 수준에 미달한 과제도 있으나, 대체로 애초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애초 계획을 변경한 과제나, 목표 수준에 미달한 과제는 변화한 환경에 대한 합리적 조정보다 현실적 벽에 직면한 것에 가까움.
- 2차 계획의 미달성 과제의 추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재추진하고자 할 경우, 현실의 장벽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각 과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수요-공급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함

6.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실현과 탈시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지원을 위해 2개의 추진 전략, 6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음. 2개의 추진 전략은 ‘인권 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 과 ‘자립생활 지원강화’ 임
- 추진 전략 실현을 위한 6개의 핵심과제 중 3개 과제는 원안대로 시행함
-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협회장과 개별적 간담회 추진
-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 은 집중지원시설을 1개소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운영 지연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은 탈시설지원법의 국회 계류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미추진함

(2) 사업 추진 현황

-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기관 간 의견수렴 진행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이 어려워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시설협회장과 개별적 간담회로 대체하여 추진함.
- 또한 최중증 장애인이 많이 입소한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한 계획(6-1-2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도 시설협회장 등과의 개별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체함.
- 4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2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7개의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여 2023년 3월 현재 12명 이용 중임
- 총 7개의 자립생활센터(3개는 국·시·비 지원)에 시비를 지원하여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2019~2023년 매해 0~3명의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인당 800만 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함

-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함

〈 표 3-58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세부 과제의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 전략	핵심과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6-1. 인권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	6-1-1.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원안대로 사업 시행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또는 거주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고취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대전 소재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간 네트워크
	6-1-2.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	원안대로 사업 시행	최중증장애인이 많은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및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	최중증장애인이 많은 거주시설 1개소 선정 및 추가 인력 지원
6-2. 자립생활 지원 강화	6-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시설 또는 체험홈 거주 장애인이 일정 기간 거주 후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확대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에게 6개월-2년 자립생활 체험홈 서비스 제공
	6-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운영	원안대로 사업 시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자립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생활 역량강화, 사회참여활동 지원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6-2-3.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	원안대로 사업 시행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도모	탈시설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6-2-4.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미이행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맞춤형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 및 삶의 질 향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 표 3-59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핵심과제 추진 현황

추진 전략	핵심과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1. 인권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	6-1-1.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 장애인 수(단위: 명)	계획수립	0	0	0
		사업비(단위: 백만원)	-	-	-	-
	6-1-2.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 델 개발 및 지원	사업량	계획수립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사업비(단위: 백만원)	-	-	-	-
6-2. 자립생활 지원 강화	6-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 험홈 운영	사업량(단위: 개소)	7	7	7	7
		사업비(단위: 백만원)	95	90	95	95
	6-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 터 운영	사업량(단위: 개소)	7	7	7	7
		사업비(단위: 백만원)	685	787	846	875
	6-2-3.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 원	장애인 수(단위: 명)	2	-	2	3
		사업비(단위: 백만원)	18	-	16	24
	6-2-4.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센터 설치	계획수립	계획수립	시설장애인 욕구조사 추진	미이행
		사업비(단위: 백만원)	-	-	61	미이행

2) 추진 실적 평가

-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개별 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참여 시설협회와 횡수, 논의 내용 등에 대한 보고가 없어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코로나-19로 다수의 대면 회의는 어려웠을 것이나,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애초 계획을 일부라도 추진할 수는 있었을 것임.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의 사실상의 미추진은 주체의 여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임

-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또한 구체적 실적이 보이지 않음. 2021, 2022년 보고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원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누락되어 실제 실행이 담보될지 알 수 없음
- 자립생활 체험홈은 거주시설 운영 4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부재하며, 자립생활센터 운영 3개소의 예산도 5년간 95백만 원으로 동결되어 (2020년 90백만원) 지원 수준이 저조한 편임
- 탈시설 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증가한 것은 성과지만, 목표한 1,000만 원에는 이르지 못함
- 탈시설지원센터는 욕구 조사 외 추진한 사업이 없음.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표 3-60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핵심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추진전략	핵심과제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6-1. 인권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	6-1-1.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	○				
	6-1-2.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		○			
6-2. 자립생활 지원 강화	6-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		
	6-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6-2-3.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			○		
	6-2-4.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종합평가			○			

3) 핵심 과제별 평가

(1)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6-1-1)

□ 주요성과

- 2019년도에 2회에 걸쳐 시설협회 등 시설장 간담회 및 인권 교육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한 것에 의의가 있음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9년 의견수렴과 2021년, 2022년 시설협회장과 개별적 간담회를 추진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 확인함

□ 한계 및 문제점

-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인해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네트워크 사업에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설 거주인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꼭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없음
- 2차 계획 기간 비대면으로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있었으면 3차 계획 추진 시점에서는 모임 정례화 등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함.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아쉬움

□ 개선 방안

-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태도
- 소액 수준이라도 예산 편성을 통한 실행력 제고
- 거주시설 네트워크의 모임 정례화와 구체적 목표 수립(탈시설 희망자 발굴 등)을 통한 추진 동력 개발

〈 표 3-61 〉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6-1-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2)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6-1-2)

□ 주요성과

-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이라는 신규 사업은 ‘인권 기반의 장애인 친화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함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 지원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말 대체인력 지원을 확정하고 종사자를 30명 추가 배치한 것은 높이 평가할 성과임

□ 한계 및 문제점

-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협회장 의견수렴이 개별 간담회로 대체되어 당초 계획보다 의견수렴 과정이 활발하지 않았음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시설협회 등 시설장 간담회, 인권 교육 시 집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이후 구체적 추진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보아 의견수렴의 효용이 낮았던 것으로 추측함
- 향후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으나, 관련 실적은 부재함

□ 개선 방안

- 최종중 장애인 정의와 지원 기준 설정
-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모델 개발과 거주시설 선정·운영

〈 표 3-62 〉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6-1-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6-2-1)

□ 주요성과

- 계획에 따른 체험홈의 운영과 입주자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체험 기회 제공

□ 한계 및 문제점

- 사업 목표가 운영 체험홈 개소 수로만 되어 있어 이용자 수, 이용자의 삶의 변화 등 실제 사업 취지는 성과로 반영되지 않음
- 5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타 사업비 증가 현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의 축소가 우려됨
- 거주시설 운영하는 체험홈은 주거지 마련을 위한 기능 보강 지원은 있었으나, 이후 운영을 위한 인력이나 운영비 지원은 없음

□ 개선 방안

-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개소 수와 예산 증가를 통해 지원 인원과 자립생활 체험 기회 확대
- 성과 목표인 추진 실적의 사업량을 이용자 수와 이들 삶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거주시설 운영 체험홈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표 3-63 >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6-2-1)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6-2-2)

□ 주요성과

-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통해 권익옹호, 자립 기술 훈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속

- 국비지원 센터와 시·도비 지원센터 지원 예산 차이 감소
-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의 점진적 확대

□ 한계 및 문제점

- 사업추진 실적이 지원 개소 수와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어 사업 목적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의 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제1차 계획 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과 자립생활센터 내실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2차 년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개선 방안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에서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내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생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 성과 목표설정. 예를 들어 거주시설 네트워크 등을 통한 자립 지원 대상 장애인 발굴 등을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추진 실적으로 포함한다면, 좀 더 내실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임

〈 표 3-64 〉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6-2-2)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5)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6-2-3)

□ 주요성과

- 1차 계획 당시 500만 원이었던 탈시설 정착금이 800만 원으로 증가
- 2019년에는 편성 예산이 없었음에도 2명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부터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매년 2~3명을 지원함 (2020년 지원 실적 없음)

□ 한계 및 문제점

- 애초 1인당 1천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정착금은 이에 미달함
- 지원 규모 또한 당초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8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지원 규모는 2~3명임
- 애초 계획의 현실성과 이행 과정의 문제를 점검하여 불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탈시설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지원 규모 확대와 지원 수준의 내실화
- 거주시설,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탈시설 장애인 발굴

〈 표 3-65 〉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6-2-3)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6)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6-2-4)

□ 주요성과

- 2021년 ‘대전광역시거주시설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탈시설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함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외 사업추진 실적이 없음
- 사업 미추진 사유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국회 계류로 인한 법적 근거 미흡을 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임

□ 개선 방안

- 탈시설지원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운영을 위한 대전형 ‘탈시설지원센터 모델 개발’ 연구 진행
- 관련 조례 제정과 국비 지원 없는 대전시 자체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고려
- 현재 장애인지원기관과 자원을 활용한 탈시설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계와 내실화

〈 표 3-66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6-2-4) 총평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				

4) 총평

(1) 추진 전략 6-1. 인권 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

- ‘인권 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의 2개의 핵심과제(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대전형 집중지원시설 모델 개발 및 지원)는 모두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에 의미 있는 신규 사업임. 특히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은 두 번째 추진 전략인 탈시설 장애인 지원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사업임.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돌발적 변수로 인해 사업추진 상황이 매우 미진하였음
- 사업추진에 불리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상기 2개의 핵심과제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재추진하고,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목표(네트워크 회의 정례화 등)와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기준 설정 등 관련 연구의 뒷받침도 필요함

(2) 추진 전략 6-2. 자립생활 지원강화

- 자립생활 체험홈 7개소 운영(3개소 지원). 국비지원과 시·도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간 지원 예산 차이 감소. 탈시설 정착지원금 증액과 예산 확보는 자립생활 지원강화 전략의 성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당초 계획상의 목표와 추진 실적을 비교하면,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과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실적이 목표에 미달함
- 탈시설 정착금 확대와 탈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제3차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할 것을 제안함. 시설 정착금은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수준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 있음
- 탈시설지원법의 제정과 관계 없이 대전시의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발굴 및 지원하고, 향후 안정적 탈시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 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예산 편성의 소극성(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예산 미확보, 예산 동결 등)이 두드러지는 분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필요함

(3)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총평

-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실태는 거주시설에서 높은 수준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탈시설과 자립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그럼에도 동 분야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소극적인 분야이며, 실제 사업추진의 소극성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의 적극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임. 탈시설은 거주시설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분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분야와 각 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2차 기본계획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추진 과제는 3차 시기에 현실을 고려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재의 추진 실적(사업량과 사업 예산)은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있음

제 4 장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 분석



제4장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 분석

제1절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1) 분석자료

-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장애인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임
- 장애인 실태조사는 2022년 4월 기준 대전광역시 거주 등록 재가장애인 67,652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최종적으로 1,293명으로 조사를 완료함

〈 표 4-1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2. 8. 9. ~ 2022. 9. 16.
조사 대상	대전광역시 거주 등록 재가 장애인 67,652명 중 1,200명(총 1,293명 조사 완료)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조사 혹은 온라인(비대면) 조사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의료 및 건강,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결혼생활 및 양육, 차별 경험 및 학대, 주거 및 안전, 복지서비스, 경제 상태, 자립생활, 미래 준비(노후생활)

2) 분석 내용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분석 내용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문항만 선정하여 활용함
- 분석 내용은 총 12개 영역으로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의료 및 건강,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차별 경험 및 학대, 주거 및 안전, 경제 상태, 자립생활, 미래 준비(노후생활) 영역으로 구성함

〈 표 4-2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 분석 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가구원 수, 동거 가족
장애 특성	주된 장애 유형,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발생원인, 장애정도, 중복장애 여부
의료 및 건강	평소 건강 상태, 지속적 진료 여부, 진료 장소, 진료 목적, 최근 건강검진 여부,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1순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이용 경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이용 시 필요한 지원 사항, 만성질환 유무 및 종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슬프거나 힘든 경험, 현재 스트레스 정도, 최근 1년 동안 상담 경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주로 운동하는 장소(1순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1순위)
일상생활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 유무,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1순위), 제공받는 도움의 충분성,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한 이유, 낮 시간 활동, 집에서 지내는 이유,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 사용 여부,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 사항(1순위)
교육	최종학력,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 경험,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의 주된 이유, 평생교육 참여 경험, 평생교육 수강 기관,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경제활동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 현재 일하는 곳, 현재 종사 업무, 근무기간, 월평균 수입, 미취업의 주된 이유, 직업훈련 경험 유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직업 능력 개발훈련 시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정도, 외출하지 않는 이유, 집 밖 활동 시 불편 정도,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개선이 시급한 교통서비스, 한 달 동안 참여한 문화 및 여가 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차별 경험 및 학대	장애로 인한 폭력 경험, 폭력의 내용, 폭력 피해 대상, 폭력 시 대처 방법,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정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지 여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1순위)
주거 및 안전	주택 유형,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 주택 개조 희망 의사, 주택 개조 시 희망 장소(1순위),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비 여부, 지난 1년 동안 안전을 위협했던 요인(1순위),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장애 안전교육 경험,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경제 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주 소득원, 지난 1개월 평균 개인 수입, 지난 1개월 평균 가구 수입,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유무, 경제적 지원 관련 필요 사항(1순위)
자립생활	자립생활 인지 여부, 자립의 의미(1순위), 자립생활 여부, 자립생활 서비스 이용 경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대전시 지원 사항(1순위)
미래 준비(노후생활)	미래 준비(노후생활)에 대한 걱정(1순위),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 여부,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 사항,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2.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 성별은 남성이 58.2%(752명)이며, 여성은 41.8%(541명)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28.0%(36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0세 이상 26.5%(343명), 50대 18.6%(241명), 40대 10.6%(137명), 20대 6.0%(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큼.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56.8세이며, 응답자의 54.5%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은 중구가 26.5%(34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구 23.8%(308명), 대덕구 22.4%(289명), 동구 14.7%(190명), 유성구 12.7%(164명) 순임
- 응답 가구의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3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 가구 28.0%, 3인 가구 17.8%, 4인 가구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임
- 가구 내 동거 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4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 20.3%, 자녀 19.3%, 아버지 14.9%, 형제/자매 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장애 특성

- 응답자의 주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25.8%(33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각장애 13.5%(174명), 청각장애 13.4%(173명), 뇌병변장애 11.3%(146명), 지적장애 8.0%(104명), 신장장애 6.6%(85명), 정신장애 5.7%(74명), 언어장애 3.3%(43명), 자폐성장애 2.6%(34명) 등의 순임
-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46.8%(605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53.2%(688명)로 나타남
- 장애 발견 시기는 만 1세 이후가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11.4%, 만 1세 이전 8.0%로 나타남
- 장애 발생 원인으로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특히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36.3%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25.4%, 선천적 원인 16.3%, 원인 불명(원인을 모름) 14.8% 등의 순임

〈 표 4-3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752	58.2
	여성	541	41.8
연령대	10세 미만	59	4.6
	10대	26	2.0
	20대	77	6.0
	30대	48	3.7
	40대	137	10.6
	50대	241	18.6
	60대	362	28.0
	70세 이상	343	26.5
거주지역	동구	190	14.7
	중구	342	26.5
	서구	308	23.8
	유성구	164	12.7
	대덕구	289	22.4
가구원 수	1명	362	28.0
	2명	515	39.8
	3명	230	17.8
	4명	161	12.5
	5명 이상	25	1.9
동거 가족 (복수응답, N=1293명)	본인	1,293	100.0
	배우자	576	44.5
	자녀	250	19.3
	자녀의 배우자	17	1.3
	아버지(배우자의 아버지 포함)	193	14.9
	어머니(배우자의 어머니 포함)	263	20.3
	형제/자매	117	9.0
	할머니(배우자의 할머니 포함)	7	0.5
	할아버지(배우자의 할아버지 포함)	3	0.2
	친척(배우자의 친척 포함)	4	0.3
	친구나 동료	1	0.1
	기타	12	0.9
전체		1,293	100.0

〈 표 4-4 〉 응답자의 장애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된 장애 유형	지체장애	334	25.8
	뇌병변장애	146	11.3
	시각장애	174	13.5
	청각장애	173	13.4
	언어장애	43	3.3
	지적장애	104	8.0
	자폐성장애	34	2.6
	정신장애	74	5.7
	신장장애	85	6.6
	심장장애	16	1.2
	호흡기장애	23	1.8
	간장애	24	1.9
	안면장애	16	1.2
	장루/요루장애	32	2.5
	뇌전증장애	15	1.2
장애 발견 시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148	11.4
	만 1세 이전	103	8.0
	만 1세 이후	1,042	80.6
장애 발생 원인	선천적 원인	211	16.3
	출생 시 원인	92	7.1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	470	36.3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328	25.4
	원인 불명(원인을 모름)	192	14.8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05	46.8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88	53.2
중복장애 여부	중복장애 있음	129	10.0
	중복장애 없음	1,164	90.0
전체		1,293	100.0

3) 의료 및 건강

(1) 보건의료

-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는 나쁨 51.4%, 보통 30.9%, 좋음 10.1%, 매우 나쁨 7.1%, 매우 좋음 0.5%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의 58.5%(756명)가 평소 본인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매우 나쁨+나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5 〉 평소 건강 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나쁨	92	7.1
나쁨	664	51.4
보통	400	30.9
좋음	131	10.1
매우 좋음	6	0.5
계	1,293	100.0

- 조사대상자 1,293명 중 68.8%(890명)가 현재 치료·재활·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 표 4-6 〉 지속적 진료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890	68.8
아니오	403	31.2
계	1,293	100.0

- 현재 정기적·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곳으로는 병의원이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 34.5%, 재활병원 4.0%, 재활치료 기관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7 〉 진료 장소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종합병원	307	34.5
재활병원	36	4.0
병의원	497	55.8
보건소	5	0.6
한방병원	16	1.8
복지관	5	0.6
재활치료 기관	22	2.5
기타	2	0.2
계	890	100.0

- 현재 정기적·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목적으로는 치료가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건강관리·예방 16.2%, 재활 11.5% 순임

〈 표 4-8 〉 진료 목적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치료	644	72.4
재활	102	11.5
건강관리·예방	144	16.2
계	890	100.0

- 조사대상자 1,293명 중 65.3%(844명)가 최근 2년간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9 〉 최근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844	65.3
아니오	449	34.7
계	1,293	100.0

-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 1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28.5%(12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되어서 20.0%(90명),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16.5%(74명) 등의 순임

〈 표 4-10 〉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경제적인 이유로	128	28.5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74	16.5
시간이 없어서	39	8.7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26	5.8
검진 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검진시설 및 장비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13	2.9
검진 기관 방문 시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9	2.0
건강검진에 대해 잘 몰라서	26	5.8
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상소견) 때문에	27	6.0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되어서	90	20.0
기타	17	3.8
계	449	100.0

- 조사대상자 605명 중 6.0%(36명)만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11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6	6.0
아니오	569	94.0
계	605	100.0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몰라서 61.2%(348명), 필요 없어서 15.3%(87명), 경제적 이유로 9.5%(54명), 가까운 곳에

사업수행 병원이 없어서 4.6%(26명), 보호자가 시간이 없어서 3.7%(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2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몰라서	348	61.2
보호자가 시간이 없어서(비빠서)	21	3.7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12	2.1
의사(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4	0.7
경제적 이유로	54	9.5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15	2.6
가까운 곳에 사업수행 병원이 없어서	26	4.6
필요 없어서	87	15.3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2	0.4
계	569	100.0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이용 시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29.8%(6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장애 및 일반건강 포괄평가 26.8%(61명), 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 24.1%(55명), 주장애 관련 교육·상담 9.2%(21명), 만성질환 교육·상담 6.6%(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3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이용 시 필요한 지원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장애 및 일반건강 포괄평가	61	26.8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68	29.8
주장애 관련 교육·상담	21	9.2
만성질환 교육·상담	15	6.6
전화상담	8	3.5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55	24.1
계	228	100.0

- 조사대상자 1,293명 중 61.6%(797명)가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조사에서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43.8%)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음

〈 표 4-14 〉 만성질환 유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797	61.6
아니오	496	38.4
계	1,293	100.0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조사대상자 797명 중 62.1%(495명)가 순환기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내분비, 대사성질환 35.9%(286명), 근골격계 질환 19.6%(156명), 소화기계 질환 12.9%(103명), 치과 질환 12.3%(98명), 정신적 질환 11.9%(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5 〉 만성질환 종류(복수 응답, N=797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암	32	4.0
근골격계 질환	156	19.6
내분비, 대사성 질환	286	35.9
뇌 질환	63	7.9
소화기계 질환	103	12.9
순환기계 질환	495	62.1
호흡기계 질환	68	8.5
정신적 질환	95	11.9
치과 질환	98	12.3
피부 질환	37	4.6
눈 질환	76	9.5
신장 질환	51	6.4
만성통증	53	6.6
기타	7	0.9
계	1,620	203.3

(2) 건강행태

- 조사대상자 1,228명 중 20.1%(247명)가 지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힘든 적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16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슬프거나 힘든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2주 넘게 슬프고 힘든 적이 있습니다.	247	20.1
아니오. 2주 넘게 슬프고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981	79.9
계	1,228	100.0

- 현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정도에 대해 느끼는 편이다 61.6%(757명), 느끼지 않는 편이다 27.7%(340명), 매우 많이 느낀다 9.3%(114명), 전혀 느끼지 않는다 1.4%(17명)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 중 70.9%(871명)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느끼는 편이다+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의 평균은 2.79점으로 나타남

〈 표 4-17 〉 현재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많이 느낀다	114	9.3
느끼는 편이다	757	61.6
느끼지 않는 편이다	340	27.7
전혀 느끼지 않는다	17	1.4
계	1,228	100.0

- 조사대상자 1,228명 중 4.3%(53명)가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18 〉 최근 1년 동안 상담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53	4.3
아니오	1,175	95.7
계	1,228	100.0

○ 조사대상자 1,293명 중 54.7%(707명)가 최근 1년 동안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고 응답함

〈 표 4-19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707	54.7
아니오	586	45.3
계	1,293	100.0

○ 주로 운동하는 장소 1순위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63.6%(45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 안 20.7%(146명), 근처 학교 운동장 5.7%(40명), 복지관 체육시설 3.8%(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20 〉 주로 운동하는 장소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집 안	146	20.7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450	63.6
복지관 체육시설	27	3.8
상업 스포츠 시설	21	3.0
근처 학교 운동장	40	5.7
공공체육시설	13	1.8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장애인체육시설)	0	0.0
기타	10	1.4
계	707	100.0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서비스 1순위는 의료비 지원 48.0%(6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10.8%(140명),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8.0%(104명),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7.7%(100명) 등의 순임
- 이러한 결과는 2017년도 조사에서 장애인의 건강 및 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1순위로 나온 의료비 지원 비율(33.7%)보다 약간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음

〈 표 4-21 〉 건강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의료비 지원	621	48.0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100	7.7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140	10.8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04	8.0
장애인전문의료기관 확충	64	4.9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확대	37	2.9
장애인 운동시설 확충	89	6.9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배출 확대	10	0.8
장애인 특화서비스(여성전문, 치과, 소아 등) 확대	41	3.2
방문 재활 치료 지원	34	2.6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장애센터 설치	4	0.3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8	0.6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16	1.2
보건소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4	0.3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18	1.4
기타	3	0.2
계	1,293	100.0

4) 일상생활

-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8.7%(500명)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37.5%(485명),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1.0%(271명),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9%(37명)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61.3%(793명)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부라도 필요하다고 응답함

〈 표 4-22 〉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500	38.7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485	37.5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71	21.0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37	2.9
계	1,293	100.0

-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부라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793명 중 89.4%(709명)가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함

〈 표 4-23 〉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 유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709	89.4
아니오	84	10.6
계	793	100.0

-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 1순위는 부모가 28.1%(1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배우자 27.8%(197명), 활동지원사 15.8%(112명), 요양보호사 15.8%(112명),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5.4%(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주 지원인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4-24 〉 일상생활 시 도와주는 사람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배우자	197	27.8
부모	199	28.1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38	5.4
형제/자매	27	3.8
조부모	2	0.3
손자녀	1	0.1
친척	3	0.4
친구	4	0.6
이웃	10	1.4
활동지원사	112	15.8
요양보호사	112	15.8
간병인	2	0.3
기타	2	0.3
계	709	100.0

- 현재 일상생활에서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충분한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3.6%(309명)가 충분하다(충분한 편이다+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조사에서 일상생활에서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52.4%)에 비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표 4-25 〉 제공받고 있는 도움의 충분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부족하다	47	6.6
부족한 편이다	353	49.8
충분한 편이다	300	42.3
매우 충분하다	9	1.3
계	709	100.0

- 현재 일상생활에서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한 이유는 가족이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44.5%(178명),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가 지원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40.8%(163명), 장애가 심해서 모든 일상생활 수행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7.5%(30명), 외부 활동을 위해서 4.0%(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26 〉 제공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가 심해서 모든 일상생활 수행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30	7.5
가족이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178	44.5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가 지원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163	40.8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의 업무가 아니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12	3.0
외부 활동(자립생활 등)을 위해서	16	4.0
기타	1	0.3
계	400	100.0

- 낮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주로 집에서 보낸다 51.0%(660명), 직장(직업재활시설 포함)에서 보낸다 15.3%(198명), 건강관리(병원 방문, 운동 등)를 하면서 보낸다 10.3%(133명), 복지시설(기관)에서 보낸다 8.3%(107명), 목적없이 아무 곳이나 다니면서 보낸다 8.3%(107명), 학교, 학원에서 보낸다 5.8%(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27 〉 낮시간 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로 집에서 보낸다	660	51.0
학교, 학원에서 보낸다	75	5.8
직장(직업재활시설 포함)에서 보낸다	198	15.3
복지시설(기관)에서 보낸다	107	8.3
건강관리(병원 방문, 운동 등)를 하면서 보낸다	133	10.3
종교시설에서 보낸다	9	0.7
목적 없이 아무 곳이나 다니면서 보낸다	107	8.3
기타	4	0.3
계	1,293	100.0

- 낮시간에 주로 집에서 지내는 이유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34.1%(225명), 혼자서 밖을 나갈 수 없어서 19.8%(131명), 지역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 13.8%(91명),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10.0%(66명), 가족이 원해서 9.8%(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28 〉 집에서 지내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8	1.2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비용이 부담되어서	33	5.0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66	10.0
지역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	91	13.8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225	34.1
가족이 원해서	65	9.8
혼자서 밖에 나갈 수 없어서	131	19.8
기타	41	6.2
계	660	100.0

- 조사대상자의 27.0%(349명)가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가 71.9%로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29 〉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49	27.0
아니오	944	73.0
계	1,293	100.0

-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휠체어 및 이동 보조기기가 64.5%(22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 19.8%(69명),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7.7%(27명), 일상생활 보조기기 4.3%(15명), 의지·보조기기 3.7%(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30 〉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복수응답, N=349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팡이, 흰지팡이 등)	225	64.5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음성시계, 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음성변환프로그램 등)	27	7.7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진동시계, 무선신호기 등)	69	19.8
일상생활 보조기기(이동식 변기, 전동침대 등)	15	4.3
컴퓨터접근 보조기기(대체마우스, 키보드 등)	0	0.0
자세유지 보조기기(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기 등)	5	1.4
의자보조기(발 보조기, 의족 등)	13	3.7
주택 환경개조 보조기기(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2	0.6
의사소통보조기기(글자판, 음성출력 보조기기 등)	3	0.9
기타	3	0.9
계	362	103.7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 1순위를 살펴보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의 상담 또는 기기 안내가 24.8%(3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의 맞춤 개조, 보완, 제작 16.6%(215명), 보조기기 수리 지원 15.6%(202명) 등의 순임

〈 표 4-31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 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의 상담 또는 기기 안내	321	24.8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의 맞춤 개조, 보완, 제작	215	16.6
보조기기 수리 지원	202	15.6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79	6.1
지원 품목의 확대	133	10.3
신청 및 보급 절차의 간소화	74	5.7
급여비용의 인상	78	6.0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18	1.4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170	13.1
기타	3	0.2
계	1,293	100.0

5) 교육

- 조사대상자 중 29.0%(365명)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22.7%(286명), 중학교 졸업 17.2%(216명), 대학교(2년제 이상) 졸업 16.0%(202명), 무학 15.1%(190명) 순으로 나타남

〈 표 4-32 〉 최종학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무학	190	15.1
초등학교	286	22.7
중학교	216	17.2
고등학교	365	29.0
대학교(2년제 이상)	202	16.0
계	1,259	100.0

주: 졸업 기준

- 조사대상자 중 6.1%(77명)가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33 〉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 경험(복수 응답, N=1,259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취학 유예	19	1.5
유예	8	0.6
학업중단	50	4.0
아니오	1,183	94.0
계	1,260	100.1

-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 이유의 주된 이유는 심한 장애로 인해서 25.0%(1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4.5%(11명), 인근에 적합한 교육 기관이 없어서 11.8%(9명),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워서 9.2%(7명), 치료, 재활기간 동안 학업을 할 수 없어서 7.9%(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34 〉 취학 유예 및 학업 중단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심한 장애로 인하여	19	25.0
인근에 적합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9	11.8
장애가 좀 더 호전된 후 입학(복학)하기 위해서	5	6.6
치료, 재활기간 동안 학업을 할 수 없어서	6	7.9
교육활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4	5.3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2	2.6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	0.0
학교 내 편의제공(의사소통 지원 등)이 부족해서	2	2.6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워서	7	9.2
학교에서 오지 못하게 해서	2	2.6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	14.5
기타	9	11.8
계	76	100.0

- 학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의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5.5%(66명)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35 〉 평생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66	5.5
아니오	1,144	94.5
계	1,210	100.0

- 평생교육을 주로 받는 수장 기관은 응답자 중 42.4%(28명)가 장애인복지관, 노인 복지관 등 복지기관이라고 응답함. 이어서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16.7%(11명), 시민단체/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9.1%(6명), 초중등학교 및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7.6%(5명), 장애인 평생 학습 기관 7.6%(5명), 사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백화점, 문화센터 등) 6.1%(4명), 매체 이용 및 원격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4.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36 〉 평생교육 수강 기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초중등학교 및 대학(원)부설 평생교육기관	5	7.6
사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백화점, 문화센터 등)	4	6.1
시민단체/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6	9.1
종교기관 운영 평생교육기관	1	1.5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11	16.7
장애인 평생학습기관	5	7.6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복지기관	28	42.4
매체이용 및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4.5
기타	3	4.5
계	66	100.0

-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31.9%(36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알았지만, 참여 의사가 없어서 17.3%(198명), 나이가 부담되어서 15.6%(179명),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7.4%(85명),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5.6%(64명), 프로그램 시간이 맞지 않아서 4.1%(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37 〉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몰라서	365	31.9
알았지만 참여 의사가 없어서	198	17.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85	7.4
근처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28	2.4
나이가 부담되어서	179	15.6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64	5.6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29	2.5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20	1.7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	28	2.4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32	2.8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이 불편해서	42	3.7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15	1.3
프로그램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47	4.1
기타	12	1.0
계	1,144	10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1순위로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홍보 및 정보 강화가 30.1%(3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비용 지원 20.6%(249명), 교육기관까지 이동 지원 13.5%(163명) 등의 순임

〈 표 4-38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홍보 및 정보 강화	364	30.1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지원	163	13.5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104	8.6
학습지원 인력 제공	70	5.8
비용(수강료 등) 지원	249	20.6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 운영	61	5.0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83	6.9
평생교육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8	2.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44	3.6
의사소통 지원(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19	1.6
없음	25	2.1
계	1,210	100.0

6) 경제활동

- 만 15세 이상의 응답자 중 21.5%(262명)가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함

〈 표 4-39 〉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262	21.5
아니요	957	78.5
계	1,219	100.0

- 현재 일을 하는 곳은 일반사업체가 47.6%(12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영업 19.3%(52명), 정부 및 관련 기관 13.8%(37명), 공공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10.0%(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0 〉 현재 일하는 곳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자영업	52	19.3
일반사업체	128	47.6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	37	13.8
장애인 보호작업장	11	4.1
장애인 근로사업장	3	1.1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1	0.4
공공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27	10.0
모름/무응답	3	1.1
계	269	100.0

- 종사 업무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8.1%(7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 21.9%(59명), 서비스 종사자 14.4%(39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4%(28명), 관리자 6.3%(17명), 판매 종사자 6.3%(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1 〉 현재 종사 업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관리자	17	6.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	5.2
사무 종사자	59	21.9
서비스 종사자	39	14.4
판매 종사자	17	6.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	10.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	5.9
단순노무 종사자	76	28.1
군인	0	0.0
계	270	100.0

- 현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1년~3년 미만이 27.4%(7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년~20년 미만 17.0%(46명), 5년~10년 미만 16.7%(45명), 3년~5년 미만 14.4%(39명) 등의 순임. 평균 근속기간은 93.9개월이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86개월로 나타남

〈 표 4-42 〉 근속기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32	11.9
1년~3년 미만	74	27.4
3년~5년 미만	39	14.4
5년~10년 미만	45	16.7
10년~20년 미만	46	17.0
20년 이상	34	12.6
계	270	100.0

-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25.9%(7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24.1%(65명), 50~100만원 미만 15.2%(41명), 150~200만원 미만 14.1%(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월평균 수입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이며, 평균 수입은 201만 원으로 나타남

〈 표 4-43 〉 월평균 수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50만원 미만	29	10.7
50만원~100만원 미만	41	15.2
100만원~150만원 미만	27	10.0
150만원~200만원 미만	38	14.1
200만원~300만원 미만	70	25.9
300만원 이상	65	24.1
계	270	100.0

-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50.4%(47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18.9%(179명),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7.3%(69명), 장애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5.0%(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4 〉 미취업의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478	50.4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34	3.6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0	2.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9	0.9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9	2.0
장애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47	5.0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38	4.0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3	1.4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23	2.4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8	0.8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179	18.9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69	7.3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12	1.3
계	949	100.0

○ 조사대상자의 8.7%(106명)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45 〉 직업훈련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94	7.7
훈련 중	12	1.0
아니오	1,113	91.3
계	1,219	100.0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22.1%(24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0.1%(224명),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19.0%(212명),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15.5%(172명), 등록 절차를 몰라서 7.9%(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6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24	20.1
등록 절차를 몰라서	88	7.9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212	19.0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41	3.7
직업훈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32	2.9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	39	3.5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172	15.5
집 근처에 훈련기관이 없어서	34	3.1
나이가 많아서	246	22.1
교육기관에서 거부해서	2	0.2
기타	23	2.1
계	1,113	100.0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필요한 지원 사항 1순위로 생계유지를 위한 훈련 수당(훈련 참여 수당, 교통비, 식비 등)이 67.4%(14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고용이 전제된 현장훈련 실시 18.6%(41명), 이동 편의 제공 5.0%(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7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생계유지를 위한 훈련 수당(훈련 참여 수당, 교통비, 식비 등)	149	67.4
보조공학기기 지원(눈빛이 의자, 의사소통지시기 등)	5	2.3
기숙사 지원	3	1.4
이동 편의 제공	11	5.0
육아 및 가사 지원	5	2.3
훈련을 위한 활동 보조인 지원	4	1.8
훈련 기간 중 보조(대체) 인력 운영 지원	2	0.9
고용이 전제된 현장훈련 실시	41	18.6
기타	1	0.5
계	221	100.0

-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1순위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 여건 조성이 22.7%(27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취업 정보 제

공 18.1%(221명), 금전적 지원(임금 보조, 세제 지원 등) 15.8%(193명),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등) 11.8%(1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8 〉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 여건 조성	277	22.7
취업 정보 제공	221	18.1
취업 상담·평가·알선	127	10.4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등)	144	11.8
직장 내 장애인 편의 제공	57	4.7
지원 인력(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확대	65	5.3
금전적 지원(임금 보조, 세제 지원 등)	193	15.8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종 및 취업처 개발	88	7.2
창업지원(창업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	21	1.7
직업능력 개발(직업적응 훈련, 고등교육 지원)	15	1.2
기타	11	0.9
계	1,219	100.0

7)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1) 사회활동

- 지난 1개월간 외출 정도에 거의 매일 41.4%(5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주 1~3회 38.6%(499명), 월 1~3회 15.1%(195명), 전혀 외출하지 않음 4.9%(64명)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9 〉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거의 매일	535	41.4
주 1~3회	499	38.6
월 1~3회	195	15.1
전혀 외출하지 않음	64	4.9
계	1,293	100.0

- 외출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가 40.6%(2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21.9%(14명),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9.4%(6명),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7.8%(5명), 특별히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7.8%(5명), 하고 싶지 않아서 6.3%(4명)의 순임

〈 표 4-50 〉 외출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교통이 불편해서	0	0.0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6	9.4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26	40.6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4	21.9
하고 싶지 않아서	4	6.3
시간이 없어서	0	0.0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2	3.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5	7.8
특별히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5	7.8
기타	2	3.1
계	64	100.0

- 집 밖 활동 시 느끼는 불편 정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2.3%(643명)가 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평 정도의 평균은 2.52점으로 나타남

〈 표 4-51 〉 집 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불편하다	86	7.0
불편하다	557	45.3
불편하지 않다	493	40.1
전혀 불편하지 않다	93	7.6
계	1,229	100.0

-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33.6%(2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27.8%(179명),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2.6%(81명),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11.5%(74명),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10.7%(69명) 등의 순임

〈 표 4-52 〉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교통이 불편해서	179	27.8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216	33.6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69	10.7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81	12.6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74	11.5
기타	24	3.7
계	643	100.0

- 주된 교통수단으로 일반버스가 23.8%(29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보 15.7%(193명), 자가용(가족 등이 운전) 14.6%(180명),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4.1%(173명), 자가용(직접 운전) 13.7%(1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53 〉 주된 교통수단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일반버스	292	23.8
일반택시	50	4.1
지하철·전철	78	6.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73	14.1
복지관 버스	21	1.7
자가용(직접 운전)	168	13.7
자가용(가족 등이 운전)	180	14.6
셔틀형 복지버스	15	1.2
통학·통근버스	9	0.7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42	3.4
자전거·오토바이	8	0.7
도보	193	15.7
계	1,229	100.0

- 조사대상자의 52.6%(646명)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낀다(매우 어렵다+약간 어렵다)고 응답함

〈 표 4-54 〉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어렵다	125	10.2
약간 어렵다	521	42.4
거의 어렵지 않다	477	38.8
전혀 어렵지 않다	106	8.6
계	1,229	100.0

-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버스, 택시가 불편해서가 44.7%(28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23.2%(150명), 심리적 불편함 16.4%(106명),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0.4%(6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55 〉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289	44.7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67	10.4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150	23.2
자동차 개조 및 운전면허증 확보가 어려워서	10	1.5
승차 거부	4	0.6
심리적 불편함(주위의 시선, 편견 등)	106	16.4
기타	20	3.1
계	646	100.0

-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개선이 시급한 교통서비스에 대해 특별교통수단(시설 제공 차량, 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가 41.8%(51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저상버스 확충 14.1%(173명), 보행환경 및 시설개선 11.6%(143명), 신호등, 턱 등 도로 여건 개선 9.4%(116명), 버스/지하철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음성 및 전광판 안내 서비스 등) 6.4%(7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56 〉 개선이 시급한 교통서비스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특별교통수단(시설 제공 차량, 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	514	41.8
저상버스 확충	173	14.1
신호등, 턱 등 도로 여건 개선	116	9.4
보행환경 및 시설개선	143	11.6
철도 및 버스터미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73	5.9
버스/지하철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79	6.4
버스 정류장/지하철역에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	62	5.0
대중교통 운전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48	3.9
기타	21	1.7
계	1,229	100.0

(2) 문화 및 여가 활동

- 한 달간 참여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해 TV 시청이 85.2%(1,10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휴식(사우나 등) 30.7%(397명), 가족 관련 일(친척 만남,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20.3%(263명),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18.5%(239명), 사교 모임(동창회 모임, 자조 모임 등) 10.1%(1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1순위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27.3%(3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 제도 신설 24.6%(318명), 편의시설 확대 12.8%(165명), 교통 등 이동 수단 확대 11.3%(146명),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 10.9%(1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57 〉 한 달 동안 참여한 문화 및 여가 활동(복수 응답, N=1,293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미술 전시회 등)	82	6.3
TV 시청	1,102	85.2
문화예술 참여(글쓰기, 연주, 사진 촬영, 그림 그리기 등)	31	2.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239	18.5
취미·자기 계발 활동(요리, 독서, 자격증 공부, 교양강좌 등)	47	3.6
스포츠 관람(축구, 테니스, 수영 등)	38	2.9
스포츠 활동(축구, 테니스, 수영 등)	37	2.9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77	6.0
여행(국내외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58	4.5
사교 모임(동창회 모임, 자조 모임 등)	131	10.1
가족 관련 일(친척 만남,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263	20.3
휴식(사우나 등)	397	30.7
아무것도 하지 않음	54	4.2
계	2,556	197.7

〈 표 4-58 〉 문화 및 여가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53	27.3
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 제도 신설	318	24.6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	141	10.9
편의시설 확대	165	12.8
교통 등 이동 수단 확대	146	11.3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	121	9.4
의사소통 지원 확대(수어, 점자, 화면해설, 쉬운 글 제공 등)	30	2.3
장애인식 개선	19	1.5
계	1,293	100.0

8) 차별 경험 및 학대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31.0%(402명)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가끔 있다+자주 있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조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9.6%)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표 4-59 〉 장애로 인한 폭력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자주 있다	117	9.0
가끔 있다	285	22.0
아니오	891	68.9
계	1,293	100.0

- 장애로 인해 폭력을 경험한 경우, 폭력 내용은 정서적 학대(무시, 욕, 따돌리기 등)가 91.8%(36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체적 학대(때리기, 가두기, 밀기, 물건 던지기 등) 16.2%(65명), 경제적 착취(근로 대가 미제공, 명의도용, 물건 파손 등) 3.7%(15명), 방임 및 유기(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치료 방치 등) 2.0%(8명), 성적 학대(성희롱, 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등) 1.0%(4명)의 순임

〈 표 4-60 〉 폭력의 내용(복수 응답, N=402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정서적 학대(무시, 욕, 따돌리기 등)	369	91.8
신체적 학대(때리기, 가두기, 밀기, 물건 던지기 등)	65	16.2
성적 학대(성희롱, 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등)	4	1.0
방임 및 유기(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치료 방치 등)	8	2.0
경제적 착취(근로 대가 미제공, 명의도용, 물품 파손 등)	15	3.7
계	461	114.7

- 폭력의 가해자로는 이웃 및 지인이 35.1%(141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모르는 사람 34.8%(140명), 친구 11.4%(46명), 비동거 가족 6.2%(25명), 고용주 및 직장 동료 4.7%(19명), 친인척 4.0%(16명) 등의 순임

〈 표 4-61 〉 폭력 가해 대상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동거 가족	12	3.0
비동거 가족	25	6.2
친인척	16	4.0
이웃 및 지인	141	35.1
고용주 및 직장 동료	19	4.7
복지 기관 종사자	1	0.2
모르는 사람	140	34.8
학교 교사	2	0.5
친구	46	11.4
계	402	100.0

- 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다가 46.0%(1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다 36.3%(146명), 그 자리에서 항의하였다 11.4%(46명), 폭력인 줄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3.2%(13명),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7%(11명) 등의 순임

〈 표 4-62 〉 폭력 시 대처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다	185	46.0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다	146	36.3
그 자리에서 항의하였다	46	11.4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1	2.7
폭력인 줄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13	3.2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0.2
계	402	100.0

-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5.2%(75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63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유치원(보육시설)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75	25.2
안 받았다	223	74.8
계	298	100.0

-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6.0%(165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64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초등학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165	46.0
안 받았다	194	54.0
계	359	100.0

- 중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1.5%(105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65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중학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105	41.5
안 받았다	148	58.5
계	253	100.0

- 고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5.3%(76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66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고등학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76	35.3
안 받았다	139	64.7
계	215	100.0

- 대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2.2%(9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67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입학·전학 대학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9	12.2
안 받았다	65	87.8
계	74	100.0

- 학교생활 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0.3%(107명)가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생활 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39.7%(209명)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 시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18.2%(96명)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표 4-68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교사, 또래학생, 학부모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527	100.0
교사로부터	받았다	107	20.3
	안 받았다	420	79.7
또래 학생으로부터	받았다	209	39.7
	안 받았다	318	60.3
학부모로부터	받았다	96	18.2
	안 받았다	431	81.8

- 결혼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9%(70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69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결혼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70	7.9
안 받았다	816	92.1
계	886	100.0

- 자녀 양육·교육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3.0%(103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0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자녀 양육·교육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103	13.0
안 받았다	692	87.0
계	795	100.0

- 취업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1.0%(157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1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취업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157	31.0
안 받았다	349	69.0
계	506	100.0

- 직장생활 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2.3%(113명)가 소득(임금)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함.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21.5%(109명)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생활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 중 승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6.6%(84명)가 승진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함. 마지막으로 직무(업무) 배치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9.4%(98명)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표 4-72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직장생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506	100.0
소득(임금)	받았다	113	22.3
	안 받았다	393	77.7
동료와의 관계	받았다	109	21.5
	안 받았다	397	78.5
승진	받았다	84	16.6
	안 받았다	422	83.4
직무(업무) 배치	받았다	98	19.4
	안 받았다	408	80.6

- 운전 면허 취득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0.4%(60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3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운전 면허 제도상(취득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60	10.4
안 받았다	515	89.6
계	575	100.0

- 보험제도 계약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1.5%(292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4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보험 제도상(계약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292	41.5
안 받았다	411	58.5
계	703	100.0

-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4.3%(314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5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대중교통 이용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314	24.3
안 받았다	979	75.7
계	1,293	100.0

-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4.5%(187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6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의료기관 이용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187	14.5
안 받았다	1,106	85.5
계	1,293	100.0

- 정보통신 이용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3%(82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7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82	6.3
안 받았다	1,211	93.7
계	1,293	100.0

-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이용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0.7%(268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8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268	20.7
안 받았다	1,025	79.3
계	1,293	100.0

- 복지 관련 기관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6%(59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79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복지 관련 기관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59	4.6
안 받았다	1,234	95.4
계	1,293	100.0

- 사법·행정서비스 이용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2%(67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80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사법·행정 서비스 이용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67	6.2
안 받았다	1,007	93.8
계	1,293	100.0

- 투표 시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6%(44명)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 표 4-81 〉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_투표 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았다	44	3.6
안 받았다	1,167	96.4
계	1,293	100.0

- 장애로 인해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를 살펴보면, 41.3%(534명)가 차별을 느끼고 있다(항상 느낀다+가끔 느낀다)고 응답함

〈 표 4-82 〉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항상 느낀다	115	8.9
가끔 느낀다	419	32.4
별로 느끼지 않는다	639	49.4
전혀 느끼지 않는다	120	9.3
계	1,293	100.0

- 조사대상자 중 64.7%(837명)가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이 있다(매우 있다+약간 있다)고 응답함

〈 표 4-83 〉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있다	224	17.3
약간 있다	613	47.4
별로 없다	403	31.2
전혀 없다	53	4.1
계	1,293	100.0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2.4%(678명)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에 대해 모른다 34.6%(448명), 알고 있다 12.9%(167명)로 나타남

〈 표 4-8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알고 있다	167	12.9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448	34.6
모른다	678	52.4
계	1,293	100.0

-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38.0%(49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차별 해소를 위한 시책 예산 확대 19.0%(246명), 법·제도 개선 및 마련 18.3%(237명), 장애인 대상 인권 교육 강화 11.4%(147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강화 8.5%(110명) 등의 순임

〈 표 4-85 〉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491	38.0
법·제도 개선 및 마련	237	18.3
차별 해소를 위한 시책 예산 확대	246	19.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강화	110	8.5
장애인 대상 인권 교육 강화	147	11.4
차별 및 학대 신고제도 의무화 및 범위 확대	62	4.8
계	1,293	100.0

9) 주거 및 안전

(1) 주거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 아파트가 4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 아파트 33.6%, 연립주택(빌라) 7.3%, 단독주택 6.3%, 다세대주택 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86 〉 주택 유형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단독주택	81	6.3
다세대주택	80	6.2
연립주택(빌라)	95	7.3
일반 아파트	435	33.6
임대 아파트	565	43.7
오피스텔/원룸	28	2.2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 등)	9	0.7
계	1,293	100.0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5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가 36.2%, 전세 7.6%, 무상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87 〉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자가	468	36.2
전세	98	7.6
보증금 있는 월세	666	51.5
보증금 없는 월세	16	1.2
사글세 또는 연세	1	0.1
일세	1	0.1
무상	43	3.3
계	1,293	100.0

- 주택 개조 희망 의사를 살펴보면, 가급적 고치고 싶다 31.1%, 반드시 고치고 싶다 4.3%로 응답자의 35.4%가 주택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88 〉 주택 개조 희망 의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반드시 고치고 싶다	56	4.3
가급적 고치고 싶다	402	31.1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373	28.8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420	32.5
이미 개조하였다	42	3.2
계	1,293	100.0

- 주택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 개조 장소 1순위를 살펴보면, 문턱 없애기가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엌 15.7%, 변기 12.0%, 미끄럼방지 9.2%, 방문(출입문) 고치기 6.3%, 욕조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89 〉 주택 개조 시 희망 장소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부엌	72	15.7
변기	55	12.0
욕조	27	5.9
문턱 없애기	100	21.8
방문(출입문) 고치기	29	6.3
냉·난방	18	3.9
채광	15	3.3
아파트 출입구(계단)	14	3.1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9	2.0
현관(계단)	22	4.8
미끄럼방지	42	9.2
비상연락장치	6	1.3
비상경보기 설치	9	2.0
화재 감지기 설치	11	2.4
동작감지센서	8	1.7
전기(누수) 누전 공사	9	2.0
손잡이	3	0.7
잠금장치	1	0.2
현관 개폐 리모트컨트롤(리모컨)	3	0.7
전등 리모트컨트롤 스위치	5	1.1
계	458	100.0

-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공공 및 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세, 전세보증금 등 주거비용 지원 확대 22.7%,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16.2%, 장애인 맞춤형 주택 제공(지원주택 등) 15.2%,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90 〉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월세, 전세보증금 등 주거비용 지원 확대	293	22.7
공공 및 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	320	24.7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	210	16.2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139	10.8
장애인 맞춤형 주택 제공(지원주택 등)	196	15.2
주택 마련, 주거 이동, 개조 등에 대한 상담창구 마련 및 정보 제공	79	6.1
장애인 주거 매너저 및 주거 코치 지원	49	3.8
없음	7	0.5
계	1,293	100.0

(2) 안전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비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안전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80.4%,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 73.4%, 대피를 도와줄 조력자가 있다 68.2%,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다 66.1%로 나타남

〈 표 4-91 〉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1,293	100.0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	예	949	73.4
	아니오	344	26.6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다	예	855	66.1
	아니오	438	33.9
대피를 도와줄 조력자가 있다	예	882	68.2
	아니오	411	31.8
안전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예	1,039	80.4
	아니오	254	19.6

- 지난 1년 동안 가장 안전을 위협했던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없음을 제외하고 가정내 안전사고(전기, 화재, 미끄러짐, 가스 등)가 2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감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 16.2%, 교통 및 이동 관련 사고 11.1%, 복지시설 내 안전사고(전기, 화재, 미끄러짐, 가스 등) 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92 〉 지난 1년 동안 안전을 위협했던 요인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정 내 안전사고(전기, 화재, 미끄러짐, 가스 등)	317	24.5
복지시설 내 안전사고(전기, 화재, 미끄러짐, 가스 등)	78	6.0
교통 및 이동 관련 사고	144	11.1
여가 및 놀이 관련 사고	59	4.6
공공장소 안전사고(극장, 행사장, 마트 등)	61	4.7
재난 안전사고(호우, 폭설, 붕괴, 환경오염 등)	32	2.5
직업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33	2.6
폭행사고(집단따돌림, 성폭력, 학대 등)	6	0.5
실종사고(가족을 잃어버림 등)	3	0.2
감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	209	16.2
없음	350	27.1
기타	1	0.1
계	1,293	100.0

-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 및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취한 조치를 살펴본 결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3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했다 29.7%,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24.3%, 경찰,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알렸다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93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340	36.1
경찰,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알렸다	60	6.4
스스로 해결했다	280	29.7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229	24.3
사회복지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4	3.6
계	943	100.0

- 재난 대응훈련 혹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4.1%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15.9%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표 4-94 〉 장애 안전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206	15.9
아니오	1,087	84.1
계	1,293	100.0

-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2.0%, 장애인 위치표시(GPS 배회 감지기) 보급 확대 10.8%,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8.7%,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상황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 5.6%,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95 〉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527	40.8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85	22.0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112	8.7
장애인 위치표시(GPS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139	10.8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66	5.1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상황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	72	5.6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응 훈련	40	3.1
화재보험 등 보험가입(비) 지원	52	4.0
계	1,293	100.0

(3)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사회나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1순위에서는 소득 보장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의료보장 24.4%, 주거 보장 9.3%, 고용보장 7.7%, 장애인 건강관리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96 〉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소득보장	470	36.3
의료보장	315	24.4
고용보장	100	7.7
주거보장	120	9.3
이동권 보장	42	3.2
보육·교육 보장	34	2.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42	3.2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25	1.9
장애인 인식개선	25	1.9
장애인 건강관리	66	5.1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4	0.3
재난안전관리	3	0.2
없음	45	3.5
기타	2	0.2
계	1,293	100.0

10) 경제 상태

-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응답자의 33.6%가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3.1%로 나타났으며, 생계급여 수급 비율(33.6%)보다 높게 나타남
-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5.4%로 나타났으며, 생계급여 수급 비율(33.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2%에 불과하며, 이는 조사대상자의 93.4%가 20대 이상으로 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표 4-9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_생계급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생계급여	수급	435	33.6
	비수급	858	66.4
의료급여	수급	557	43.1
	비수급	736	56.9
주거급여	수급	458	35.4
	비수급	835	64.6
교육급여	수급	42	3.2
	비수급	1,251	96.8
계		1,293	100.0

- 주 소득원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동거 가족의 소득 26.0%, 본인의 근로 소득 16.6%, 보험(국민연금, 민간 보험 등) 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98 〉 주 소득원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본인의 근로소득	214	16.6
본인의 자산소득(예금이자, 임대 수입 등)	23	1.8
배우자/동거 가족의 소득	336	26.0
정부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631	48.8
보험(국민연금, 민간 보험 등)	54	4.2
동거하지 않는 가족/친척의 용돈, 이웃, 사회복지기관의 후원 등	35	2.7
계	1,293	100.0

- 지난 1개월 장애인 개인의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4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만 원 미만 14.6%,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3.3%, 없음 11.0%, 300만 원 이상 6.3% 등의 순임. 장애인의 25.6%가 없음을 포함한 5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나타남

〈 표 4-99 〉 지난 1개월 평균 개인 수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없음	142	11.0
50만원 미만	189	14.6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63	43.5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72	13.3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4	4.9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50	3.9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1	2.4
300만원 이상	82	6.3
계	1,293	100.0

- 지난 1개월 장애인 가구의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9.8%,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7.0%,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4.2% 등의 순임 1개월 평균 가구 수입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장애인의 비율은 57.1%로 나타남

〈 표 4-100 〉 지난 1개월 평균 가구 수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00만원 미만	482	37.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56	19.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20	17.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83	14.2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93	7.2
500만원 이상	37	2.9
모름	22	1.7
계	1,293	100.0

- 지난 6개월 동안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료비가 46.2%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교통비 23.4%, 활동 지원/도우미/간병비 9.9%,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8.3%, 재활 기관 이용료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01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유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1,293	100.0
의료비	있음	598	46.2
	없음	695	53.8
교통비	있음	302	23.4
	없음	991	76.6
보육/교육비	있음	18	1.4
	없음	1,275	98.6
활동지원/도우미/간병비	있음	128	9.9
	없음	1,165	90.1
재활기관 이용료	있음	56	4.3
	없음	1,237	95.7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있음	107	8.3
	없음	1,186	91.7

-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1순위)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수당 대상 및 지원금 확대 16.9%,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지원금 확대 15.9%, 의료비 지원 확대 11.9%, 돌봄(활동 지원, 가사도우미 등)비용 지원 확대 5.4% 등의 순임

〈 표 4-102 〉 경제적 지원 관련 필요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	535	41.4
장애수당 대상 및 지원금 확대	219	16.9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지원금 확대	205	15.9
돌봄(활동 지원, 가사도우미 등) 비용 지원 확대	70	5.4
의료비 지원 확대	154	11.9
주거비 지원 확대	43	3.3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41	3.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지원 확대	7	0.5
교통비 지원 확대	15	1.2
교육 및 보육료 지원 확대	4	0.3
계	1,293	100.0

11) 자립생활

- 자립생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4.8%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25.2%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103 〉 자립생활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05	25.2
아니오	906	74.8
계	1,211	100.0

- 자신이 생각하는 자립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가 3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이다 29.8%,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13.8%, 내 삶에 대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8.4% 등의 순임

〈 표 4-104 〉 자립의 의미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이다.	361	29.8
사회적 일원이 되는 것이다.	167	13.8
친구나 동료들 얻는 것이다.	67	5.5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365	30.1
나만의 생활공간을 갖는 것이다.	64	5.3
내 삶에 대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102	8.4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66	5.5
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19	1.6
계	1,211	100.0

- 현재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립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가 63.2%이며,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가 36.8%로 나타남

〈 표 4-105 〉 자립생활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446	36.8
아니오	765	63.2
계	1,211	100.0

-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1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업 지원 11.2%, 개인별 자립 지원 6.3%, 동료 상담 3.8%, 체험 홈 서비스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06 〉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446	100.0
권익옹호	있다	13
	없다	433
동료상담	있다	17
	없다	429
개인별자립지원	있다	28
	없다	418
활동지원서비스	있다	68
	없다	378
체험홈서비스	있다	15
	없다	431
취업지원	있다	50
	없다	396

-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대전시 지원 사항(1순위)을 살펴보면, 소득(생계비) 지원이 3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24.3%, 주거지원(전세 주택, 자립생활 주택 등) 14.5%,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12.7%, 일자리 지원 4.2%, 이동 지원(장애인콜택시 등)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07 〉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대전시 지원 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활동지원서비스	294	24.3
소득(생계비) 지원	382	31.5
주거지원(전세주택, 자립생활주택 등)	176	14.5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154	12.7
이동 지원(장애인콜택시 등)	43	3.6
일자리 지원	51	4.2
의사소통 지원	6	0.5
자립생활지원 전담기관(전문인력) 지원	20	1.7
여가문화 지원	15	1.2
평생교육 지원	5	0.4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4	0.3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음	8	0.7
자립생활 관련 정보 지원	5	0.4
자립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	48	4.0
계	1,211	100.0

12) 미래준비(노후생활)

- 미래 준비(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2.2%가 미래 준비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표 4-108 〉 미래준비(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804	62.2
아니오	489	37.8
계	1,293	100.0

- 미래 준비(노후생활)에 대한 주된 걱정(1순위)은 건강관리가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비 및 금전 관리 23.4%, 혼자 남겨지는 것 12.2%, 일상생활 지원(돌봄 등) 8.0%, 주거(집)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09 〉 미래(노후생활)에 대한 주된 걱정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건강관리	364	45.3
일상생활 지원(돌봄 등)	64	8.0
교육	1	0.1
문화·여가 활동	22	2.7
이성 교제 및 결혼	8	1.0
주거(집)	42	5.2
직업재활 및 취업	13	1.6
생활비 및 금전 관리	188	23.4
신변 보호	2	0.2
혼자 남겨지는 것	98	12.2
없음	2	0.2
계	804	100.0

- 미래(노후생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4%만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83.6%는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함

〈 표 4-110 〉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212	16.4
아니오	1,081	83.6
계	1,293	100.0

- 미래(노후생활)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212명 중 57.1%가 국민연금 등 국가 운영 공적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예금/적금/저축 등 52.4%,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22.2%, 민간 보험 20.3%, 기타 공적연금(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등)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11 〉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 사항(복수응답, N=212명)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국민연금 등 국가 운영 공적연금 가입	121	57.1
기타 공적연금(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등)	30	14.2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47	22.2
민간보험	43	20.3
예금, 적금, 저축 등	111	52.4
주식, 펀드, 채권 등 운용	14	6.6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전세금 등)	9	4.2
가족 및 자녀로부터 도움 기대	15	7.1
부모님, 가족의 유산	6	2.8
기타	1	0.5
계	397	187.3

- 미래 준비(노후생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 6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17.4%,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6%, 가족에게 부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12 〉 미래(노후생활)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69	15.6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188	17.4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	652	60.3
가족에게 부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66	6.1
기타	6	0.6
계	1,081	100.0

- 40세 이상인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생애 설계 서비스가 2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22.6%, 고령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15.6%,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제한(65세 이상)에 따른 이용 시간 하락분 추가지원 10.5%, 건강한 노후생활(건강관리, 여가/평생교육 활동) 지원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113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_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245	22.6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생애 설계 서비스	286	26.4
고령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169	15.6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제한(65세 이상)에 따른 이용시간 하락분 추가지원	114	10.5
장애인지원제도와 노인지원제도의 연계 방안 마련	96	8.9
건강한 노후생활(건강관리, 여가/평생교육 활동) 지원	102	9.4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	70	6.5
기타	1	0.1
계	1,083	100.0

제2절 초점집단면접 분석

1. 조사 개요

-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평가와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초점집단면접은 권익옹호, 근로·기본소득, 건강, 교육문화, 사회참여,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증진 등 분야별로 제2차 기본계획의 전반적 총평, 해당 분야의 중요한 욕구 및 이슈,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 및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 등의 의견을 수렴함
- 초점집단면접은 3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1그룹의 초점집단면접은 권익옹호와 근로·기본소득 분야, 2그룹 초점집단면접은 건강, 교육문화 분야, 3그룹 초점집단면접은 사회참여,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로 구성하여 진행함.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현장 전문가, 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임
- 초점집단면접은 그룹별 1회,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기당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됨. 참여자 외 연구진 2명과 보조진행자 1명으로 구성된 팀이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비밀보장과 중도 철회의 권리를 고지함. 또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동의 아래 녹취를 통해 내용을 분석함
- 초점집단면접은 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참여자에게 미리 전달하고 면접을 진행함

〈 표 4-114 〉 초점집단면접 분야별 참여자 특성

분야	성별	소속
권익옹호 근로기본소득	여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남	대전광역시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	대전광역시지폐성장장애인자립지원센터
	남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남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여	도토리보호작업장
	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남	행복한우리복지관
건강 교육문화	여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남	대청종합병원
	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여	행복한우리복지관
	남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남	대전시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참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	남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남	유성구수어통역센터
	여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남	밀알복지관
	남	로덤

〈 표 4-115 〉 초점집단면접 질문 내용

분석 영역	주요 내용
분야별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핵심과제 중 우수한 과제와 미흡한 과제 ▶ 해당 분야의 핵심과제 중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지속해서 추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과제 ▶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
분야별 이슈, 욕구, 신규 과제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해당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이슈 또는 욕구 (전국,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이슈 또는 욕구) ▶ 해당 분야의 이슈 또는 욕구 등을 고려할 때,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추진할 과제 ▶ 제안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고려 사항
제3차(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핵심 가치 ▶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분야를 6개 분야로 구분한 것의 적절성 ▶ 6개 분야 중 삭제 또는 변경,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2. 분석 결과

1) 권익옹호와 근로·기본소득 분야

(1)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평가 주요 의견

□ 권익옹호 분야

- 2020년 이후 코로나19 동안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진행된 인권 교육의 거의 없었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온라인교육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권 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인권센터의 주요 교육 대상을 지역사회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으로 좀 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인권센터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지도가 낮아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함
- 장애인 학대 및 권익옹호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센터 및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지만, 세 개의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근거 조례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사업 기간 동안 센터 운영비가 매우 소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사업비가 감소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낮은 인건비 지급으로 인해 직원 이탈률이 높고 그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주관단체를 통해서도 주로 문화 향유 앱을 통한 정보 제공 정도의 모니터링만 작동하고 있을 뿐임

□ 근로기본소득 분야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직업재활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신규 직업재활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임. 즉, 현재 대전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에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이용자를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임

-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일차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욕구 조사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의 경우 6.1%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사회서비스원, 두 곳만 3.6%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무지개복지공장이 포함되어 있기에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것이며, 나머지 10개 기관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성과지표를 % 가 아니라 의무 고용률 충족 기관 개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운영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취업 안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다만, 직무지도원의 역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가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분야 이슈, 욕구, 신규 과제에 관한 주요 의견

□ 권익옹호 분야

-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피해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대전광역시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특히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범죄피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보다 광고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해 공익광고처럼 전파를 통해 흘러보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탈시설, 최종중 통합돌봄 등과 같은 발달장애인 중심의 정책환경의 변화에 지역사회가 순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 옹호인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실적인 운영비 지급이 필요함. 추가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면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좀 더 수준 높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개선 및 환류를 체계적으로 작동시킬 필요가 있음

□ 근로기본소득 분야

- 직업재활시설 직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직업 적응훈련 시설 이용 장애인인 ‘훈련 장애인’ 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 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전시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음
- 향후 대전시에서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새로 건립할 때 의무적으로 1층에 건강 카페를 1개소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 카페의 경우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여 문화예술 직무 중심의 공공일자리 창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강점을 활용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양성하여 조폐공사 기념주화에 그림을 넣은 방향으로 표준사업장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창업과 관련하여, 현재 대전시의 시정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과학도시,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회, AI 활용 등으로 창업 아이템을 잡을 필요가 있음. 그리고 창업 관련하여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인건비 지급 또는 전시회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의 내실화를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 관계 구축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재정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탁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함

(3) 제3차(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의견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대전’, ‘소통해서 정말 화합하는 대전’, ‘장애인이 당연한 주인이 되는 대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장애인 복지도시 대전’ 등이 제안되었으며, 핵심 가치로 다양성, 평등한 기회, 공존 등이 제시되었음

- 권익옹호 분야의 핵심과제로 대전 특성을 반영한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공익광고를 활용한 장애 인식개선 및 시민 옹호인 양성,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개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음
- 한편, 근로·기본소득 분야의 경우, 훈련장애인 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정, 공공기관 건물 건립 시 건강 카페 설치·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 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 도입,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표준사업장 신설, 문화예술 기반 창업 강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내실화 및 신탁 시범사업 참여 등이 제안되었음

2) 건강 분야와 교육·문화 분야

(1)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평가 주요 의견

□ 건강 분야

- 건강 분야 추진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인 건강권 보장 기반 시설 확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즉, 구강 진료, 산부인과 진료 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점은 긍정적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대전형 장애 친화 의료기관 지정 등은 장애아동의 재활, 성인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건강 분야는 총 6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회복이나 치료 중심의 과제여서,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40세 이상에서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겪는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함
-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이 1개소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례가 많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즉, 홍보의 부족인지, 접근권의 어려움인지, 장애인의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인지 등의 원인 분석 후 보완이 필요함.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

양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정보 자체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강 분야의 기반 시설 확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태도 등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문화 분야

- 교육·문화 분야의 추진 전략 중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 중 중·고령 장애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 지원의 경우, 40세 이후 장애인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아 긍정적인 사업이며 향후 확대가 필요함. 특히,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낮 활동 지원이기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 확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이 우수함. 장애 학생의 경우 방학 중 방임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 또한 방학 중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예비 특수교사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음
- 장애인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경계선이 불분명함. 그렇다 보니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장애 유형별 단체 지원사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
- 생활체육의 경우, 공공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이용하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와 프로그램 확대의 경우, 사업 내용이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과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이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이 삭제되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 필요함
- 전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나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판단됨

(2) 해당 분야 이슈, 욕구, 신규 과제에 관한 주요 의견

□ 건강 분야

- 장애인 특히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함. 예를 들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필요
- 장애 친화 병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장애 친화 종합검진 병원(대청병원)에 내원해야 하나, 접근이 어려워 이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병원 내에서 검진 시 이동, 자리 옮김, 자세 변경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례도 있어 이에 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함
- 장애 친화 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의 만족도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방문 진료나 방문 재활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으로 외상 장애인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외상 장애인은 병원에 갈 때는 119를 타고 가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사설 응급 업체를 이용해야 해서 기본요금(7만 5천 원)에 거리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어 병원 이용의 제약이 발생함. 울산광역시의 경우, 119를 이용하는 금액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관련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건강 관련 사업이 포함되었으면 함

□ 교육·문화 분야

-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사업으로 볼 것인지, 돌봄 사업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함. 현실적으로는 교수학습이 아니라 체험형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돌봄 전담사를 배치하는 방안 필요함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의 경우, 3곳 모두 서구에 있어 다른 구에서 접근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시 보증금을 지원하여 다른 자치구에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은 성인기의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이 필요함. 또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람
- 장애인과 함께 교육하는 인력 양성, 보수 교육 강화 및 지원 등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후 또는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부재 시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의 개발이 필요함
- 40세 이후 성인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확대. 특히,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공공 체육시설 및 작은 체육관 등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문화 분야에서 체육의 경우,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전문체육, 재활 체육, 특수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 생활체육지도자 보조 교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면 함
- 후천적 장애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정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활 운동이나 재활 체육 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미흡한 실정임.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다 보니 소홀이 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나면 며칠은 평온한 편이나, 체육관 이용 대기자가 많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 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증가가 필요하고, 동시에 관련 인력 증원이 필요함
-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어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즉,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면서, 보조금 없이 수익금으로 운영할 경우, 관련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음

(3) 제3차(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의견

- 건강 분야의 경우 장애아동 중심의 사업 구성이 많아, 상대적으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건강 분야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확대 필요

- 40세 이후 성인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이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40세 이후 중장년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건강 분야의 다양한 기반 시설 확충과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서로 연계할 방법이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관련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가 필요함
- 교육문화 분야의 경우, 체육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지도자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함
- 문화 향유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과정에서 모니터링체계와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의 절차가 필요함. 즉,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그리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3) 사회참여와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

(1) 제2차(2019~2023) 기본계획 평가 주요 의견

□ 사회참여 분야

- 최종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용자를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정보드림 사이트는 내용은 잘 구축하였으나, 페이지 접근과 정보 검색이 어려움
- 주요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주차장을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으로 쓰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로 볼 수 없음. 별도의 승하차 공간이 필요함
- 수어통역센터 직원들이 야간, 휴일 근무를 하는 것에 애로가 있음
- 저상버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대기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함. 장애인콜택시의 광역 간 왕복 이용 제한도 개선해야 함

□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고, 성과가 미흡함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이 탈시설에만 집중됨.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도 생활인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활발하지 않음
- 전반적으로 전체 추진 과제에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고, 탈시설지원센터는 욕구 조사 외 추진사업이 없음

(2) 해당 분야 이슈, 욕구, 신규 과제에 관한 주요 의견

□ 사회참여 분야

-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수어 통역 센터 개소 수, 또는 근무 인력의 확충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인공 와우 수술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정체성과 이후 사회활동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 보조기기 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보급과 사례관리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DB가 필요함

□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

-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증진이 탈시설에만 집중됨.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도 생활인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활발하지 않음
- 거주시설 운영 자립생활 체험홈은 기능 보장 이후 지원이 없고, 자립생활센터 운영 체험홈도 예산지원이 부족한 채로 수년째 동결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체험 기간 또한 일주일 정도로 매우 짧아 일반적으로 6개월~2년으로 되어 있는 체험 기간이 보장되지 못함. 또한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이 실제 탈시설을 지향하지 않고, 체험으로 종료됨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모니터링을 거주시설에서 담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국회에서의 탈시설지원법 계류와 관계 없이 대전시가 ‘인권친화도시 대전’이라는 기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탈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3) 제3차(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의견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 토대는 물리적 기반 시설의 보강이며, 3차 계획에서 기반 시설 구축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은 지원 기준을 낮춰 이용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농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수어 인식개선과 최소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의 보편화가 필요함
- 손상이 아닌 사람 중심, 보통의 삶,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기조로 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2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실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구체적 계획이 필요함
- 장애 정도가 심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실제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 5 장

제3차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제5장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제1절 비전과 추진 전략

1. 정책 방향

- 장애 인구의 변화, 장애인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장애 인구수와 장애 인구 비율, 장애 유형별 현황, 장애 정도, 나이 등 등록 장애인의 변화 특성 등을 반영하였음
 - 특히, 중고령 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장애 인구의 특성과 자립생활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핵심과제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정책 방향, 장애 당사자와 장애 관련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세부 과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관련 정책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대전광역시 제2차(2019~202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평가,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 대전광역시 민선 8기 비전 및 시정 방향, 핵심 전략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실태 및 욕구 파악,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장애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 장애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의견, 대전광역시 등 장애인 정책 집행기관의 의견, 시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2. 비전과 추진 전략

-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대전” 으로 설정함
- 목표는 ‘장애인 인권 보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으로 설정함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분야를 6대 분야로 설정하였고, 13개 추진 전략, 45개 핵심과제를 설정하였음

[그림 5-1]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비전과 추진 전략

비전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대전	
목표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분야	권익옹호 / 근로·소득 / 건강 / 교육·문화·예술·체육 / 사회참여 / 자립생활	
6대 분야 13개 추진전략 45개 핵심과제	권익옹호	근로·소득
	1-1. 장애인 인권 보장 기반 구축 1-2. 장애인 인권 보장 지원강화	2-1.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2-2. 장애인 취창업지원 강화
	건강	교육·문화·예술·체육
	3-1. 건강보장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 3-2. 건강보장 보건의료사업 내실화	4-1.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환경 강화 4-2. 장애인 문화·예술 이용 환경 강화 4-3. 장애인 체육 이용 환경 강화
	사회참여	자립생활
	5-1. 장애인 접근권 보장 5-2.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6-1. 일상생활 지원강화 6-2. 자립생활 기반 구축

3. 분야별 핵심과제

- 6대 분야 중 권익옹호, 근로·소득, 건강 분야는 각 2개의 추진 전략과 전략별 3~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장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 훈련장애인 훈련 수당 지급, 발달장애인 신탁 서비스(재산관리지원서비스), 권리중심형 장애인일자리사업 개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임

〈 표 5-1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분야	추진 전략	핵심과제
권익옹호	1-1. 장애인 인권 보장 기반 구축	1-1-1. 사회복지관 내 장애인단체 입주 지원
		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내실화
		1-1-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1-1-4.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전달체계 통합 운영
	1-2. 장애인 인권 보장 지원강화	1-2-1. 학대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 쉼터 확충
		1-2-2. 다중 차별 대상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1-2-3.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	
근로·소득	2-1.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2-1-1. 훈련장애인 훈련 수당 지급
		2-1-2. 장애인 연금 등 추가지원
		2-1-3. 발달장애인 신탁 서비스(재산관리지원서비스)
	2-2. 장애인 취·창업지원 강화	2-2-1. 건강 카페 운영 확대
		2-2-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내실화
		2-2-3. 장애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2-4. 권리중심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개시	
건강	3-1. 건강보장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	3-1-1.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3-1-2. 소아 중증장애인 낮 병동 운영
		3-1-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1-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3-2. 건강보장 보건의료사업 내실화	3-2-1.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강화
		3-2-2. 장애인친화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강화
		3-2-3.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강화
		3-2-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 6대 분야 중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사회참여 분야, 자립생활 분야는 각 2~3개의 추진 전략과 전략별 2~5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운영, 특별교통수단 광역 간 왕복 이용 지원, 보완 대체 의사소통 지원강화,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임

〈 표 5-2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계속)

분야	추진 전략	핵심과제
교육문화예술 체육	4-1.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환경 강화	4-1-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1-2.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내실화
		4-1-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운영
	4-2. 장애인 문화예술 이용 환경 강화	4-2-1. 중고령 장애인 문화여가 사업 개발 및 지원
		4-2-2.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4-2-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지원
	4-3. 장애인 체육 이용 환경 강화	4-3-1. 사회통합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확충
		4-3-2.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및 생활체육 교실 확대
		4-3-3.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참여	5-1. 장애인 접근권 보장	5-1-1. 장애인 맞춤형 정보제공사이트 '정보드림' 접근성 강화
		5-1-2.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 운영
		5-1-3. 특별교통수단 광역 간 왕복 이용 지원
		5-1-4.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
	5-2.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5-2-1. 청각·언어장애인 수어 통역 내실화
5-2-2. 보완 대체 의사소통 지원강화		
자립생활	6-1. 일상생활 지원강화	6-1-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6-1-2. 최종중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6-1-3.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6-2. 자립생활 기반 구축	6-2-1.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6-2-2.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
		6-2-3.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2-4.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정례화
6-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제2절 분야별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

1. 권익옹호 분야

- 제3차 기본계획(안)의 권익옹호 분야에 제시한 2개의 추진 전략은 ‘장애인 인권 보장 기반 구축’ 과 ‘장애인 인권 보장 지원강화’ 임. 추진 전략별 3~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5-3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권익옹호

분야	추진 전략	핵심과제
권익옹호	1-1. 장애인 인권 보장 기반 구축	1-1-1. 사회복지관 내 장애인 단체 입주 지원
		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내실화
		1-1-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1-1-4. 장애인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전달체계 통합 운영
	1-2. 장애인 인권 보장 지원강화	1-2-1. 학대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 쉼터 확충
		1-2-2. 다중차별 대상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1-2-3.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

추진 전략 1-1. 장애인 인권 보장 기반 구축

1-1-1. 사회복지회관 내 장애인 단체 입주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7.2만 명의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15개 장애 유형의 인권 보장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즉, 15개 장애 유형마다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그리고 필요한 정책 등이 다르기에 이들의 권익을 장애인 단체들이 대변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대전시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설치 및 운영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건물 유지비용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본 건물 안에 장애인 단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즉, 별도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비용효율성 및 접근성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회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단체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사회복지회관 내 장애인 단체 입주 지원을 통한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유형별 권익보장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광역시 소재 장애인 단체
- 사업내용: 사회복지회관 내 장애인 단체 입주 지원
 - 사회복지회관 내 장애인 단체 입주 지원 관련 운영 방안 논의
 - 근거마련: 의견수렴 및 조례 제정 등 설치·운영 근거 마련 후 사업수행 방식 결정
- 성과목표: 사회복지회관 내 장애인 단체 입주 및 지원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사회복지회관 내 장애인 단체 입주	의견수렴 및 검토	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	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	장애인 단체 입주	장애인 단체 입주

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을 근거로 대전시의 경우 2011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 및 지금까지 시행 중임. 그리고 동 조례 제3조(기본계획)을 근거로 5년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매년 수립 및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데, 좀 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 FGI에서도 동일 의견이 제시되었음.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진행 중인 모니터링의 경우 장애인당사자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형편임.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부터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본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사업 추진 근거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3조(기본계획), 제7조(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수행기관: 전문 연구기관
- 사업내용: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
- 성과목표: 기본계획 중간·종합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기본계획 모니터링 실시	-	-	기본계획 중간평가 실시	-	기본계획 종합평가 실시

1-1-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대전시의 경우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 2010년에 이미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 그리고 현재 발달장애인지원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동법과 조례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표’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공공신탁 시범사업, 긴급돌봄서비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지역장애아동센터 통합운영 등 발달장애인지원 정책이 보다 촘촘해 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됨
- 따라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본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량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추진

□ 사업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인 지원, 긴급돌봄센터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등
- 성과목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종사자 1인당 대전 등록 발달장애인 수	전년 대비 감소				

1-1-4. 장애인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전달체계 통합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59조의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을 근거로 2017년.8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 및 운영 중이며,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대전광역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5조의 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근거로 대전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 권익옹호, 권리구

제 및 인식개선 등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대전지역의 장애인 학대와 차별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임. 2022년 대전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31%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2017년 조사의 경우, 19.6%), 41.3%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및 차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양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 경기, 경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 두 기관을 통합 운영 중임

□ 사업 목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인권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차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59조의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대전광역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제5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인권센터
- 사업내용: 양 기관 통합 운영
 - 대전광역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 운영의 근거 마련
- 성과목표: 통합 운영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장 전달체계 통합 운영	의견수렴 및 조례 개정	통합 운영 준비	통합 운영	통합 운영	통합 운영

추진 전략 1-2. 장애인 인권보장 지원강화

1-2-1. 학대 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 쉼터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성폭력·가정폭력을 받은 장애인의 삶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음.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19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임
- 한편, 2022년 대전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31%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2017년 조사의 경우, 19.6%), 2차 기본계획 평가에서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쉼터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특히, 적정 쉼터 개소 수 및 인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연구(이동석 외, 2020)에 따르면 대전에는 4개소의 성인 쉼터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따라서 향후 일차적으로 성인 쉼터를 1개소 확충하여 남녀 장애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전문적·체계적 사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남녀 분리된 별도의 쉼터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학대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제공 등을 위해 학대 피해 성인 및 장애 아동 쉼터 설치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학대 피해 성인 및 아동 장애인
- 사업내용: 학대 피해 성인 및 아동 쉼터 운영지원

- 주요 업무: 입소 장애인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등
- 성과목표: 학대 피해 성인 쉼터 1개소, 장애아동 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학대 피해 장애인 및 장애 아동 쉼터 확충	성인 쉼터 1개소 운영 + 성인 쉼터 1개소 확충	성인 쉼터 2개소 운영	성인 쉼터 2개소 운영	성인 쉼터 2개소 운영	성인 쉼터 2개소 운영
			장애아동 쉼터 1개소 설치	장애아동 쉼터 1개소 운영	장애아동 쉼터 1개소 운영 + 장애아동 쉼터 1개소 확충

1-2-2. 다중 차별 대상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다중 차별에 직면한 장애인으로서, 상대적으로 학대와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큼
- 따라서 이와 같은 다중 차별에 직면한 장애인의 권익 보호, 사회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는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자폐성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센터들에 대한 대전시 지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인건비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여, 갈수록 프로그램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여건임
- 따라서, 향후 다중 차별 대상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본 연구 FGI에서도 제안되었음

□ 사업 목적

- 지적, 자폐성 및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다중 차별 대상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자립생활 지원)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지적, 자폐성 및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자 및 가족
- 사업내용: 다중 차별 장애인에 대한 상담, 권익옹호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 성과목표: 다중 차별 대상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점진적 확대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다중 차별 대상 자립지원센터 운영원 강화	의견수렴 및 근거 마련	사업비 점진적 확대	사업비 점진적 확대	사업비 점진적 확대	사업비 점진적 확대

1-2-3.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

□ 배경 및 필요성

- 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여성장애인과 비슷하게 다중 차별에 직면해 있는 장애 유형으로서, 15개 장애 유형 중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법률로 「정신보건법」이 지난 200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평소 건강 상태는 약 60%가 나쁜 상태이며,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도 약 57%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와 같은 다중 차별에 직면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현재 지역사회에 매우 부족한 여건임. 본 연구

FGI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따라서 지적, 자폐성 및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처럼 다중 차별에 직면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사업 목적

-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 근거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정신건강 증진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광역시 거주 등록 정신장애인
- 사업내용: 정신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 추진
- 성과목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의견수렴 및 조례 개정	설치 및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 근로·소득 분야

-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 근로·소득 분야에 제시한 2개의 추진 전략은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와 ‘장애인 취·창업 지원강화’임.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에는 3개의 핵심과제를, 장애인 취·창업 지원강화에는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5-4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근로·소득 분야

분야	추진전략	핵심과제
근로·소득	2-1.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2-1-1. 훈련장애인 훈련 수당 지급
		2-1-2. 장애인 연금 등 추가지원
		2-1-3. 발달장애인 선택 서비스(재산관리지원서비스)
	2-2. 장애인 취창업 지원강화	2-2-1. 건강 카페 운영 확대
		2-2-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내실화
		2-2-3. 장애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2-2-4. 권리중심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개시

추진 전략 2-1.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2-1-1. 훈련장애인 훈련 수당 지급

□ 배경 및 필요성

-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별 과업으로서,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 의료 및 주거 보장 등으로 고용보장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동 조사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의 응답자 중 21.5%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임금 보조 등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15.8%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 대전광역시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총 26개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무지개복지공장 및 보조금 미지원 시설 제외).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이 훈련 시 소요 되는 비용보다 월평균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경기도 1인당 16만원 지급). 이는 본 연구 FGI에서도 제안되었음

□ 사업 목적

-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에게 훈련 수당 지급을 통해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부담 경감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제4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
- 사업내용: 훈련장애인에게 1인당 훈련 수당 10만원 지급
- 성과목표: 훈련 수당 지급대상자 점진적 확대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훈련장애인 훈련 수당 지급	의견수렴 및 제도 정비	훈련 수당 370명 제공	훈련 수당 375명 제공	훈련 수당 380명 제공	훈련 수당 385명 제공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급 대상 및 금액은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2-1-2. 장애인 연금 등 추가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11만원)의 48.4%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또한, 2022년 대전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사회나 국가에 바라는 요구사항의 1순위가 소득보장(36.3%)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 관련 필요 사항으로 장애인 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가 41.4%, 장애수당 대상 및 지원금 확대가 16.9%로 나타났음
- 한편, 대전시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그동안 시비로 추가지원을 해 왔음. 장애인 연금은 3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원 시(市)가 추가 지원해 오고 있음. 하지만, 타 시도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 금액을 검토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3차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의 추가지원 금액 점진적 확대, 장애수당 추가지원 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2차 기본계획 평가에서도 제시되었음

□ 사업 목적

- 국비 지원액 이외에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소득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 5조(자립생활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시 거주 등록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
- 사업내용: 장애인 연금(월 3만원) 및 장애아동 수당(월 2만원) 시(市) 추가지원
- 성과목표: 지원자 수 점진적 확대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 연금 등 대전시 추가지원	장애인연금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만원				

2-1-3. 발달장애인 신탁 서비스(재산관리지원서비스)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 신탁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신탁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

상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대유형 중 경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에 가장 노출될 위험이 큰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탁 서비스는 매우 필요한 제도임.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미래 준비(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생활비 및 금전 관리가 23.4%로 건강관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발달장애인 신탁 서비스를 좀 더 대전광역시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신탁 서비스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재산관리

□ 사업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광역시 거주 등록 발달장애인 중 신탁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제공하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신탁 서비스 이용
- 성과목표: 신탁 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의 수 점진적 증가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달장애인 신탁 서비스 업무협약체결 및 이용	의견수렴 및 근거 마련	업무협약 체결	5명 시범운영	10명 이용	10명 이용

추진 전략 2-2. 장애인 취·창업지원 강화

2-2-1. 건강 카페 운영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및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음.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기능 및 욕구 상의 편차가 크기 때문임. 하지만 바리스타를 비롯한 카페에서 업무 보조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매우 특화된 일자리가 될 수 있음
- 대전시의 경우 2011년 대전시청(1층)에 건강 카페 1호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건강 카페를 11개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건강 카페 개소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대전시 공공기관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 카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본 연구의 FGI에서도 제시되었음

□ 사업 목적

- 건강 카페 확대를 통한 장애인고용 창출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건강 카페 확대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성과목표: 건강 카페 설치 개수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건강 카페 설치 수(개소)	11	11	12	12	13

2-2-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2022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34.3%지만 지적장애인은 25.9%, 자폐성 장애인은 21.8%로 낮게 나타났음(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취업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도에서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사업을 진행 중임
- 대전광역시는 2011년부터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사업을 했으며, 2022년 기준 직무지도 요원이 22명 배치되었고, 472명의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았음. 하지만 이와 같은 직무지도 요원의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
- 따라서 취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을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본 연구의 FGI에서도 제시되었음

□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의 복지 일자리 참여 유도를 위한 직무지도 요원 확대 배치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제5조(재정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요원
- 사업내용: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를 위한 직무지도 요원 배치
- 성과목표: 직무지도 요원 점진적 확대 배치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직무지도 요원 내실화	22명	23명	23명	24명	24명

2-2-3. 장애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2022년 5월 기준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652,860이고, 장애인의 창업 분야는 제조업·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창업지원,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우선 구매제도 권장 등 다양한 장애인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장애인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자금조달, 아이템 발굴 지원 등 맞춤형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 필요
- 따라서 향후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창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사업 추진 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14조(창업 촉진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창업을 희망하는 대전시 거주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찾아가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및 멘토링
- 성과목표: 찾아가는 장애인 창업 교육 수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찾아가는 장애인 창업 교육 수	1	2	3	4	5

2-2-4. 권리중심형 장애인일자리사업 개시

□ 배경 및 필요성

-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업임. 하지만 2022년 대전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1.5%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취업은 쉽지 않은 현실임. 그리고 동 조사에 의하면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 여건 조성이 22.7%, 취업 정보 제공이 18.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의 취업은 매우 요원함
- 현재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리중심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권익옹호 직무, 문화예술 직무, 장애인식 개선 교육직무를 중심으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직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리는 것임
- 따라서 대전광역시는도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리중심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권리중심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할 기회 보장 및 소득제고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제4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시 거주 등록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권익옹호 직무, 문화예술 직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직무를 중심으로 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제공
- 성과목표: 참여하는 장애인 수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권리중심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의견수렴 및 근거 마련	100명	120명	150명	200명

3. 건강 분야

-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 건강 분야에 제시한 2개의 추진 전략은 ‘건강보장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와 ‘건강보장 보건·의료 사업 내실화’임. 건강보장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에는 4개의 핵심과제를, 건강보장 보건·의료 사업 내실화에는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5-5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건강 분야

분야	추진 전략	핵심과제
건강	3-1. 건강보장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	3-1-1.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3-1-2. 중증장애인 소아 낫 병동 운영
		3-1-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1-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3-2. 건강보장 보건·의료 사업 내실화	3-2-1.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강화
		3-2-2.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강화
		3-2-3.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강화
		3-2-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추진 전략 3-1. 건강보장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

3-1-1. 대전·세종·충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아동은 장애가 확정되지 않아 아동의 성장, 발달, 장애 양상에 따라 향후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재활치료와 특수교육 등의 제공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류주석 등, 2018)
- 그러나 낮 병동을 비롯한 재활치료의 공급부족,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간 대기,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재활 난민 발생, 재활치료 기관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 영유아에 집중된 재활치료로 청소년기의 치료 중단 및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미충족 의료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양성욱, 2022)
- 따라서 장애아동은 장애의 조기 발견, 집중 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 돌봄과 보육,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및 돌봄 체계가 필요함

□ 사업 목적

-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운영
- 지역사회 내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 등 거주 지역 내에서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집중 치료기 이후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걸쳐 생애주기별 정기적 평가를 통해 2차 기능 손실 및 합병증 예방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 사업내용: 총 70병상(입원 30병상, 낮 병동 40병상)
- 진료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등 / 낮입원 병동, 특수학교 교실, 무장애 놀이터, 치료실 등 운영
- 운영방식: 대전광역시 소유(시립) / 충남대학교병원 위탁운영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어린이재활병원 병상 이용률	전년 대비 5% 증가				

3-1-2. 소아 중증 장애인 낮 병동 운영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는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짐. 장애아동의 재활은 장애 발생과 동시에 시작되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전문적인 서비스 접근이 요구되며, 치료와 함께 장기적으로 진행됨
- 중증 장애아동은 장시간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해 경제적 문제와 교육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수요 대비 병상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보다 의료수가 인정이 낮아서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아 낮 병원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음(이태식, 2018)
-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이 병행할 수 있는 낮 병동을 설치·운영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집중 치료를 받고, 장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중증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 및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소아 낮 병동 운영지원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중증 장애아동 중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 운영병원: 소아 낮 병동 2개소 지원(보람병원_30병상, 웰니스병원_30병상)
 *충남대학교병원은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40병상) 지원. 건양대병원(4병상)은 보조금 없이 자체 운영 / 대전·세종·충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낮 병동(40병상) 지원
- 사업내용: 소아 낮 병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지원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병상 이용률	65%	70%	75%	80%	80%

3-1-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사업들이 도입됨에 따라 각 사업 주체 간 연계, 당사자와 서비스 연계,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기관이 필요함
-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역별로 지정·운영함
- 즉, 장애인 건강 관련 서비스, 정보, 교육, 네트워크 등을 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장애인 건강증진 도모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사업 개요

- 운영기관: 충남대학교병원(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2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
 - 관계 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의료서비스 선도적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 실시
-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지역사회 재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복지자원 협력체계 구축,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등
 -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
 - (교육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 (의료서비스) 재활의료서비스, 장애소아청소년 재활의료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연계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 이상				
교육 만족도	90점 이상				

3-1-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많은 발달장애인이 행동 문제에 대해 다양한 치료적인 접근과 부모 교육, 약물 치료 등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집중적이고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심한 행동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음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도전적 행동이 심한 성인 장애인이 이용하고 치료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함
- 정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해·공격 등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전국에 11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없는 상태임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현황〉

시도	거점병원(지정시기)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2023. 6.), 서울대학교병원(2019. 10.), 한양대학교병원(2016. 8.)
부산	부산 온종합병원(2021. 7.)
인천	인하대학교병원(2019. 8.)
경기	성남시의료원(2021. 7.)
강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2019. 12.), 강원대학교병원(2019. 8.)
충북	충북대학교병원(2019. 8.)
전북	전북대학교병원(2019. 8.)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2016. 8.)

- 특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따라서 대전시 또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 발달장애인의 행동 문제 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 도모

□ 사업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및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 의료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사업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사업내용: 진료 코디네이팅 제공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및 타 진료과목 간 협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 사업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중 심각한 자해나 타해로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사업내용: 응용행동분석(AVA) 등에 따른 근거 기반 문제행동 치료 제공, 부모, 장애인시설, 특수학교 종사자 등 교육, 행동 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
- 지원내용: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등 연 3억4천2백만원
-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원방식: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및 운영	의견수렴과 사전 준비	지정 신청	운영	운영	운영 재지정 신청

추진 전략 3-2. 건강보장 보건·의료 사업 내실화

3-2-1.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예비 장애인 포함) 중 5%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
-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지역자원 연계·지원, 홍보 등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용 장애인 수	3,600	3,600	3,600	3,600	3,600

3-2-2.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의료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접근성 개선 및 불평등 완화 등을 통한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구강진료의 경우, 전국 총 12개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은 2018년에 대전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공모선정되어 운영 중임. 장애인의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2)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 22.7%, 본인의 건강 악화 13.6%, 병원비 등 부담 4.5% 순으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의료 장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병원을 지정·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의 34.7%가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28.5%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건강검진 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해서 16.5% 등이 있었음(대전사회서비스원, 2022). 현재 전국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총 22개소이며, 대전은 2023년 중부권(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 최초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운영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향상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사업 개요

○ 사업기관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국비지원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장애인 치과진료소(시 자체사업 / 성세병원·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 장애인화 산부인과(시 자체사업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국비지원 / 대청병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23개소)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화 지정 의료기관 수(개소)	2	3	3	3	3

3-2-3.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은 건강 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 역량도 낮아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큼. 반면 예방을 위한 지속적·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부재함
-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61.6%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8년 조사에서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43.8%)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짐. 만성질환 종류는 순환기계 질환 62.1%, 내분비, 대사성질환 35.9%, 근골격계 질환 19.6%, 소화기계 질환 12.9% 등임(송지현 등, 2022)
- 반면 장애인의 비용 부담, 이동 문제, 짧은 진료 시간, 의료진의 장애 이해 부족 등 의료접근성의 한계로 시기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인의 56.7%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로 인한 월평균 의료비는 92,459원임(송지현 등, 2022)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보완 및 지원강화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지역 단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강화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8조, 시행규칙 제7조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이용하는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등 일반건강관리주치의, 경직관리 등 장애인의 주된 장애 관련 전문 장애관리 주치의로 나누어 운영
 -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 방안 마련하여 참여 활성화 및 본사업 전환(2025년) 추진 예정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23개소)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홍보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리플릿 배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이용자 수	전년 대비 증가				

3-2-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제약을 해소하고, 직업이나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수단이 되기도 함
- 그러나 보조기기의 높은 효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은 가격 부담이나 정보 및 서비스 부족으로 보조기기를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송지현 등, 2022)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 사용 대상자의 73.0%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구입 유지비용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 제작 및 사후관리,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품목 확대 및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전달체계를 확충해야 함.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에 대한 수리용품 지원 등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장애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 제공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 사업 개요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 (사업대상) 지역사회, 시설 및 병원 이용 장애인 등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상담, 평가, 시연, 제작, 수리, 사후평가 등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보조기기 사례관리, 교육, 홍보, 정보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질적 향상 및 사례관리 모델 개발
 - (인력현황) 6명(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각 1, 보조공학사 2, 작업치료사 1)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
 - (사업대상) 지체, 뇌병변장애인 등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사람 중 수리가 필요한 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부품비 연 30만원 한도 내 지원, 건강보험대상자 연 5만원 지원)
 - (사업내용) 보조기기 순회·방문 수리 서비스, 상담, 교육, 홍보 등
 - 수리기사(2명)가 방문 수리 또는 수거해 수리 후 전달
 - (사업수행기관) (사)대전광역지지체장애인협회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보조기기센터 이용자 만족도	90점 이상				
수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이상				

4.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제시한 3개의 추진 전략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환경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이용 환경 강화’, ‘장애인 체육 이용 환경 강화’ 임. 추진 전략별 3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5-6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분야	추진 전략	핵심과제
교육·문화·예술·체육	4-1.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환경 강화	4-1-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1-2.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내실화
		4-1-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운영
	4-2. 장애인 문화·예술 이용 환경 강화	4-2-1. 중고령 장애인 문화여가 사업 개발 및 지원
		4-2-2.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4-2-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지원
	4-3. 장애인 체육 이용 환경 강화	4-3-1. 사회통합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확충
		4-3-2.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및 생활체육 교실 확대
		4-3-3. 장애인 스포츠 강자 이용권 지원

추진 전략 4-1.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환경 강화

4-1-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인구 대비 저조하여, 장애인의 역량개발 저하 및 사회참여 저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에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사업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통합교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 사업내용: 직업능력향상, 기초학습, 문화예술, 건강관리, 사회적응 교육 등
 -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 및 대상자 확대(공모)
 - (사업 운영 발전 방안) 선착순,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 순환구조 형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방안 마련 필요
- 2023년 현재 수행기관: 10개소(구별 2개소)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 판수	10개소	10개소	10개소	11개소	11개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신규 이용률(전년도 이용자 대비 증가율)	3%	3%	3%	3%	3%

4-1-2.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전국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152개소가 있으나 대전은 3개소에 불과함.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2년 학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이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5.5%로 2018년 10.5%에서 감소함(송지현 등, 2022). 초점집단면접 결과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체 대상 인원 부족, 연령제한, 증상에 따라 신규 진입의 어려움, 신청 절차의 어려움(핸드폰 소지 유무) 등을 호소함
-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3개소는 모두 서구 지역에 있어 장애인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학령기에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에게 학력 보완교육, 문해교육,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장애인의 배움 기회 확대 및 권익 증진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 명: 장애인 야학 및 평생 학습 교육기관 운영
- 수행기관: 3개소 / 모두사랑, 풀꽃야학, 대전장애인평생교육원
- 사업대상: 성인 재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 문자 해독이 어려운 자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평생교육기관 연도별 사업비	전년 대비 증가				

4-1-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자체 지정·위탁기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없는 상태여서 지정·운영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함

□ 사업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10조(평생교육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발달장애인
-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의견수렴	계획수립	1개소	1개소	1개소

추진 전략 4-2. 장애인 문화예술 이용 환경 강화

4-2-1. 중고령 장애인 문화여가 사업 개발 및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생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애인 인구 또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대전시 장애 인구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는 대부분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만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정임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중고령 장애인이 TV 시청이나 휴식 등으로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어, 제대로 된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지 못함 (송지현 등, 2022). 또한 4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낮 시간에 주로 집에서 보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지역 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등을 원인으로 꼽음
- 중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고령 장애인이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중고령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40세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
- 사업내용: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추진방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중고령 대상 프로그램 개설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중고령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설	1개	1개	2개	2개	2개

4-2-2.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여가생활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문화여가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자기표현과 사회활동이라는 차원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 7,095명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연 평균 수입은 218만 원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70.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장애 예술인의 7.6%만이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음
- 장애 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 필요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 목적

- 장애 예술인(단체)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및 창작 의욕 고취

□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의2(보조금 지원)
-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13조(장애 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장애 예술인(단체)
- 사업내용: 창작 및 발표 활동에 소요 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 지원
- 수행기관: (재)대전문화재단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 예술인 및 단체 지원 건수	12건	15건	15건	15건	20건

4-2-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

□ 사업 목적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해소

□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주요내용: 문화누리카드, 기획사업
 - (문화누리카드)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전용 카드 발급 / 연간 1인당 13만원 지원
 -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대상자 등(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중)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이용금액	실태조사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추진 전략 4-3. 장애인 체육 이용 환경 강화

4-3-1. 사회통합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10년 만에 2.5배 증가함. 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26.6%로 2012년 10.6%에 비해 약 2.5배 이상 증가함(문화체육관광부, 2022a)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이 45.7%로 가장 많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은 16.7%에 불과함.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등의 순임
-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로 운동하는 장소로 복지관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률은 9%가 되지 않음(송지현 등, 2022). 초점집단면접에서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곳이 없다고 토로하며,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함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별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체육시설 확대와 더불어 기존 체육시설에도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권을 보장하여 신체능력 회복 활동 지원 및 차별 없는 체육 활동 보장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및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대전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제21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국민체육센터 건립(설계~준공)
- 사업내용: 공공 체육시설 및 작은 체육관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 점자표지판 등) 설치
- 추진현황: 2023년 준공 1개소(중리동), 2024년 준공 8개소(한밭, 작은내, 길치, 인동, 석봉동, 갈마동, 유성구 반다비, 오정동), 2025년 준공 1개소(가수원동), 2026년 준공 2개소 (대전고, 괴정동)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개소 수	9	10	12	12	12

4-3-2.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및 생활체육 교실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10년 만에 2.5배 증가함. 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26.6%로 2012년 10.6%에 비해 약 2.5배 이상 증가함(문화체육관광부, 2022a)
-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여가 시간 활용, 건강 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임
- 장애인의 생활체육 동호회 및 생활체육 교실의 확대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 사업 목적

- 동호인 활동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장애인 체육활동 증대

□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21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광역시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장애인이 참여하는 동호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135개 클럽_31종목_1,600명)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67개소 디딤체육 11, 생활체육 56)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수	135개 클럽	135개 클럽	140개 클럽	140개 클럽	145개 클럽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수	67개소	70개소	70개소	70개소	70개소

4-3-3.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26.6%)은 비장애인의 참여율(61.2%)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장애인 중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은 20.4%임
-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3.6%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17.2%),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5.2%) 등을 고르기도 함

-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다양한 체육 강좌, 지도 인력 등을 도입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즉,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운동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지원 도모
-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

□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1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5~69세 장애인
- 사업내용: 1인당 매월 110천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복수강좌), 1인당 지원 기간은 12개월
- 이용절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 지원대상: (2024년) 579명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용권 이용 장애인 수 (2024년 기준 인원 579명)	전년 대비 증가				

5. 사회참여 분야

-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 사회참여 분야에 제시한 2개의 추진 전략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임.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는 4개의 핵심과제를,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에는 2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5-7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사회참여 분야

분야	추진 전략	핵심과제
사회참여	5-1. 장애인 접근권 보장	5-1-1. 장애인 맞춤형 정보제공사이트 ‘정보드림’ 접근성 제고
		5-1-2.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운영
		5-1-3. 특별교통수단 광역 간 왕복 이용 지원
		5-1-4.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
	5-2.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5-2-1. 청각·언어장애인 수어 통역 내실화
		5-2-2.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강화

추진 전략 5-1. 장애인 접근권 강화

5-1-1. 장애인 맞춤형 정보제공사이트 ‘정보드림’ 접근성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는 2019년 지역 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드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시설·장애인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드림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제작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문자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전달력도 낮은 데다가 장애인의 인지도가 낮아 이용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형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보 시스템 활성화 방안연구’을 진행하여 장애인 교통정보 시스템 개편, 사이트 카테고리 재분류, 일자리 정보 검색 용이성 강화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함
- 도출된 연구 결과에 따른 시스템의 지속적 개편 운영 및 주 이용자인 장애인 인지도를 제고하여 활용을 높일 방안 필요

□ 사업 목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페이지의 정보 전달력과 인지도를 높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함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사업 개요

- 정보드림 SNS 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업데이트와 쌍방향 소통
- 장애인사회보장급여 신청 페이지 등 링크 제공 및 오류사항 수시 점검

- 수어 표현, 읽기 쉬운 자료 (easy read) 등 장애인의 수용을 고려한 형태의 정보 제공
- ‘정보드림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하여 관계 기관 내 홍보 강화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홈페이지 일일(연간) 방문자 수	전년 대비 증가				

5-1-2.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2022년 대전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동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저상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음(송지현 등, 2022)
- 대전시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내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의 달성 목표(70%)보다 높은 수준임
-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지속해서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정보드림 사이트와 대전교통정보센터 대중교통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운행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 그러나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많은 경우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못하거나 버스 기사가 교통약자를 못 보고 지나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노선번호, 승하차 정류장, 휠체어 이용 여부 등을 신청하여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 목적

-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권 향상
-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대기시간 축소, 안전성 확보, 이동 편의 증진

□ 사업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 사업 개요

-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운영: 대전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 홈페이지, 대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전용 앱(위버스)에서 저상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탑승 예약을 신청, 해당 버스 기사가 리프트를 내리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휠체어의 원활한 탑승 지원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이용 장애인 수	데이터 구축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증가

5-1-3. 특별교통수단 광역 간 왕복 이용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특장차), 전용 바우처 택시, 전용 임차 택시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옴. 또한 2018년 장애인콜택시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장하여 2023년부터 대전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은 대전시 전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광역 간 왕복 이동에는 제한이 있어 대전시 출발만 지원이 되고, 대전시 도착 교통편은 지원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6항은 시·도지사가 인근 지자체와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간 원활한 이용을 위한 시 정책 추진 필요 근거를 제시함

□ 사업 목적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 단위 이동수요 충족

□ 사업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행기준)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예정)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대전·충남권 보행상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대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특별교통수단 광역 운행 이용객 수(명)	1,000	1,200	1,440	1,720	2,060

5-1-4. 주요 여객시설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 내 기차역에는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하차 구역이 없기에 콜택시 이용자는 기차 탑승 시 이동 반경이 길어져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최단거리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2차 계획(2019-2023)에서 요건을 갖춘 휠체어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것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공간 확보 및 공사의 어려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함
- 그러나 이는 애초의 문제를 해소한 방안으로 볼 수 없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와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재추진 필요

□ 사업 목적

-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주요 여객시설 이용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권 실현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사업 개요

- 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주요 여객시설 앞 장애인콜택시(나눔 콜) 전용 승강장 설치 및 점진적 확대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 일정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전용 승강장 수	1	1	2	2	2

추진 전략 5-2.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강화

5-2-1. 청각·언어장애인 수어 통역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2022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 청각장애인은 10,093명, 언어장애인은 609명으로 대전시 전체 장애 인구의 71,941명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 이 비율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차 계획 시기 증가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요에 대응하여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주말과 휴일 상관 없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 바 있음
- 그러나 야간과 휴일 1개소의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증가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종사자 처우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어 통역 지원의 수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휴일 및 야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시스템 마련 필요

□ 사업 목적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사회생활 지원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한국 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 사업 개요

- 야간 및 휴일 수요 파악

- 야간 및 휴일에도 수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화상통화 서비스 시스템 마련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휴일야간 수어 통역 지원 서비스 구축	수요 파악	계획수립	시스템 구축	운영추진	운영

5-2-2.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의사소통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활동이며,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의 수용과 지원은 장애인과 대안적 의사소통 수단 사용자의 사회참여 권리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임
-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는 의사소통 권리의 보장을 위한 핵심적 지원 중 하나임. 대전시는 2021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 센터는 2022년 7월 충남대 언어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평가, 중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의 이용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운영 방안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지원하여 정보접근 및 사회참여 제고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제4조(책무)

□ 사업 개요

-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기기 지원
 - 기존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를 확대·지원하여 의사소통 기기 지원
-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기기 교육
 - 기존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를 확대·지원하여 장애 유형별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기기 지원 및 보급 후 수준에 맞는 교육 시행
-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만족도	90점 이상				

6. 자립생활 분야

-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 자립생활 분야에 제시한 2개의 추진 전략은 ‘일상생활 지원강화’, ‘자립생활 기반 구축’ 임. 일상생활 지원강화에는 3개의 핵심과제를, 자립생활 기반 구축에는 5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5-8 〉 제3차(2024~2028) 기본계획(안) 핵심과제: 자립생활 분야

분야	추진 전략	핵심과제
자립생활	6-1. 일상생활 지원강화	6-1-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6-1-2. 최종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6-1-3.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6-2. 자립생활 기반 구축	6-2-1. 탈시설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6-2-2. 탈시설정착금 확대 지원
		6-2-3.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2-4.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정례화
		6-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추진 전략 6-1. 일상생활 지원강화

6-1-1.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임
- 2022년 전국에서 11만여 명, 대전시에서 4,000여 명의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데(김현지 등, 2023) 대전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에 달함(송지현 등, 2022)
- 따라서 국비로 지원되는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국비 지원 외 시·구비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5조(자립생활 지원)

□ 사업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국비지원 시간이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라 월 20~80시간 범위 내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 국비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 지원하며, 잔여 시간은 이월되지 않음
-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지원 대상자 수(명)	2,100	2,100	2,200	2,200	2,300

6-1-2. 최종증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 배경 및 필요성

- 활동 지원 급여는 기능 제한 수준에 비례하여 할당됨. 국고로 지원하는 활동 지원 시간은 월 최대 480시간, 1일 평균 16시간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도 24시간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특히 돌봄 필요 수준이 높지만, 자연적 돌봄 자원이 부족한 최종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화재, 인공호흡기 분리 등으로 최종증 장애인의 사망사고가 종종 보고 되는바 최종증 독거 장애인의 생명 보호 및 상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 사업 목적

- 위기 상황 등에 대처가 어려운 최종증 독거 장애인에 대해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생명 및 안전 보호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5조(활동지원 급여의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5조(자립생활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장애인 활동 지원 기준 인정 조사 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조사 점수 360점 이상 최종증 독거 장애인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외상 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 기타 활동 지원 수급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24시간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장애인
- 사업 내용: 활동 보조
- 지원 방법: 국비 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 일정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활동 지원 24시간 지원 인원(명)	18	20	24	26	28

6-1-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은 2019년 3월에 도입한 주간 활동 서비스 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집단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외의 돌봄은 대부분 가족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확산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발달장애인의 돌봄 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대두됨
- 현 정부는 2022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을 개정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제시함
- 또한 복지부 사업과 함께 서울, 광주 등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사업 목적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안정적이며 양질의 삶을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사업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사업 개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주체 선정 및 운영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계획 수립	통합돌봄 체계 구축	통합돌봄 사업 운영	통합돌봄 사업 운영	통합돌봄 사업 운영

추진 전략 6-2. 자립생활 기반 구축

6-2-1.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송지현 등, 2022)에 의하면 시설 장애인의 31.5%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할 때 필요한 서비스로 생계비, 편의시설을 갖춘 집, 도와줄 사람, 의료비, 자립생활 정착금, 교육 및 정보, 자립생활 서비스, 혼자 사는 경험의 기회 등을 꼽음.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퇴소할 때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더불어 기술이나 체험이 필요함을 시사함
- 지원주택은 주거 공간과 거주 지원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 장애인 지원주택은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대전시에서는 자립생활체험홈 4개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데, 자립생활 체험홈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설치하여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촉진 및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적응 도모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53조 (자립생활지원),

□ 사업 개요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운영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홈을 확대 운영지원
- 장애인 지원주택 설치
 -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만 19세 이상 대전시 거주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용자 또는 보조
 - 거주 공간과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 일정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립생활 체험홈 개소 수	의견수렴	계획수립	5개소	6개소	7개소
장애인 지원주택 개소 수	의견수렴	의견수렴	계획수립	1호	5호

6-2-2. 탈시설 정착금 확대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 문제임. 즉 초기 지역 사회 정착 비용으로 목돈의 정착금이 필요함
- 대전시는 2018년 이후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해 왔음. 2차 계획 시기 800만 원에서 지원 수준을 증액하였으나, 애초 목표한 1,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함. 이는 실제 지역 사회 정착에 드는 초기 비용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하며,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도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2차 계획 시기 지원 인원은 매해 2~3명으로 (2020년 지원 인원 0명) 애초 목표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 탈시설의 확대와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탈시설 정착금의 지원 수준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의 탈시설 의욕 고취 및 성공적인 거주 전환과 지역사회 정착 도모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5조제10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자립생활 정착금 확대
 -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 입소한 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지급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지원 인원(명) / 인당 정착금(만원)	3 / 800	4 / 800	5 / 900	5 / 900	6 / 1,000

6-2-3.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탈시설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 변화는 탈시설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상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이 모자란 경우 탈시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의 구현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되는 덩핑

(dumping)이 될 우려가 있음

- 탈시설지원센터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지역 사회 정착 시기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파악, 연계하고 조정하여 지원함. 중앙 단위에서는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인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제주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전광역 시도 제2차 계획 시기에 탈시설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탈시설지원법이 계류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음. 그러나 탈시설은 3차 계획 시기에서도 주요한 추진 전략이기 때문에 대전시 자체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구심인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맞춤형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5조(자립생활 지원)

□ 사업 개요

-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단계별(탈시설 준비 단계→지역사회 전환 단계→지역사회 정착단계→ 자립 유지 단계) 필요 욕구를 파악, 필요 서비스를 직접, 또는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탈시설지원센터는 개별서비스계획,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주택 유지 및 가사관리 지원 서비스, 재난 안전 대응 서비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등 지원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 일정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탈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자원 인원(명)	의견수렴	추진 검토	5	5	5

6-2-4.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정례화

□ 배경 및 필요성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 지원은 전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안정적 주거의 실현은 장애인 자립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임
-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탈시설과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탈시설 전환을 위한 중요한 지원임.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탈시설 장애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차 계획 시기 동일 과업을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어 시설·협회 간 개별적 간담회로 대신함. 이에 미해소 과제의 재추진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고취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사업 개요

- 대전 시내 거주시설-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료 상담, 지역사회 참여, 자기 결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탈시설 대상자 발굴
- 거주시설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사회 위상 및 역할 자리매김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장애인분과 안건으로 논의
- 성과지표 및 연차별 추진일정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수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준비	10	12	15

6-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 배경 및 필요성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 부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활동 지원 급여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개인 예산제는 수요자 개인별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평가하고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자원을 할당하여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주요 계획 중 하나로 활동지원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수립, 2023년 4개 지역에서 모의 적용을 하였음. 이후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임

□ 사업 목적

- 복지부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자기주도성 증진과 개인 예산제의 안정적인 운영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5조(활동지원 급여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2024~2025년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1개 구 참여
 - ※ 중앙정부 시범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중앙정부 시범사업 1개 구 참여	중앙정부 시범사업 1개 구 참여	본사업 실시	본사업 실시	본사업 실시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영란(2022).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 관계부처 합동(2023.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국토교통부(202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2020.12.).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2020~2024년).
- 김성희·이민경·오욱찬·오다은·황주희·오미애·김지민·이연희·강동욱·권선진·백은령·윤상용·이선우(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득·이영미·김동기·임재현(2012).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대전
 복지재단.
- 김현자·최정원·김용진·김태용·최효임(2022). 2022 장애통계연보.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현진·김성우·안종태·윤상용·최은희(2023).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2023~2027). 충청북도.
- 김효정·이연·김성태·박윤주(2022).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경기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23). 2023년 장애인복지 업무현황.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류주석·서유미·강철환·이희명·노준수·한진욱·김자영·이예지(2018). 경기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 박노동·장창수·최미영·박혜미·배지연(2022). 대전형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보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법무부(2023.8.28.).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2022). 2023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_____(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_____(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_____(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_____(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부산광역시(2022).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

서울시(2019.3.).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송지현·김동기·정지웅(201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전 복지재단.

송지현·이채식·이주경(2022). 2022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양성욱(202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돌봄 지원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이동석·김용진·이호선·전근배·이건화·도여옥·최지혜(2021).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방안. 보건복지부·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이정원(2018).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9~2023). 전라북도.

이태식(2018).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과제.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토론문.

이혜경·권순용·김동기·유경민(20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광역시(2022).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조윤화·이용표·이호선·정유석·윤삼호·이은미·주란·김미령(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가통계포털. 장애인현황. <https://kosis.kr/index/index.do>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의 통계. <https://www.daejeon.go.kr/sta/StaStatisticsFldList.do?menuSeq=180&column1Cont=C0201&column2Cont=C020101>

법무부 <https://www.moj.go.kr/moj/index.do>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3-1]

제3차(2024~202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김인식

발 행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 34917)

전 화: 042-331-5064

팩 스: 042-331-8924

홈페이지: <https://daejeon.pass.or.kr>

ISBN 979-11-92238-36-4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